

I.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오늘날 사회구조의 다원화와 청소년의식 수준의 향상, 그리고 공적비용의 증가에 따른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의 증가 등 외부환경은 지속적이면서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이는 청소년 수련활동서비스의 제공과 내용에 있어서도 이러한 변화에 대응한 보다 다양하고 전문적인 운영 전략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특히 공공청소년수련시설은 국가나 자치단체가 청소년에게 직접 수련 활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다. 그러나 국가나 자치단체는 한정된 자원 즉, 기술·재정·인력으로는 질적·양적으로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청소년 수련활동 서비스 욕구를 충족시키는데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 할 때 변화하는 서비스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증가하는 공공지출 및 공공조직의 비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기존의 획일적이고 독과점적인 공급체계를 탈피하여 보다 다양한 공급원과 공급 방식 또는 생산방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는 사회의 변화와 청소년의 욕구에 부응하고 서비스 지향적인 행정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에게 다양한 선택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공급 및 전달 방식이 요구됨을 말한다.

이와 관련하여 외국의 경우는 공공서비스 공급주체의 다양화, 공급방식의 정부간 필요 서비스의 사고 팔기, 시민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정부가 민간업체로부터 구입하는 방식(Service Purchase), 서비스 공급의 민간 위탁(Contracting-out), 특정서비스 수혜대상자들에게 서비스에 대한 보다 다양한 선택권을 부여하는 구매권발급제도(Voucher System)등 다양한 방

식들이 활용되고 있다¹⁾.

현재 청소년수련시설의 경우에 있어서도 수련활동서비스 공급체계의 변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주요 형태는 민간위탁이다. 청소년수련시설의 민간위탁 수준은 2000년도 현재 58%에 달하고 있으나, 정부는 모든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도록 정부 지침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가까운 장래에 모두 민간에 위탁 운영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지금까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청소년수련시설을 민간에 위탁할 때 청소년수련활동서비스의 위탁 효과 검증, 수탁기관에 대한 공정한 평가기준, 그리고 위탁추진 절차 기준 등에 대한 합리적인 판단 기준이 없이 위탁이 추진됨으로서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는 민간위탁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그 사후조치에 있어서도 많은 문제점이 있다. 특히 위탁의 목적이 재정의 효율성만을 고려함으로써 청소년의 욕구, 서비스의 질적 향상, 공익성의 확보, 그리고 위탁과정에서의 투명성 등에 대하여 지역사회에서 지속적인 갈등이 표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청소년수련시설의 민간위탁에 대한 제반 이론과 경험적 논의를 통하여 민간위탁과 관련된 제 현상을 분석함으로써 청소년수련시설의 서비스의 질과 비용절감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평가기준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2. 연구내용

본 연구는 청소년수련시설의 민간위탁과 관련된 제 현상 즉, 위탁의 목적, 위탁추진과정, 수탁기관 선정기준 등에 대한 실태분석과 사례연구를 통하여 국가 및 자치단체에서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민간위탁을 추진하

1) 박재희(1997). 행정서비스 제공방식의 다원화 방안. 한국행정연구원

고자 할 때 고려되어야 할 사항과 이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민간위탁 관련이론을 탐색하고, 경영실태를 비교 분석하고, 외국의 유사사례를 제시한다. 또한 민간위탁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수탁자에 대한 조사, 전문가 자문 그리고 위탁담당공무원 면접을 통하여 지금까지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이를 기초로 민간위탁의 기준을 제시한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들은 이론과 현황을 중심으로 내용을 전개하고 있으나 보다 구체적인 민간위탁 결과에 대한 분석과 민간위탁 과정별 업무내용분석에 있어서는 미흡한 편이다. 특히 위탁효과에서 서비스 질 분야와 실제적인 비용절감에 대한 논의는 거의 없다.

이상과 관련하여 본 연구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수행하고자 한다.

- 1) 민간위탁에 관련한 이론적 검토 및 대중매체 분석
- 2) 공공청소년수련시설의 위탁효과에 대한 직영/위탁시설의
경영 비교분석
- 3) 민간위탁 과정별 영향 요인에 대한 분석
- 4) 외국 유사시설에 대한 민간위탁 사례 분석
- 5) 전문가 자문 및 위탁담당 공무원, 청소년단체 운영자 면접조사
- 6) 민간위탁추진과정 및 수탁기관 평가기준에 대한 실태조사

3. 연구방법

1) 문헌연구

(1) 민간위탁에 대한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에 대한 탐색 및 언론보도에 대한 내용분석을 수행하였다.

(2) 청소년수련시설의 민간위탁에 대한 현황 및 결과에 대한 자료수집과 통계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3) 정부 및 자치단체의 민간위탁 행정자료 수집 및 외국의 민간위탁 관련 자료를 분석하였다.

2) 경영분석

청소년수련시설의 경영실태를 분석하기 위하여 2000년도 문화관광부 청소년수련시설 실태조사 자료를 기초로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운영실태를 직영시설과 위탁시설로 구분하여 경영 현황을 비교 분석하였다.

3) 면접조사 및 전문가 자문회의

(1) 면접조사 : 자치단체의 민간위탁을 담당하는 청소년수련시설 담당공무원 및 청소년수련시설의 주요한 수탁대상이 되는 청소년단체 운영자, 청소년관련 전문가에 대하여 면접조사표를 작성하여 인터뷰를 수행하였다.

(2) 전문가 자문회의 : 청소년수련시설의 민간위탁 평가기준 및 추진절차에 대하여 청소년 관련 부처, 청소년학계, 전문가를 대상으로 민간위탁 조사 및 평가기준에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의견을 수렴하였다.

4) 질문지 조사분석

(1) 민간위탁 과정 및 평가기준에 대하여 실제로 민간위탁과정에서 수탁대상자로서 심의를 받은 현재의 청소년수련시설 수탁운영단체를 대상으로 질문지 조사를 수행하였다.

(2) 조사내용은 민간위탁 정책집행과정을 중심으로 계약서내용 분야, 위탁추진 분야(수탁자 모집, 수탁자 선정, 경쟁도, 의사결정의 합리성), 위탁 관리감독 분야(지도방법, 제도 및 규칙, 기간, 인센티브), 성과평가 분야(성과지표), 민간위탁인식도 분야로 나누었다.

4. 기대효과

청소년수련시설의 민간위탁 실태를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첫째, 청소년수련시설의 민간위탁 실태를 분석함으로써 현재의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둘째, 경영분석을 통하여 위탁시설과 직영시설에 대한 경영비교를 통하여 국가보조금의 규모, 적정수련비용, 적정인력 등에 대한 판단자료를 제시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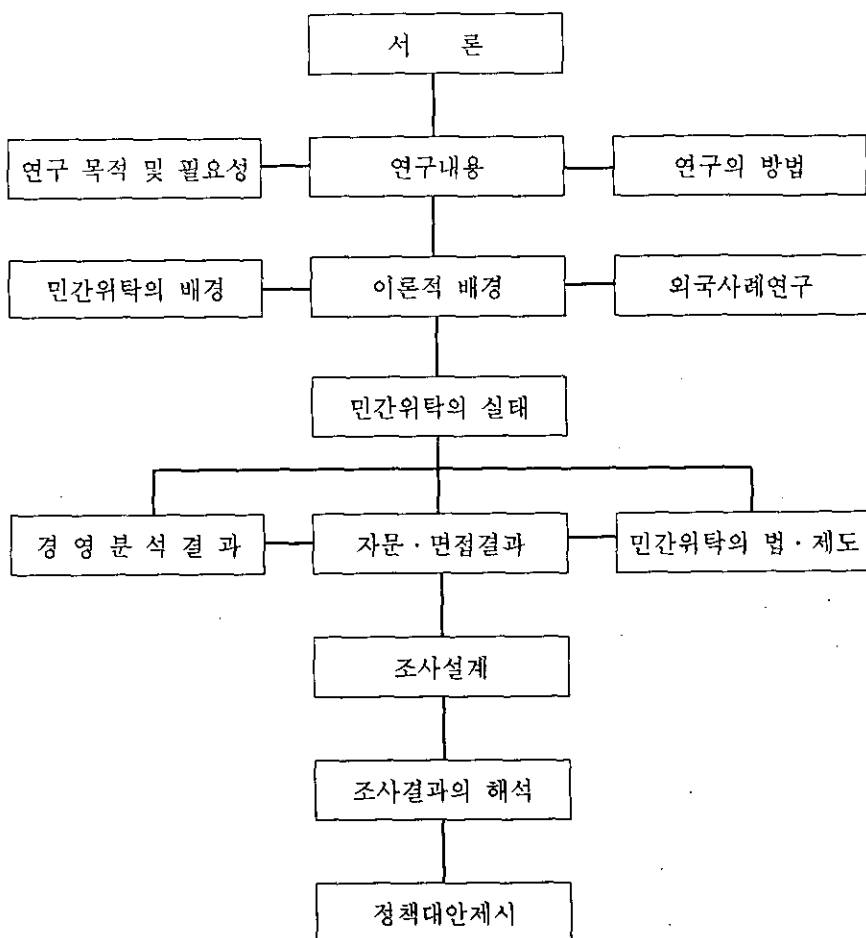
셋째, 유사한 외국사례에 대한 자료를 제시함으로써 위탁자가 고려해야 할 보다 구체적인 항목에 대해 제시할 수 있다.

넷째, 전문가자문 및 면접조사를 통하여 민간위탁과정에서의 공정성과 전문성이 확보될 수 있는 위탁기준 및 위탁추진절차를 보다 합리적으로 제시할 수 있다.

다섯째, 설문조사를 통하여 민간위탁성과(서비스질과 효과성)에 영향을 미치는 항목을 추출함으로써 정부 및 자치단체에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할 때 중요 판단기준과 성과측정항목을 제시할 수 있다.

5. 연구의 구성

본 연구의 전체구성은 총6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론과 2장은 이론적 배경으로서 민간위탁이 등장하게된 배경과 기본전제, 그리고 외국의 사례에 대하여 논의하며, 3장에서는 민간위탁관련 법·제도의 실태와 경영분석결과 그리고 전문가회의 및 면접조사 결과를 제시한다. 4장은 본 연구의 분석모형과 조사설계에 관한 장으로서 연구모형의 수행방법을 중심으로 기술하였다. 5장은 조사결과에 대한 해석으로 청소년수련시설의 민간위탁 효과인 수련활동서비스의 질과 비용절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민간위탁 활성화를 위해 정책적으로 시급히 요청되는 사항에 대해 설명한다. 6장은 결론과 개선방안에 대해 위에서 논의된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제안한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의 흐름도는 [그림 1-1]과 같다.



[그림 1-1] 연구의 흐름도

II. 민간위탁에 대한 이론적 논의

1. 민간위탁의 배경 및 의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서비스 민간위탁은 정부부문의 비효율성과 지방재정의 압박을 해소하기 위하여 80년대 초 미국을 중심으로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이것은 중앙정부차원에서의 민영화와는 달리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민간위탁은 대부분 서비스계약(contracting out)이라는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특징으로 기업의 아웃소싱(outsourcing)과 유사하다.

외국의 경우 행정서비스 공급의 민간위탁의 배경에는 여러 요인이 작용하고 있지만 그 가운데 중요한 것은 공공부문의 지나친 팽창과 재정압박을 들고 있다(박경원, 1997:19).

시설의 민간위탁은 지방공공서비스 공급의 민영화전략 가운데 가장 널리 사용되는 방법으로 서비스 공급의 3가지 요소를 ① 서비스의 공급결정, ② 서비스의 생산, ③ 서비스의 대가지불(재정부담)이라고 할 때, 서비스의 공급결정과 대가지불의 역할은 (지방)정부가 담당하고 서비스의 생산만을 민간부문이 담당하는 방법이다(박경원, 전개논문, 18).

이러한 민간위탁을 지지하는 이론은 크게 '작은정부론'과 '공공선택이론' 그리고 '거래비용 이론'이 있다.

작은정부론의 시각은 '정부실패'의 논의에서 출발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정부조직 내부의 관리, 제도, 운영 개선에 초점을 두고 있는 행정관리적·조직적 차원에서는 정부생산성의 저하 원인을 행정수요 증가와 이에 따른 정부 역할 및 기능의 확대 그리고 이로 인한 정부 규모의 비대화, 비대화된 정부의 독과점적 서비스 제공 체제라고 본다.(김세근, 1998, 김인, 1993, Bennett & Ewan, 1996)

따라서 시장이 수행해야 할 기능을 정부가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보는 시장경제적 차원에서는 시장기제의 도입을 필수적인 요소라고 주장한다(하미성, 1994, 박경호, 1992, Finley, 1989).

공공선택이론에서는 시장의 다원적, 중복적 공공서비스 산업은 고도로 통합적인 정부 독과점 체제하에서 보다 사용자의 요구에 더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으며, 시민들은 공공서비스에 있어서 보다 다양한 선택권을 가져야 하는바 이는 시민들에게 자율적 선택 행위가 허용될 때에만 사회전체의 정치·경제적 민주화를 도모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논리를 견지하고 있다(Ostrom, 1971, Mueller, 1989, 박성복, 1995).

또한 민간화의 요인으로서는 실용주의적 요인, 이념적 요인, 상업적 요인, 대중적 요인 등이 있다.

거래비용이론은 민간위탁의 비용에는 투입요소에 대한 비용(생산비용)과 생산 과정을 통제하는 비용(거래비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위탁에 따른 거래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정부의 위험을 줄이는 것으로 본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정부행동의 비용이 시장행동의 비용보다 크기 때문으로 인식한다. 민간위탁의 기본구조는 주인-대리인 관계구조를 가지며, 서비스 특성이나 상황의 불확실성에 의하여 위탁자와 수탁자의 다양한 기회주의적 행태가 나타난다. 이러한 현상은 위탁계약에 내재된 기본적 특성이다.

공공서비스 제공에 대해서는 정부부문과 비정부 부문으로 나누어지며, 어느 쪽에 책임과 비중이 높은가에 대한 국가적 목표,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환경과 조건 그리고 관료제도의 특수성 등에 의하여 달라진다. 따라서 청소년수련시설의 민간위탁이라는 측면도 이러한 틀 속에서 전개되어진다.

민간위탁은 정부가 무엇을 언제, 어떻게 공급하는가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민간의 활력을 이용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공급주체의 변동이라는 점에서는 민영화와 동일하지만 재화서비스를 구입하는 쪽이

소비자가 아니라 정부라는 점에 차이가 있다.

서비스의 위임방식에 대하여 가브리엘 로스(Gabriel Roth; 1987)는 공공서비스제공방식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직영, 독립위원회 위임, 서비스계약, 경영계약, 임대계약, 양여계약 등으로 구분하였다. 여기서 서비스계약은 우리나라에서 흔히 많이 사용하는 민간위탁과 동일한 개념이며 이러한 서비스계약은 가장 간단한 민간참여방식으로 전반적인 책임은 공공부문에 있으나 계약에 의한 일부 제한된 영역에서는 민간에 책임이 부여되는 것이다.

계약의 유형으로는 ① BOT(Build Transfer Operate)방식, ② 정부소유-계약자운영방식, ③ BOOT(Built Own Operate Transfer), ④ 면허부여(Licensing), ⑤ 독점판매권 부여(Franchising), ⑥ 상업화서비스(Commercialized Service) 등의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계약의 유형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BOT(Build Transfer Operate)방식은 민간부문에서 자본시설 건립의 책임을 지며 완공되면 소유권을 정부에 이양하고 그 시설의 운영권을 민간계약자가 갖는 책임의 형태를 말한다.

둘째, 정부소유-계약자운영 방식은 민간부문이 시설운영권을 가지나 자본자산의 소유권을 갖지 않는 형태이다.

셋째, BOOT(Built Own Operate Transfer) 방식은 민간부문이 자본시설의 건립과 운영권의 책임을 가지나 자본시설 소유권을 일정기간 후 정부에 이양하는 형태를 말한다.

넷째, 면허부여(Licensing) 방식은 정부가 설정한 규정이나 조건에 따라서 (보다 단순한) 상품이나 서비스(products re service)를 팔 수 있는 권한의 형태를 말한다.

다섯째, 독점판매권 부여(Franchising) 방식은 정부가 설정한 규정이나 조건에 따라서 (보다 복잡·복합된) 상품이나 서비스(products or service)와 관련한 사업을 할 수 있는 권한부여의 형태를 말한다.

여섯째, 상업화서비스(Commercialized Service) 방식은 소유권과 운영권을 민간부문에 이양하지만 전부의 관할 하에 있거나 산업규제를 받는 형태를 말한다.

이러한 방식은 전반적으로 정부의 시설을 민간에 이양하거나 위탁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계약조건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 방식이지만 청소년수련시설은 위의 기준과 정확하게 맞는 시설위탁이 이루어지기보다는 복합적인 상황이 적용되면서 대부분의 조건이 정부나 시·군·구에서 시설을 완공한 다음 이들 시설의 운영권을 민간에 위탁하거나 아니면 독립법인을 설치하여 이들 법인이 시설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는데 두 번째의 정부소유-계약자운영방식에 준하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민간위탁은 그 범위나 규모면에서 계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박경호, 1992). 민간위탁을 지지하는 입장에서는 정부업무를 공공부문에서 민간부문으로 전환시키게 되면, 이윤을 추구하는 민간사업자들이 비용을 감소시키고, 또한 고객의 만족을 위하여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기 때문에 그 효율성과 질이 높아지고, 조세는 인하되며, 정부의 규모를 작게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믿음으로 1990년대에 들어와서는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등장하고 있으며, 이제는 단순한 정부의 업무수준을 넘어 정부의 본질적 기능, 예를 들면 교도소 관리 등에 이르기까지 집행뿐만 아니라 정책의 디자인까지도 민간계약자가 맡아서 하는 시대에 들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즉, 민간위탁의 필요성의 주장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행정기능의 적정화이다. 현대 행정국가를 경험한 대부분의 국가들은 정부실태에 대하여 작은 정부의 실현을 당면과제로 인식하고 있으며, 따라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역할 분담을 재조정하고 공공서비스 공급체제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즉, 사용자 부담 원칙의 적용이 가능한 공공서비스 부분은 민간으로 이양하거나 민간과의 협조체제를 통하여 민간의 강점이 경쟁원리를 도입하여 많은 편익을 달성하고자 한다.

둘째, 효율성의 향상이다. 정부관료제의 방만한 팽창은 조직의 비만을

초래하고 이윤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민간조직에 비해 자원활용의 극대화 달성이 미약하고, 행정서비스 공급에 있어 인적, 물적 자원의 낭비가 심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는데 많은 장애를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감축관리를 통하여 팽창된 잉여조직을 정비함으로써 공급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최적규모로 공급단위를 조절한다.

셋째는 전문성의 향상이다. 공공서비스의 민간위탁의 장점은 업무의 전문화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정부가 민간위탁을 통하여 민간사업자의 전문성을 이용하는 경우 예산절감이 가능하고 동시에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민간업자들은 그 분야의 전문지식, 경험, 노하우, 장비와 시설 그리고 직원을 가지고 있다. 정부가 이러한 조건을 갖추는데는 오랜 기간과 비용이 소요되며, 그 후에도 민간보다 나으리라는 보장을 할 수 없다.

이러한 민간위탁을 통해 기대되고 있는 장점들은 다음과 같다(Savas, 1987).

첫째는 행정기관의 운영 및 업무수행에 있어서의 효율성 향상이다. 이는 특정 기능의 수행 등 서비스 공급에 있어 특정 행정기관의 독점적 지위가 해소되고 경쟁이 도입됨으로써 인력과 재원의 낭비 등 생산측면에서의 비효율성 문제 제거하게 된다.

또한 인력 및 조직감축에 따른 작은 정부 구축 또는 정부팽창 억제하고, 규모의 경제를 통한 비용절감을 기대할 수 있다.

둘째는 행정서비스의 질 향상이다. 이는 정부의 특정기능 수행 및 서비스의 독점공급에 따른 질 저하를 방지하고 특정 업무에 종사하는 민간기업의 전문성 활용함으로써 서비스공급의 질을 높이는데 있다.

셋째는 민간분야의 활성화와 자율성 신장이다. 이것은 민간의 시장진입기회 부여를 통한 참여범위를 확대하고 서비스의 공급주체를 다원화함으로써 수요자의 선택권을 확대할 수 있다.

2. 선행연구 및 신문기사분석

1) 선행연구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를 보면 청소년수련관과 같은 복지서비스 분야에 대한 연구는 아직까지 축적되어있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또한 연구대상의 선정에 있어서도 대부분의 연구들이 정부의 공무원만을 대상으로 성과의 평가를 하거나, 민간위탁 이용자의 만족도 분석, 또는 민간위탁에 대한 포괄적인 접근을 통한 위탁지역과 정부직영지역과의 비교연구, 민간위탁의 비용절감의 부분만을 분석하는 것에 한정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본 연구와 같이 청소년수련관이라는 동종을 대상으로 실제 경영실태에 대한 분석과 위탁자 입장 및 수탁자 입장을 동시에 고려하여 민간위탁을 통한 서비스 질과 비용절감을 동시에 제시하는 통합적 연구결과의 산출이 요구됨을 알 수 있다.

이상의 민간위탁관련 선행연구자료를 비교하면 아래 <표II-1>과 같다.

- 김경혜(2000). 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 서울: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복지서비스 민간위탁을 통해 사회적으로 기여한 점도 많지만, 일부 복지법인이 여러 복지시설을 위탁 운영하여 대기업화 함으로써 다양한 민간단체의 경쟁을 통한 비용절감이나 서비스 질 향상 효과가 감소되거나, 수탁기관 선정 및 관리 과정이 체계적으로 진행되지 못하여 민간위탁을 통한 효율성이나 효과성 제고에 기여하지 못하는 등 문제점 또한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 따라 이 연구는 복지시설 민간위탁을 통한 복지

서비스 공급현황과 위탁운영 과정상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개선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서울시 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의 효과를 극대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연구에서 민간위탁이란 공공건물의 관리운영위탁 형태를 민간위탁으로 정의하고있다. 연구대상은 사회복지관 85개소, 노인종합복지관 14개소, 장애인종합복지관 13개소 등 112개 복지관 유형으로 하였다.

이 연구결과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복지관 운영 개선방안으로는 복지관 기능의 재정립, 법인직영 복지관의 적극 지원, 복지관 재정구조 개선, 인력관리 개선을 들었다.

둘째, 민간위탁 관리행정의 개선방안으로 수탁기관 선정방법의 개선, 지도 감독 방법의 강화, 지도 감독 기능강화를 위한 선결과제, 재협약 방법의 개선방안, 제도개선을 들었다.

- 김은정(2000). 지방행정사무 민간위탁 성과에 관한 연구: 부산시 양정청소년회관 사례연구를 중심으로. 부산대 석사학위논문.

이 논문에서는 청소년수련시설을 대상으로 한 민간위탁에 대한 사례연구를 수행한 논문으로서 가치가 있다.

이 논문의 결과는 비용절감이나 서비스질의 개선에 있어서 수탁자의 전문적 능력, 수탁자의 노력 등에서 긍정적인 평가로 나타났으나, 서비스 이용가격의 상승이나 관리감독의 문제 등이 나타났다.

특히 경쟁 및 재계약 횟수의 제한 등을 통한 비용절감이라는 측면에서는 거의 효용성이 없었다. 이는 청소년회관 복지분야의 특성상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분야가 아니며, 따라서 경쟁을 기대할 수 없는 점도 있으나 아직 민간의 경제활동이 성숙되지 못한 우리나라의 여건상 행정사무를 위탁할 만한 업체의 수의 부족을 가장 큰 이유로 들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 있다.

첫째는 효과적인 민간위탁 업무수행을 위해서는 전문적인 위탁전담 부서의 필요, 서비스질과 비용절감에 관한 평가, 경쟁을 통한 민간위탁의 장점을 부각시키기 위해서는 적정한 수준의 보조금 지급이 선행조건이 되어야하며, 이러한 조건하에서 서비스질의 제고가 이루어질 수 있다.

둘째는 현재와 같이 비용절감 및 감축관리의 일환으로서의 민간위탁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경쟁에 대한 편익의 발생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수탁운영 단체의 기준을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기업 및 개인에게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 이유로는 현재의 위탁기준으로는 위탁할 단체가 하나뿐이거나 거의 나오지 않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어 하나의 독점적, 계속적 지위를 유지하게 됨으로써 또 다른 폐해가 발생할 수 있다.

셋째는 제도적 측면에서 민간위탁과 관련한 통합된 조례의 제정으로 새로운 민간위탁 업무가 발생할 때마다 조례를 수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개선해야 할 것이다.

○ 박중훈(2000). 정부기능의 민간위탁 제도 및 운영방식 개선방안.
서울: 한국행정연구원.

이 연구는 성공적인 민간위탁을 위해서 첫째, 위탁대상기능의 성격 및 여건이 서비스 수준의 구체적 명시가 용이하고 공공성이 낮으며, 효율성 향상여지가 크고, 대상기능을 둘러싼 민간분야에서의 경쟁이 활발해야 하며, 둘째, 위탁실시과정에서의 운영방식에 있어서는 경쟁에 입각한 위탁사업자 선정과, 구체적인 서비스 수준 등을 내용으로 한 계약체결, 모니터링이 이루어지고, 끝으로 이들이 요건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 제도의 마련을 들었다.

이러한 분석에 기초하여 우리나라 민간위탁의 개선방안으로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민간위탁제도상의 장애요소가 제거되고 개선되어야 한

다. 민간위탁제도는 구체적으로 법정지정형태가 아닌 계약형태를 취해야 하며, 위탁대상 기능 역시 법률상의 기능이 아닌 직제상의 기능으로 확산되어야 하며, 민간위탁을 실현하고 관리하기 위한 제도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어야 하며, 민간위탁 관리하기 위한 관리주체 및 관리방식의 개선방안 제시하였으며, 민간위탁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관리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 허남식(2000). 지방공공서비스 민간위탁의 효율적 집행에 관한 연구. 경성대 박사학위논문.

이 연구는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가 기존의 공공서비스 공급방식을 전환하여 적극적으로 시장원리를 활용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는데 있어, 집행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실적인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고 성과를 높일 수 있는가를 모색해 보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주요 연구방법은 기존 연구와 각종 자료 및 문헌 조사를 통하여 민간위탁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여덟 개의 주요 요인들을 추출하고, 그 요인들과 성과간의 인과적 관계를 밝혀 내기 위하여 영향관계를 설정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는 민간위탁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민간위탁의 경쟁성 제고와 서비스 생산의 전문기술적 복잡성 및 수탁자의 기회주의적 행태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며, 의사결정의 합리성 확보와 적절한 감시인 역할이 요구된다.

- 전인우(1999). 수·위탁 기업간 분업생산체제의 효율화 방안. 서울: 한국경제연구원.

이 연구는 수·위탁기업간 분업생산체제를 통해 수·위탁기업은 여러 가지 긍정적인 경제적 효과를 얻을 수 있음을 전제로 수·위탁기업간 분

업생산체제를 구축하는데 목적이 있다.

그 이유는 위탁기업은 시장거래를 통하는 경우보다 소재·부품을 적기에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수탁기업의 전문기술 및 설비를 이용할 수 있고 경기변동에 탄력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위험을 분산시킬 수 있으며 규모의 비대화에 의한 경영상의 비효율을 개선할 수 있다.

반면 수탁기업은 계획생산을 통해 안정적인 생산활동을 도모할 수 있으며 위탁기업으로부터 기술 및 경영지도를 받거나 자금지원을 받음으로써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 자금조달의 어려움을 덜 수 있다.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얻게 되는 긍정적인 경제적 효과는 국민경제 성과의 향상이라는 형태로 종합되어 나타나게 된다. 그러나 수·위탁 기업간 분업생산을 통해 국민경제의 성과가 향상·향상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수·위탁기업간의 관계는 양자가 법적으로 독립되어 있다는 점에서 항상 대립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국민경제의 성과를 높일 수 있는 수·위탁기업간 분업생산체제의 구축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 박재희·서성아(1997). 정부기능 효율화를 위한 제3섹터 활용방안- 공공서비스 사업분야를 중심으로-. 서울: 한국행정연구원.

이 연구는 최근들어 대두되고 있는 '복지국가 위기론'과 관련하여 그동안 복지국가 형성과정에서 지나치게 팽창해온 관료조직을 축소하고 정부규제 및 간섭을 완화함으로써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구축하려는 노력이 지속되고 있는바 이를 위한 주요 정책수단의 하나로서 제3섹터 활용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 연구는 제3섹터 활용에 대한 국내외 사례연구를 통하여 첫째, 우리나라에서 제3섹터 활성화의 장애 요인을 파악, 이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둘째, 우리나라의 실정에 적합한 제3섹터사업 대상 분야의 발굴 및 사

업방식을 모색하여, 셋째, 그 동안 국내의 제3섹터 관련연구에서 거의 도외시 되어온 비영리적 자발조직과 정부와의 바람직한 협력관계의 구축방안을 검토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 연구결과는 공공서비스 생산과 공급의 민간화로 서비스 행정의 효율성과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기대할 수 있는 반면에 민간부분에의 지나친 의존은 서비스의 공익성과 형평성에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

공공서비스에서 제3섹터 형태는 기본적으로 공공주도형이 적합할 것으로 판단되며 비록 서비스공급자는 민간이 될지라도 사기업의 지나친 상업성으로 인하여 공익목표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부에 의한 어느 정도의 감독과 통제수단의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며 대신 정부가 서비스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

○ 이창균 외(2000).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의 개선방안. 서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민간위탁 추진실태 및 문제점을 분석하여 민간위탁의 발전방안을 연구하였다. 특히, 이 연구는 민간위탁에 대한 전국적인 현황, 민간위탁의 주요영역, 사업자선정의 과정, 계약조건, 운영실적,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함과 동시에 몇몇 사례를 통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 개선방안을 강구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실태분석 내용으로 민간위탁 관련제도 및 법적 근거, 민간위탁 운영실태 분석으로 시설 및 사무위탁 현황, 수탁기관 현황, 비용절감 및 서비스 질의 현황, 지도 감독 등 관리의 현황 및 문제점을 제시하였다.

민간위탁 효율적 추진방안으로는 민간위탁 대상사업 결정모델 구축, 대상사업 선정기준의 설정, 수탁기관의 선정방법 및 기준설정, 공동위탁의 추진,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설치와 경쟁입찰체제의 확대, 성과중심의 계약, 합리적인 사업비 산정, 관리 감독 강화를 제시하였다.

<표 II-1> 청소년시설 민간위탁 관련 실태자료 비교

연구자 및 연구주제	최정철 외(1999). 인천광역시 시설사업소 경영진단 및 민 간위탁 추진방안. 인천발 전연구원	이창균(2000). 지방자치단 체 민간위탁의 개선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허남식(2000). 지방공공서 비스 민간위탁의 효율적 집행에 관한 연구. 경성 대 박사학위논문.
조사대상 및 지역	제도분석, 운영실태분석 (인천시 14개 사업소의 민 간위탁여건 및 타당성검토 위한 경영진단), 14개사업 소 현장방문	우리나라 민간위탁 전국 적 현황과약 위한 전국조 사결과와 분석, 특정사례 의 분석, 해외자료 분석 및 담당자와 면담	전국 11개 광역시·도의 공무원 179명
조사내용/ 민간위탁 에 영향을 주는 요인	-제도분석(법적근거 및 조 례 등) -운영실태분석(민간위탁타 당성검토를 위한 운영실태 경영진단) -민간위탁 여부 및 추진방 안	민간위탁 관련제도 및 법 적근거, 민간위탁 시설 및 사무위탁 현황, 수탁기관 현황, 비용절감 및 서비스 질의 현황, 지도감독 등 관리의 현황 및 문제점	위탁서비스의 일반적 특 성, 민간위탁 계약의 집행 에 관한 조사내용, 민간위 탁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요인, 민간위탁의 성과에 대한 인식 민간위탁의 결정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 -경쟁성의 정도인식, 조 직내외의 저항성의 강도 에 대한인식, 서비스성과 의 측정가능성, 서비스생 산의 전문적 복잡성 정도 에 대한 인식, 기관장이 민간위탁을 지원하는 리 더쉽의 강도, 비용효율성 의 인식, 민간위탁에 관한 행정관리체계의 적정성, 위탁 서비스 공급중단의 과급효과
조사결과 및 대책	적정수익률 보장, 경쟁체 제도입, 민관 합동참여의 조건확보, 민간위탁사업의 경영에 대한 자율책임 경 영체제확보, 정부의 구조 조정에 있어 민간위탁을 보는 기본인식 전환	민간위탁 대상사업 결정 모델 구축, 대상사업 선정 기준 설정, 수탁기관의 선 정방법 및 기준설정, 공동 위탁의 추진, 민간위탁심 의위원회설치와 경쟁입찰 체제의 확대, 성과중심의 계약, 합리적인 사업비 산 정, 관리감독 강화	민간위탁의 경쟁성 제고, 서비스생산의 전문기술적 복잡성 및 수탁자의 기회 주의적 행태 극복, 의사결 정의 합리성 확보와 적정 한 감시인 역할 요구

연구자 및 연구주제	김경혜(2000). 복지시설 민 간위탁 운영평가 및 개선 방안. 서울시정개발연구원	김은정(2000). 지방행정 사무 민간위탁 성과. 부 산대 석사논문.	강상엽(2000). 복지서비스 민간위탁 성공요인 분석. 서울대 석사논문.
조사대상 및 지역	민간위탁 운영중인 79개소 복지관 종사자와 복지관 위탁업무 담당 75명의 공 무원 대상 설문조사	부산시 양정청소년회관 사례연구로서, 민간위탁 전인 97년 이전부터 지속 적 청소년보다는 민간위 탁에 인지가 있는 일반인 이용자 총210명으로 민간 위탁 전후 비교조사	서울시 관악구 4개의 사회 복지관, 요인분석위한 복 지관관련 공무원 면접조 사, 복지관운영현황을 위 하여, 복지관 부장과의 면 담
조사내용/ 민간위탁 에 영향을 주는 요인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평 가부분과 평가결과에 따른 개선방안 -비용절감, 서비스질향상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성 과평가를 위한 분석변수 로서, 이용자(수혜자), 위 탁담당부서, 민간수탁자, 제도 및 계약적 측면에서 결과분석	복지서비스 민간위탁의 성 공요인 -위탁운영체 선정상의 요 인(민간위탁 목표 선정상 적정성, 선정 주체기준과 과정의 합리성), -계약체결 및 서비스공급 상의 요인(계약서 내용의 적정성, 예산과정과 내용 의 적절성, 수탁자의 전문 성과 자율성, 운영프로그 램의 적정성), -지도감독과 재계약상 요 인(의사소통의 정도, 지도 감독의 적정성, 재계약과 정의 공정성)으로 분석
조사결과 및 대책	-복지관 기능의 재정립, 법인직영 복지관의 적극 지원, 복지관 재정구조 개 선, 인력관리 개선 -수탁기관 선정방법개선, 지도감독방법 강화, 재협 약방법의 개선, 제도의 개 선	-비용절감이나 서비스질 의 개선은 긍정적이나, 서 비스 이용가격의 상승이 나 관리감독의 문제 등, 경쟁 및 재계약 횟수의 제한 등 부족함 -전문적 위탁전담 부서필 요, 긍정적인 민간위탁 실 시 위한 적절한 수준의 보조금 지급의 선행조건, 수탁운영 단체의 기준을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기업 및 개인에게로 확대, 민간위탁 관련한 통합된 조례의 제정 등	-민간위탁 여부결정은 서 비스의 민간위탁이 공공성 과 수익성을 어떻게 조화 시킬 것인가에 기초해야함 -위탁운영체 선정의 주체 는 공무원, 전문가, 수혜자 인 지역주민이어야 함, 계 약서는 구체적인 민간위탁 달성목표를 제시하여야함, 지도감독과 재계약을 위한 적절한 통제장치 마련 등

2) 신문기사 내용분석

최근 공직사회의 화두(話頭)인 2단계 구조조정의 하나로 자치단체 업무의 민간위탁이 추진되고 있다. 민간위탁을 통해 조직을 슬림화하는 것은 물론 예산까지 절감하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이 자치단체의 입장이다.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국가 및 자치단체는 민간위탁을 통해 조직효율화를 추구함과 동시에 예산까지 절감하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추진의지는 민간위탁 대상 업무를 주·정차 위반관리 등 단순 집행기능에서부터 하수처리장, 쓰레기소각장, 분뇨처리장 운영, 관광·유적지 관리는 물론 사회복지·청소년수련·체육시설 등 전문성을 요구하는 것까지 다양하다.

이 글에서는 언론보도를 중심으로 2000년 이후 민간위탁과 관련한 주요 이슈의 경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최근의 위탁문제 대두 현황을 개관함으로써 어떤 내용의 이슈가 사회적인 화두가 되고 있는지 전반적으로 알아보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최근의 언론 보도 내용을 통하여 민간위탁에 관한 이슈가 매우 다양하며 위탁과 수탁, 고객 입장에서 바라보는 시각도 여러가지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²⁾

○ 2001년

위탁운영단체 선정과정에서 특혜선정으로 논란이 된 위탁단체의 청소년수련시설 운영권포기(한겨레 2001. 2. 24. 17면), 서울시 민간위탁시설 점검 '주먹구구식'(세계일보 2001. 1. 16. 79면), 공공극장의 민간위탁으로 흑자가 더 문제인 공공 공연장: 민간위탁이 전시성이나 재정자립도에만 기울지 않고 예술성과 공공성 강조필요, 평가방식개선필요(대한매일 2001. 1. 26. 6면), 말로만 '작은정부': 공직 구조조정으로 작고 효율적인 정부 그러나 무늬만 인력감축

2) www.kinds.or.kr 참조

으로 시설관리공단 같은 불필요한 조직을 신설, 민간위탁(아웃소싱) 등으로 감축인력이 대부분 고용 승계(한국일보 2001. 1. 29. 5면), 정부는 공공체육시설을 민간에 위탁관리할 계획(조선일보 2001. 2. 15. 30면), 인천남구청 사회복지관 민간위탁신청 참여에 교회참여 원천봉쇄 논란(국민일보 2001. 2. 20. 13면), 인사동길 역사문화탐방로 민간위탁 관리(대한매일 2001. 3. 16. 25면), 인천시 체육시설 민간위탁(문화일보 2001. 10. 4. 29면), 민간위탁 올림픽스포츠클럽 부실운영으로 분당 등 3곳 잠정폐쇄로 이용자 큰 피해(경향신문 2001. 5. 26. 15면), 전북 문화시설 민간위탁 확산(대한매일 2001. 6. 21. 25면), 공기업·정부기관 1516명 감축(한겨레 2001. 10. 17. 11면), 민간위탁운영 공영 주차장(중앙일보 2001. 11. 06. 23면)

○ 2000년

민간위탁 사업을 둘러싼 공직사회의 밥그릇쟁기기 행정개혁 뒷전(대한매일 2000. 1. 21. 29면), 지자체 '조직 슬림화' 민간위탁 러시(대한매일 2000. 1. 31. 29면), 경기도 일산 올림픽스포츠클럽이 민간위탁된 뒤 경영난으로 파행운영 문단을 위기(문화일보 2000. 2. 23. 29면), 민간위탁업무 실태전면조사: 공무원이 하던 일은 민간에 이양, 공무원수를 줄이는 등 예산 절감 효과가 컸다는 평가에도 불구하고 위탁업무에 대한 정부차원의 종합관리(대한매일 2000. 2. 26. 27면), 청소년수련시설 안전점검: 적발된 시군이 적영 또는 위탁운영하는 청소년수련시설 7곳 포함(조선일보 2000. 3. 16. 25면), 민간기업 따라 잡자: 공공기관, '사후 만족 확인제도'(Happy Call) 등 도입(중앙일보 2000. 3. 20. 25면),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업 등 까지 벤처지정 가능한 것에 대해 문제 제기 한 KDI 보고서(벤처지정은 첨단기술분야에 국한해야)와 정부의 시각차이(중앙일보 2000. 4. 25. 5면), 부산시 행정업무 민간위탁 확대(대한매일 2000. 5. 9. 28면), 경기도와 시군 공공시설 및 업무의 민간위탁을 통한 인원 감축으로 예산절감 효과 톡톡(세계일보 2000. 8. 29. 79면), 88올림픽 시설물 유지보수비만 수백억: 상징성과 공공성 때문에 민간위탁 어려워(중앙일보 2000. 9. 26. 25면), 일산 올림픽스포츠클럽 파행운영: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사업능력 검토없이 민간위탁한 뒤 방치(조선일보 2000. 12. 18. 25면)

이상의 신문기사를 토대로 민간위탁이 필요한 비수익 사무에 대해서는 적절한 수준의 재정보조가 필요하며, 민간위탁 예상되는 신규시설에 있어서는 건립 초기 단계부터 민간이 참여하도록 하여 예산의 낭비를 줄여야 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청소년시설의 합리적인 위탁을 위해서는 청소년기본법과 아동복지법의 관련조항을 개정할 필요가 있으며, 위탁기관의 선정 등에 대해서는 관계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포함시켜야 하고, 특히, 위탁계약서를 표준화하고 청소년시설의 운영규정을 조례로 정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는 점을 시사 받을 수 있다. 이와같이 민간위탁과 관련한 많은 장점과 추진의지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하여 지속적인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3. 외국의 청소년관련시설의 운영현황과 기준

청소년수련시설을 운영하는 시설기준의 형태가 각 나라마다 청소년정책의 흐름이 다르고 국가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다르다 보니 청소년수련시설의 국가별 운영이나 위탁과 같은 형태와 이들 시설의 운영기준이 정확하게 나타나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들 외국의 사례를 그대로 적용하기 매우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1) 미국

미국에서는 민간위탁의 비율이 높은 부분은 시정부가 비교적 용이하게 민간위탁을 실시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일리노이주의 경우 <표 I-2>과 같이 공익사업을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가 가장 많고 주

요 대상업무는 도로보수 및 유지관리, 가로수정비와 식수, 상수도, 정수장, 하수수거, 수위서비스, 급여관리 등이 가장 많은 위탁유형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2> 일리노이주의 민간제공사례

서비스의 종류	시정부 수	비율(%)	계약만족도
수위, 서비스	100	27	2.51
건물, 토지관리	29	7	2.10
건물경비	18	7	2.21
스쿨버스 관리 및 차량관리	38	11	2.03
중장비	47	16	2.10
구급차량	27	9	2.05
기타 다른 차량	25	8	2.10
급여관리	12	3	2.36
세금고지서 처리	7	2	1.50
세금감정	3	1	1.67
자료처리	10	4	2.00
채납세금징수	4	1	2.50
자동차 차량번호판 관리	23	8	2.24
법률 서비스	263	68	2.00
비서 서비스	6	2	2.60
인사관리 서비스	5	2	2.33
노동조합 관계	25	9	1.85
홍보 및 공보	5	2	2.80
식당	37	45	2.69
세금징수	42	14	2.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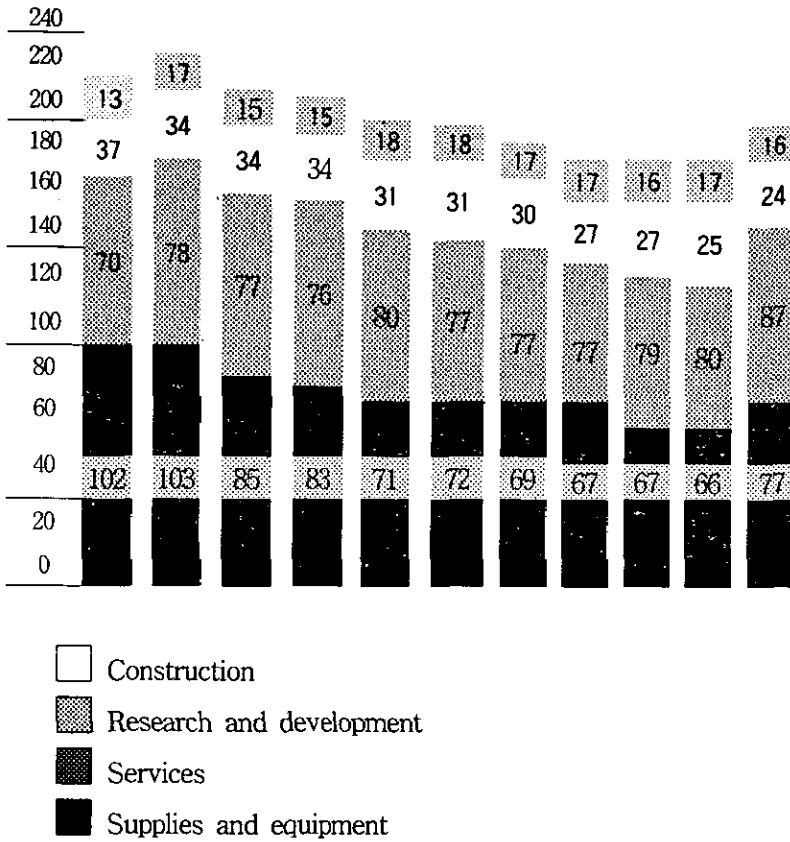
* 자료출처 : 한영주 · 조임곤, 1998:27. 재인용.

미국에서 시설민영화에 대한 논의는 국유재산(공기업)의 매각을 통한 민간영역의 확대를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특정기능을 수행하는 데 있어 가능한 정부의 개입과 역할을 축소하고 민간기업의 역량과 시장메카니즘을 보다 널리 활용하게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이러한 접근방식 하에서의 민영화는 주로 정부가 직접 서비스에 대한 생산 또는 공급자로

서의 역할을 수행하기보다는 민간생산자와 소비자의 연계자 또는 생산자를 지정하는 지정자/배열자(arranger)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등 서비스의 제공방식에 초점을 두고 있다.

미국의 연방계약은 1980년대 냉전의 해소와 이로 인한 국방비의 감소에 따라 이의 원활한 안배를 위해 확대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계약은 1990년대 들어 점차 확대되었는데 재정규모를 보면 1999년도에 1,870억불에 달하였으며 2000년도에는 그 규모가 더 늘어 2,040억불에 달하였다. 즉 [그림 II-1]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0년도와 2000년 사이의 물품과 장비구입에 250억불을 지출하였으며 특히 서비스관련 부분의 구입 즉 민간부분의 이양이 170억불에 달하며 그 비율이 24%에 달하였다.

Billions of constant fiscal year 2000 dollars



[그림 II-1] Changes in Federal Contract Spending(1990-2000)

* 자료: GAO analysis of data extracted from the Federal Procurement Data System for actions exceeding \$25,000

특히 [그림 II-1]에서와 같이 서비스부문의 위탁은 연방정부 전체 위탁예산의 43%를 차지하는 등 그 비용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이와 같은 서비스부문의 성장은 다음 두 가지 측면에 대해 정부에서 요구가 점점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첫째, 정보기술서비스부문의 예산이 1990년도의 37억불 규모에서 2000년도에는 그 규모가 134억불로 확대되었다.

둘째, 전문적이고 행정분야 그리고 관리지원분야서비스가 1990년의 123억불에서 2000년에는 211억불로 증가하였다.

서비스위탁의 증가는 상대적으로 연방정부 인력의 21% 감축에 대한 효과를 가져왔으며 비용면에서 보면 1990년도의 225억불의 비용지출을 하였는데 2000년도에는 178억불을 지출하여 상당한 비용의 감소를 가져왔다. 서비스위탁이 상설화되면서 비용과 고용과정이 변화를 가져왔는데 이러한 변화를 서비스의 매입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구체적으로 보면 1996년도에 GSA³⁾(General Services Administration)에서 연방정부의 서비스위탁프로그램의 공급에 따라 정보기술을 제공하기 시작하였으며 부수적으로 전문가 공학에서 실험실 검사와 분석, 임시직원, 전문적 지원서비스를 제공하였다.

1994년 Federal Acquisition Streamlining Act를 제정하여 연방정부가 물건과 서비스를 위한 주문, 전달 등 다양한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업무의 계약을 추진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1996년에는 Clinger-Cohen Act를 제정하여 정부기관끼리 통합된 서비스와 공학적 서비스, 기술적 지원, 유지의 네트워크와 같은 서비스를 하고 정보기술과 관련된 생산품을 구입하도록 용이하게 하는 계약을 정부기관에서 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 3) 계획된 프로그램에서 GSA는 대부분 상업적 목적의 물품, 서비스, 파는 사람과 직접 계약을 하여 물건을 주문하고 그 물건을 다른 기관에 제공하는 이러한 다양한 일을 위한 사람들과 직접 협상을 하였다. 전통적으로 이러한 프로그램에서는 일상적 물품, 사무용가구와 물품 등을 취급하였다. GSA에 따르면 전통적 방법을 이용하여 연간 268일을 계약하였다.

그러나 모든 위탁계약이 성공적인 것만은 아니다. 계약서비스의 철저한 검증이 없이는 오히려 더 많은 비용의 지출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2001년 1월에 전략적인 인간자본경영의 사례를 보면 미흡한 계획, 부적절한 요구조건의 명시, 불충분한 가격의 평가, 계약실행의 통찰력 미흡 등으로 다음과 같은 사례에서 많은 문제를 초래하기도 하였다.

사례 1) 국방부(DOD : Department of Defense's)의 정보기술서비스의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직무의 위탁서비스업무에 대한 가격평가 계약을 추진하면서 22건의 계약을 추진하고 5억 5천3백만불을 지불하였는데 실제 계약을 추진하고 난 후 100건 이상의 문제점이 발견되고 금액도 67억불로 늘어나게 되었다. 그 분야는 전문적 분야, 행정, 운영분야에 까지 확대되었다.

사례 2) 에너지국 조사관(Inspector General at the Department of Energy)의 보고에 의하면 Oak Ridge회사에 보안서비스를 위탁계약하여 2억 1천8백만불을 지급하였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이중운영구조의 합리화를 추진하였을 경우 줄일 수 있는 비용을 지불한 결과를 초래하여 합병이전에 보안담당인원이 640명이었는데 합병이후에는 이 인원이 오히려 744명으로 늘어나 비용절감을 5백만불을 예상하였지만 7백5십만불의 비용증가를 가져오는 문제를 낳게 되었다.

결국 미국의 위탁계약의 핵심으로 여기는 부분은 의회와 행정부에서 인간자본의 관리와 관리의 위탁이라는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기관 계획에 따라 인간자본의 관리를 전략적으로 통합하려는 중요성을 강조하고 실제 가시적으로 계약부분에 위탁계약시 이 부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즉, 실제 위탁계약시 직접적인 직업이나 일과 같은 고정부분의 계약보다는 프로젝트에 기초한 성과급 계약을 더 중시한다.

이는 몇 개의 기준을 주고 이 기준을 맞추는 계약의 형태가 아니라 다소 융통성을 발휘하여 어느 정도의 다양성 있는 조건을 제시하는가가 계약의 선결기준이 된다.

성과기초계약은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많이 활용하는 용어로서 여러 이용자들에게 여러 가지 다른 생각을 적용하도록 하는 의미이다.

연방정부의 성과기초계약(Subpart 37.6)을 기술한 내용을 보면 계약 방식은 성과의 질적 수준을 보장하고 전체의 비용은 서비스 제공시 계약 기준의 책도를 제공⁴⁾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계약은 다음의 4가지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 ① 작업의 수행방법보다는 결과 요구의 규정
- ② 측정이 가능한 수행기준과 질적으로 감독이 가능한 계획의 보장
- ③ 비용절감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과 과정
- ④ 적절한 유인가를 어떠한 방법으로 제공할 것인가 등이 포함된다.

또한 서비스계약을 추진함에 있어서 최소한 다음의 요구조건을 필요로 한다.

○ 위탁계약시의 계약필요충분조건

- 1) 계약당시 업무와 관련하여 측정이 가능한 실행평가계획서가 있어야 함
- 2) 실행평가계획서의 전개에 필요한 성과기준(양, 질, 시간성)을 제시
- 3) 정부의 질적 보증계획을 계약자가 어떻게 수행할 지에 대한 수행기준의 측정요소 제시
- 4) 만일 습득되어진 것이 결과적으로 기관의 사명을 수행하는데 비판적이거나 상대적으로 기금의 큰 비용소모, 정부의 추진한 계획과 대비하여 긍정적 부정적 유인가를 필요로 하는 경우

4) [http://www.arnet.gov/reference/policy letter](http://www.arnet.gov/reference/policy_letter)

○ 위탁계약조건의 부가적인 요소

- 1) 사적인 직무부담분석을 수행하고 만일 사적인 자료가 무용한지, 사업계획서의 필요조건과 표준에 그리고 정부에서 요구하는 질문과 유인가에 적절한지를 결정하도록 돕는 자료가 되어야 한다.
- 2) 감독과 계약/과업 지시서는 논리적이고 사업계획서에 필요한 내용, 수행계획서 표준, 정부의 질의응답과 사업계획서 인센티브내역서 등을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 3) 과정지향요소(process-oriented requirements)들 즉 직무기술, 교육필요조건, 결과노력수준 등과 보고서는 최대의 유연함을 보장해야 한다.
- 4) 사업계획을 평가하도록 위임받은 정부의 질의응답 사업계획 평가자들은 사업계획요소(PBSC)에 대한 훈련을 받아야 한다.
- 5) 상업적 요소/산업에 폭넓게 사용되는 기준 등이 평가요소에 반영되어야 한다.
- 6) 계약/과업지시서는 가격이 고정되어야 한다.
- 7) 계약/과업지시서는 임시적인 자료가 아니라 완전한 형태이어야 한다.
- 8) 다년간의 계약허가는 가용한 변동을 포함시켜야 한다.
- 9) 승인된 운영자로부터 제시된 내용이나 경험을 계약조건의 수정 과정에 포함시켜야 한다.

○ 다른 조건 등

- 1) 과거의 사업계획서 평가는 계약자의 질의응답 측정과 인센티브, 질의응답계획 등의 결과에 기초하고 과거의 사업계획요소를 동일하게 추진해야 한다.

- 2) 순환되는 요구조건들(가격이나 사업계획서 등)은 수정할 수 있어야 하고 이러한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 3) 계약/과업지시서는 경쟁적으로 수용되어야 한다.
- 4) 가장 가치 있는 평가/선발방법은 계약/과업지시서에 수용되어야 한다.
- 5) 비형식적인 갈등해소 방법(즉 대안적인 논의 해결, 여론수렴, 형식적인 공조동의 등)이 제시되어야 한다.

그리고 계약자가 제시한 성과의 내용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정부는 다음의 3가지 요소를 중요한 항목으로 제시하고 판단한다.

<평가요인>	<가중치>
① 기술적 성과: 작업생산의 질	45%
· 이정표와 시간표	
· 생산성의 개선	
② 관리적 성과	30%
· 프로그램 운영	
· 안전과 건강	
· 여성, 사회적 약자 등의 수용	
③ 비용적 성과	25%

계약을 하는 과정은 모든 조건(공공기관에서 제시한 계약의 내용을 제외함)을 다 제시해야 한다.

<표 II-3> 시설위탁시 평가항목의 사례

로키평원(1995년 4월 계약)	서부계곡 (1995. 1. 10계약서명)
- o 결과지양 직무구술 - o 실행측정 - 표준과 확장 - o 비용분담 유인가 - o 심사전에 협상을 계약 - o 민영화 발의를 포함 - o 소규모 손실성 업무 15%, 기술자 및 전문가업무 50%, 소규모 손실 25%의 분담 - o 표준목표 15%, 확장목표 85% - o 종업원과 함께 이익의 금액을 인센티브로 제시하는 실행 20% - o 종업원과 비용절감을 위해 나누는 부분 50%(계약자의 담당) - o 재정정보의 개선 - o 위험부담금 85%의 확보 - o 개인부담금의 감소 - o 고정비용의 전환계획	- o 목적적 표준에 기초한 비용의 90% 제시 - o 실행측정 - o 실행측정에 기초한 인센티브 - o 비용절감비율 첫째 5백만불 중 75/25, 이후 70/30의 비율 - o 부수계약에 고정가격의 확대적용

이러한 점에 따라 시설위탁을 위한 법을 1999년 4월 9일 통과하여 계약의 타당성을 위한 각종 기준을 마련하였는데 이러한 법적 근거와 각종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서비스계약(Service Contracting)

Policy Letter 91-2(To the Heads of Executive Agencies and Departments)⁵⁾

5) References : Policy Letter 91-2

① 목적 : 이 제안서는 정부나 공공기관의 서비스계약을 올바르게 행하기 위한 숙지내용이다. 여기에는 성과요구의 적용과 계약요구조건을 정의하는 질적 기준, 자원선택, 질적 보장 등의 내용을 강조하고 있다. 즉 적절한 성과의 질적 수준을 성취해야 하며 금액지불은 계약표준에 근거하여 서비스에 적절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② 근거 : 이 법은 연방정부조달청법 6항에 근거하고 있다.

③ 배경 : 매년 정부에서는 서비스의 양이 상당한 수준으로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시설의 일상적인 유지를 위한 서비스의 범위에서부터 고도로 복잡한 기계나 시설 그리고 설계, 시스템의 개발과 제공, 프로그램활동과 운영을 위한 전문적 지원 등과 같은 경영의 지원 등에 대한 서비스범위가 늘어나고 있다. 결국 내부기관의 조사와 평가에 의하면, 부적절한 계약을 시도할 경우 결과적으로 부적절한 서비스로 이어지며 불만족스러운 수행과 계약상의 행정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즉 불필요한 직무수행, 불필요한 고정비용의 지출, 양적 기준의 결핍, 부적절한 질적 보상의 관계 등은 계약의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다. 결과적으로 보면 서비스의 숙지에서 보면 가격과 질적인 측면에서 서로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성과에 기초한 서비스의 계약방식은 정부 쪽에서는 계약의 질을 높이고 계약자는 적절한 사람이 선택되어 양 집단을 효과적으로 만족시킬 수 있다는 결론을 제시하고 있다.

④ 정책 : 연방정부의 정책은 서비스계약을 추진함에 있어 대리권을 가진 기관(agency)을 선정하고 그 기관에 다음과 같은 점에 초점을 두고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

- 대리기관은 서비스의 추진을 위해 최대한으로 성과기초의 계약방식을 선호하고 있다.
- 대리기관은 계약의 내용과 계약추진전략, 방법, 필요한 조건을 가장 효과적으로 성취할 수 있는 기술적인 방법 등을 주의깊게 분

석한다.

여기에 부가적으로 대리기관은 얻어질 서비스, 계약파일에 영향을 주는 문서 등을 성과기초계약방식에 적용하면 공정하게 다룬다. 그리고 성과기초계약방식은 다음의 내용을 따른다.

- 직무의 진술 : 직무의 진술을 준비할 때 기관은 어떻게 직무를 성취할 것인가 보다는 결과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라는 용어에 직무기술을 최대한 적용해야 한다. 직무의 기술을 규정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관련 서류를 제시해야 한다.
- 질적 보장 : 기관은 최대한으로 질적 수행을 위한 계약자의 완전한 책임을 할당하고 실제의 내용을 확대해야 한다. 기관은 형식적이고 측정할 수 있는(질적, 양적, 시간적) 수행표준과 계약수행의 평가를 이행할 수 있는 감독계획 그리고 인센티브와 헌신할 수 있는 계획까지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기관은 최대한 실천할 수 있는 내용을 확대해야 하는데 기관이 과정지향조사를 강조하여 부담이 되거나 귀찮게 하는 요인이 있어서는 안되며 계약자수행의 접근에서 프로그램의 과도한 요구가 있어서는 안된다.
- 선발과정 : 가장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계약활동이라는 것은 질적 관계요인 즉 기술적인 능력, 경영능력, 비용현실주의, 과거의 업적수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러한 요인을 질적인 수준으로 판단하고 평가하고 선발하는 과정에 깊이 고려해야 한다. 현실적인 비용을 고려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기술적인 제안서와 함께 동일한 요구조건의 이해로서 평가해야 한다.
- 계약형태 : 계약의 형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고정가격계약은 사업수행과정에서 나타날 위험을 관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용할 수 있는데 이러한 형태는 일반적인 형태로 자주 이용된다.

- 계속되는 요구조건 : 서비스를 요구할 때는 계약자는 이전의 사업 프로젝트인지의 적정한 계약을 얻은 내용을 통해 믿을 수 있는 경험에 있는지를 가져야 한다. 즉 신뢰할 수 있는지 말이다. 즉 무엇을 실행하였으며 실행표준과 감독계획 등이 이전에 계약한 내용보다 더 제한적인지 아닌지를 파악해야 한다. 적정한 비용배상에서 고정가격의 배열에 이르기까지 잘 수행하였는지와 가능한 것, 유인가있는 제공내용 그리고 질적 보장스케줄 등이 잘 진행되었는지를 알아야 한다.
- 다년계약 : 다년계약을 위해 기관은 서비스를 제공할 때 기관의 허가권의 사용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허가권의 사용은 더욱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계약환경을 제공할 때 경쟁성을 증가시키게 된다.

한편 야외여가시설과 관련하여서 우리의 청소년시설을 개설하여 임대하는 식의 기준은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지는 않지만 대부분 주정부가 명문화하여 시설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것을 주의 법으로 명시하고 있다. 특히 미네소타주의 경우 야외여가시설과 캠핑시설의 설치 및 운영, 관리와 관련된 법적인 내용을 제정하고 이의 시설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요구조건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2) 야외레크리에이션(Outdoor Recreation)⁶⁾

① 주립공원과 다른 레크리에이션시설의 공공이용에 대한 기준

6) State of MN, Official Publication of the State of MN, Charter 6100 to 6950, MN Rules 1999.

* 일련번호는 원본의 내용과 다른데 개정되거나 삭제된 규정은 제시하지 않았다.

Public Use of State Parks and Other Recreational Areas

- 확고한 허가기준(6100.0100)

미네소타 주법에서 주립공원과 레크리에이션에 관한 기준을 6100.0100에서 6100.2400까지 허가하였고 기타 세부 관련법은 section 16A.1285, 84.03, 85.052, 85.20, 86A.05, 89.031, 89.19, 89.20, 89.21, and 89.71, subdivision 4 등이다.

위생허가기준은 미네소타주법 14.045; 84.03; 85.052; 85.053; 85.20; 86A.05; 86A.06; 89.031; 89.19 to 89.21, 89.71 등이다.

- 목적(6100.0200)

6100.0100에서 6100.2400까지의 목적은 주립공원과 삼림지역을 이용함에 있어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데 있다.

- 배경(6100.0300)

주법 6100.0100에서 6100.2400까지 규정한 내용은 자연자원의 감독자에 따라 주립공원이나 삼림지역을 잘 활용하도록 통제함에 있다.

- 정의(6100.0500)

1. 전망 : 6100.0100에서 6100.2400의 목적에 따라 여러 가지 다른 의미가 없으면 이 부분에서 정의한 용어는 거기에 주어진 용어에 따라 그 단락 으로부터 명백하게 한다.

1a. ATV : ATV(All-terrain vehicle)는 미네소타 주법, 섹션 84.92, subdivision 8항에 따른다.

2. 해변 : 해변의 의미는 수영과 일광욕을 위해 설계된 해안이나 물이 있는 곳을 의미한다.

3. 커미셔너 : 커미셔너의 의미는 미네소타 주법에 따라 허가받은 기관을 통해 직접적으로 자연자원의 관리를 위임받은 사람을 의미한다.

3a. 분산캠핑 : 분산캠핑은 야외캠핑지역이나 설계된 야영지에서 숙영하는 캠핑형태를 말한다.

3b. 소화기 : 소화기는 미네소타 주법 section 97A.015, subdivision 19에서 규정한 것을 의미한다.

4. 삼림캠핑장 : 삼림캠핑장은 여가활동과 관련하여 그리고 캠핑을 위한 삼림 지역에서 커미셔너가 개발하고 관리하는 지역을 말한다.

5. 삼림일일사용지역 : 삼림일일사용지역은 보트접근, 수영비치, 피크닉과 같이 일상적인 활동을 위해 사용되어지는 삼림 위에 설계한 캠핑장을

의미한다.

- 5a. 삼림지역 : 삼림지역은 미네소타 주법 section 89.001, subdivision 13과 삼림캠프장, 삼림일일사용지역, 삼림레크리에이션지역 등을 포함하여 커미서너의 허가 하에 삼림지역으로 규정된 곳을 말한다.
- 5b. 삼림관리원 : 삼림관리원은 미네소타주의 자연자원과(Department of Natural Resources)에서 허가하고 고용한 사람으로 커미서너와 같은 의미를 갖는다.
- 5c. 삼림레크리에이션지역 : 삼림레크리에이션지역은 캠프장, 피크닉장,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곳, 주차장과 같이 일상적으로 여가활동을 하는 지역을 말한다.
- 5d. 삼림지역길 : 삼림지역길은 미네소타 주법 section 89.71, subdivision 1에 준하여 기록한 도로를 말한다.
- 5f. 삼림오솔길 : 오솔길은 삼림지역에서 레크리에이션활동을 위해 커미서너가 제시한 삼림지역에 위치하고 건설하며 유지한 땅을 말한다.
- 5g. 말 : 말은 사람이나 장비, 재료의 수송의 목적으로 이용되는 반추동물이나 되새김질하는 동물로 알파카, 라마, 노새, 말 등을 통칭한다.
6. 독극물 : 독극물이란 미네소타 주 section 340A, 101, subdivision 14에 정한 물질을 의미한다.
7. 자동차 : 자동차란 스노우모빌을 포함하지 않고 자발적 힘에 의해 추진되는 모든 동력의 차량을 의미한다.
- 7a. 공원관리인 : 공원관리인은 공식적으로 허가를 받아 직접적으로 주립공원을 관리하는 모든 사람을 칭한다.
- 7b. 공원사무원 : 공원사무원은 미네소타 주에서 허가하여 자연자원과(Dept' of Natural Resources)에서 고용한 직원을 의미한다. 이들은 미네소타보존과를 포함한 법과 규칙에 준거하여 주립공원을 관리하는 커미서너까지 포함한다.
8. 사람 : 사람은 이 시설을 이용하는 개인, 집단, 협회를 통칭한다.
- 8a. 제한구역 : 제한구역은 특별히 허가받은 사람이나 비용을 지불한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특별한 공간으로 일정한 표식이 되어 있는 공간을 말한다.
- 8b. 도로 또는 고속도로 : 도로나 고속도로는 미네소타 주법 section 160.02, subdivision 7에 따라 규정된 도로를 말하며 삼림지역의 길은 포함하지 않는다.

- 8c. 암벽등반 : 암벽등반은 평평하지 않는 바위를 기구없이 등반하거나 보조등반, 기술등반 등을 포함하여 사람이 오르는 활동을 의미한다.
- 8d. 보조동물 : 보조동물이란 개가 보거나 듣는 활동을 통해 주요 구조활동을 도울 수 있는 동물을 말한다.
- 8e. 대피소 : 대피소는 슬리핑백을 포함하여 잠을 자거나 피할 수 있는 장비가 있는 곳을 말한다. 여기에는 텐트, 트레일러, 등산장비, 버스나 트럭 등 차량, 배 등이 있어야 한다.
9. 산악자동차(Off-road vehicle) : ORV는 미네소타 주법 section 84.797, subdivision 7에 따라 규정한 차를 의미한다.

• 벌칙(6100.0525)

6100.0100에서 6100.2400에서 기록한 내용에 따라 폭력행위를 한 사람은 그 사람에게 주어진 허용기준을 취소하고 주립공원이나 삼림지역 또는 다른 적법한 지역에서 즉시 추방당한다.

※ 한 예로 스노우모빌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운행하지 않았을 경우 다음과 같은 벌칙을 받게 된다.

STATE OF MINNESOTA
DEPARTMENT OF NATURAL RESOURCES
RESORT PURSUANT TO MINN. STAT. § 84.872

1. _____ (Juvenile Judge or authorized agent)
do hereby report that on the _____ day of _____, 197____,
(Name of Juvenile) _____, was found to have violated
a state or local law relating to the operation of snowmobiles, to wit: _____

It is my recommendation that said juvenile's snowmobile safety certificate _____
(be or not be) _____
suspended. It is further my recommendation that such suspension, if any,
be for a period of _____ days.

Dated this _____ day of _____, 197_____.

(Juvenile Judge or authorized agent)

(Notice : Transmit the Juvenile's snowmobile safety certificate along with this Form if the suspension exceeds 15 days.)

Send to :

Commissioner
Department of Natural Resources
Centennial Building
St. Paul MN 55155
Attn: Snowmobile Safety Coordinator

· 특별한 사건(6100.0550)

1. 허용자격의 요구 : 특별한 사건이나 상업적 이용자 또는 기관은 주립공원이나 삼림지역에서 자신의 목적을 위한 행동을 할 수 없다. 다만 그 지역의 커미셔너가 그 사건이나 계약, 임대 또는 문서화된 허가서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이다.

2. 비용과 보험

A. 커미셔너는 주립공원이나 삼림지역의 상업적 사용이나 특별한 사건을 위해 일정한 비용을 요구할 수 있다. 비용은 사용자의 자원훼손을 경감하고 방지하며 시설물을 관리하고 정비하며 개발시키는 곳에 사용하게 된다.

B. 커미셔너는 미네소타 주에서 언급한 내용이 보장된 허용한 날짜에 책입액을 증명하도록 보장한 상업적 이용의 경우나 특별한 사건의 경우 후원자를 필요로 할 수 있다.

C. 커미셔너는 시설을 정비하고 표지판을 개선하며 손상부분을 원상복구하고 그외 필요한 부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현금이나 수표와 같은 것을 받을 수 있고 후원자를 필요로 할 수 있다.

3. 행상으로부터 보호 : 허가받은 지역이나 기간을 제외하고는 이전에 문서화된 허용기준없이 사람을 고용하여 방문판매를 하는 것은 불법이다.

② 야외여가시설관리기준(미네소타 주법 헌장 6100)

○ 정의

- 배당 : 배당의 의미는 미네소타주에서 매년 설정한 토지와 수자원보호의 기금수준을 의미한다.
- 관청 : 관청은 야외레크리에이션국(Bureau of Outdoor Recreation)을 의미한다.
- 기금 : 토지와 수자원보호기금
- LAWCON은 토지와 수자원보호를 위한 야외레크리에이션국을 의미한다.
- 개방공간 : 개방공간은 도시개발주택과에서 수행하는 도시에서 기존의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 공법 566 : 공법 566은 농업과가 집행하는 소규모구역의 보호와 홍수통제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 여가사업제안을 위한 기준(6100.7100)

- 목적 : 다음의 기준은 야외의 레크리에이션 사업제안서를 평가하는데 이용되는데 동시에 토지와 수자원 기금으로부터 적절한 재정지원을 결정하는데 우선 순위로 이용된다.
- 평가 : 주 기관에서의 사업제안서의 평가는 3단계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첫째, 일반적 사업의 분류, 둘째, 주 기준의 적용, 셋째, 우선 순위의 배당의 형태로 이루어진다.
- 주의 기준 : 다음의 제시한 사업을 같은 특성을 보유한 다른 사업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 A. 카운티나 시의 계획에서 규정된 사업이 군에서 승인되거나 6100.7400에서 필요한 지역위원회에서 설립한 4가지 부분 가운데 A, B 또는 사업수행의 카운티나 지역위원회에서의 실천프로그램에 포함되었을 때이다.
 - B. 적용기관을 위한 야외여가시설과 기능의 형태는 통상적으로 6100.7200에 따라 공급자의 책임이다.
 - C. 다른 원조프로그램으로부터 기금이 없는 사업(개방공간, 공법 566 등)
 - D. 지원자가 적절하게 연방의 LAWCOM지원없이 사업의 재정적 무능력을 제시하였을 때 지역이나 전국적인 중요성을 가지는 사업
 - E. 횡령이나 무단침입없이 환경을 보존하고 자연경관의 아름다움을 조장

할 수 있는 사업

F. 지역의 중요성을 나타내는 사업이나 전국적으로 중대한 사업

○ 야외여가사업에서 정부가 해야 할 책임(6100.7200)

- 개요 : 사업과 공공부문 사이의 분명한 구분이 없다하더라도 공공의 노력은 사기업가의 노력에 병행하여 제시되어야 한다. 만일 책임성에 있어서 분리가 충분치 않다면 시설과 봉사는 이익을 위해 영리를 목적으로 사기업에서 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부분은 경쟁을 해서는 안 되는데 그 이유는 캠핑지역을 매우 호화롭게 만드는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캠핑지역에서 최초의 형태는 공공의 책임을 유지해야 할 것이다. 정부수준으로 책임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야외여가목적에 위한 공공성의 특성을 고려하는 시설과 지역을 규정해야 한다. 여기에는 문화적이고 심미적인 쾌적성 즉 길옆의 아름다움, 공기, 물, 역사적 유적 등을 위한 영역이 포함되지 않는다.
- 공공책임성에서 시설과 영역의 형태 : 1965년 미네소타법의 헌장 810에 준하여 섹션 29(미네소타 주법으로 명문화된 섹션 86.71)는 주지사 또는 주 기관, 또는 주지사가 임명한 기관이 있어야 하며 이 기관에서는 연방 토지와 수자원기금법으로부터 미네소타 주에 부여된 연방기금을 분배하고 수령하며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1965년 6월 24일 주지사는 이러한 기금을 받고 분배하는데 주지사를 위한 주 기관으로부터 보존과 (Dep't of Conservation)를 만들었다.

A. 시의 책임

(1) 부지점유사용과 시설(Occupancy use sites and facilities)

- ① picnicking, urban
- ② playgrounds
- ③ playfield, excluding, semipro and professional
- ④ golf link, without membership
- ⑤ swimming, natural beaches
- ⑥ ski areas, amateur
- ⑦ boat and canoe access

⑧ skating rinks, amateur

⑨ hockey rinks, amateur

⑩ archery ranges

(2) 나대지사용과 시설(Dispersed use sites and facilities)

① natural areas

② arboreturns

③ scenic areas

④ parkways

⑤ hiking trails

⑥ horse trails

⑦ bicycle trails

B. 카운티지역의 책임

(1) 농촌지역의 소품

① picnicking, wayside

② playing fields, rural excluding semipro and professional

③ playgrounds, rural

④ golf link, without membership

⑤ swimming, natural

⑥ ski areas, amateur

⑦ boat and canoe landing

⑧ camping, group tent

⑨ camping, wayside

⑩ camping, primitive

⑪ trap shooting

⑫ rifle ranges

(2) 나대지사용과 시설(Dispersed use sites and facilities)

① natural-areas

② park areas

③ scenic areas

④ parkways

⑤ waterfront zones

⑥ roadside zones

- ⑦ hiking trails
- ⑧ horse trails
- ⑨ snowmobile trails
- ⑩ historic sites, multiuse
- ⑪ hunting and fishing areas

C. 주정부의 책임

(1) 부지점유사용과 시설(Occupancy use sites and facilities)

- ① picnicking, rural
- ② picnicking, wayside
- ③ boat and canoe landing, state owned land only
- ④ camping primitive, without road access
- ⑤ camping primitive, with road access
- ⑥ camping, group tent
- ⑦ 캠프camping, wayside

(2) 나대지사용과 시설(Dispersed use sites and facilities)

- ① natural history areas
- ② geological history areas
- ③ human history areas
- ④ park, multiuse
- ⑤ forests, multiuse
- ⑥ water areas
- ⑦ scenic areas
- ⑧ parkways and scenic waysides
- ⑨ waterfront zones
- ⑩ roadside zones
- ⑪ wilderness trails
- ⑫ wildlife areas

○ 사업우선순위 시행을 위한 분류기준(6100.7300)

1. 추가사업분류 : 추가사업은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A. 토지는 도시와 시골인구의 필요에 맞는 여가활동의 형태에 적합한 다목

적 대지를 제공해야 한다.

- B. 토지는 자연적, 과학적, 문화적, 역사적, 교육적 여가가치에 결합되어야 하며 이러한 것은 동식물의 회귀종을 위한 서식지를 제공하고 생태학적 서식지, 역사, 문화적 여건, 독특한 지리적 형태 등을 공공의 여가사용을 위해 개발하고 열거해야 한다.
- C. 여가시설토지는 여가사용의 입차형태의 목적을 위해 사용하도록 규정한 것은 이에 위배되어서는 안된다.
- D. 여가시설토지는 공공의 접근, 자연지역, 낚시와 야생서식지, 도로변, 철로변, 해안지역 등을 제한하지 않고 이러한 장소를 이용할 수 있다.

2. 일반점유사업순위 : 어떤 분류기준에서 구체적인 점유의 우선순위는 1967년에 제정된 미네소타법 6100.7000에서 주의 기준을 제공한다. 가장 우선적인 사업은 미네소타에서 제공하는 기금의 배분과 이와 유사한 사업을 통해 기금을 배정받도록 규정한 사업에 기인하여 프로그램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은 기금이 고갈되거나 없을 때에는 집행하지 않을 수 있다.

3. 개발사업의 분류 : 우선순위의 평가목적에 의해 야외여가개발사업은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 A. 사업은 토지의 영원한 보존에 기본적인 목적을 두되 공공의 이익에 관심을 두는 사업
- B. 이용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
- C. 수자원의 접근이 가능한 곳, 하이킹, 승마, 스노우모빌 등 다른 수단을 제한하지 않는 이러한 지역에서 수행하는 사업
- D. 특수 공공의 집단이익보다는 일반대중의 다목적 여가 기회를 제공하는 영역의 시설과 사업 즉 소풍, 놀이터, 사격장, 수영비치, 스키, 놀이시설 등의 접근이 가능하고 장애인, 어린이, 특권이 없는 일반집단이 이용가능한 시설
- E. 캠프장과 같은 야외여가를 위해 규정한 사업에서 주민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사업
- F. 다수가 이용할 목적으로 제공되는 단순목적사업은 피크닉장소, 운동장, 놀이터, 수영장, 해변, 스키장, 운동장 등을 제한하지 않고 가능하다.

4. 사업우선순위 개발 : 일반적인 분류에서 구체적인 개발사업을 위한 우선 순위는 다음과 같다.

① 부지 자체의 질을 판단해야 하고 주정부의 야외여가계획에서 현재 승인한 우선순위계획의 정의한 목적을 준수하여 그 부지의 계획한 목적을 위해 사용하기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판단할 것.

② 사업의 우선순위는 1967년 미네소타 주의 섹션 86.71, Subdivision 3에 따라 공표된 주립 야외여가계획에 부응하여 적합하게 이용하되 6100,7100에서 규정한 주립기준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 보건과의 캠프와 이동주택공원관리기준(헌장 4630)⁷⁾

CHAPTER 4630,

DEPARTMENT OF HEALTH, CAMPS AND MOBILE HOME PARKS

1. 이동주택공원과 여가캠핑장소

· 위치(4630.0200)

이동주택공원이나 여가캠핑장소는 공원이나 캠핑지역의 하수가 어떤 수자원 공급이 곤란하지 않는 지역에 위치해 있어야 한다. 모든 공원과 캠프는 하수가 잘 빠지고 공급이 잘되며 홍수의 가능성이 없는 지역에 위치해야 한다. 이동주택이나 여가캠핑차가 땅에 빠지거나 곤란에 처할 수 있을만한 나쁜 장소는 피해야 한다.

· 관리인(4630.0300)

책임있는 사람이나 관리인은 모든 이동주택공원이나 여가캠핑장소에서 언제든지 임금을 받고 근무해야 하며 그들의 공원을 관리하고 장비를 깨끗하게 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위생상태를 점검하는 관리의 역할을 위해 항상 있어

7) State of MN, Official Publication of the State of MN, Charter 4630, Department of Health, Camps and Mobile Home Parks, MN Rules 1999.

* 일련번호는 원본의 내용과 다른데 개정되거나 삭제된 규정은 제시하지 않았다.

야 한다. 이러한 관리인들은 공원이나 캠핑지역의 책임하에 두거나 아니면 특별히 지정한 곳에서 책임을 지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

· 이동주택과 캠핑차의 주차공간(4630.0400)

이동주택은 도로에서 10피트 이내에 있을 때 이동주택공원의 한쪽 구석에서 3피트보다 가깝게 주차시켜야 한다. 각 개인의 이동주택의 부지는 다른 사람이나 차에 지장이 없는 즉 도로에 인접하지 않는 곳으로 다른 차가 다니는데 지장이 없도록 차도로부터 16피트 이내에 있어서는 안된다. 1970년 7월 1일 이후 새로운 이동주택공원을 건설하려면 각 이동주택을 위한 다음과 같은 최소한의 기준을 배정해야 한다. 공원에서부터 하수를 배출하려면 토양의 흡수체계를 고려하여 4,000평방피트의 공간이 필요하며 이러한 하수처리를 위해 2,800평방피트의 공간이 있어야 한다. 여가캠핑장에서 여가캠핑차는 적어도 10피트정도는 다른 구조물이나 다른 시설로부터 떨어져 있어야 한다. 또한 부속건물 즉 천막, 주차장, 개인저장시설 등은 분리가능해야 하며 이러한 것은 캠핑차의 부속물로 고려해야 한다. 캠핑장에서 캠핑차를 위해 최소한 2,000평방피트정도의 공간이 있어야 하는데 다른 공원이나 도로, 고속도로에서 최소한 10피트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한다.

· 애완동물(4630.0500)

애완동물은 이동주택공원이나 캠핑장의 영역내에서 남에게 해를 주는 경우 감금하거나 함부로 나돌아다니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개집, 축사, 또는 애완동물시설은 항상 깨끗한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 물공급(4630.0600)

1. 필요조건 : 안전하고 위생적이며 적절한 양질의 물은 이동주택공원과 캠핑장에 잘 공급되어야 한다. 물공급은 공공의 물공급을 위한 현장 4720과 우물에 대해 규정한 현장 4725의 내용에 적합한 요구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2. 최소의 공급 : 이동주택공원에서 물공급은 이동주택차량 1대당 최소 하루 150갤런의 물을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캠핑장에서 물공급은 최소 1인당 50-100갤런의 물을 공급해야 한다.

3. 위치 : 캠핑장에서 식수로 이용할 수 있는 물은 모든 캠핑장의 적어도 400피트 이내에서 이용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4. 설계 : 모든 물탱크는 뚜껑이 있어야 하고 방수시설과 불침투성의 재질로 만들어져야 한다. 이러한 탱크에 구멍이 있거나 물이 범람할 경우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 맨홀은 다른 재질로 만들어져 인방인치당 20파운드의 무게에 견딜 수 있는 것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이동주택공원과 캠핑장은 개인식수공급이 가능해야 한다. 급수파이프는 이동주택이나 캠핑장의 차량이 손상을 주지 않는 곳에 위치해야 한다. 급수파이프는 적어도 땅에서 최소 4인치이상의 높이로 위치해야 하며 동파방지를 위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파이프(4630.0700)

이동캠핑장의 모든 파이프시스템은 미네소타 Plumbing Code에서 규정한 현장 4715에 따라 설치되어야 한다.

· 하수처리(4630.0800)

1. 배출 : 모든 하수는 시의 하수체계에 따라 배출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체계가 가능하도록 미네소타 Pollution 통제기관이 허락한 기준을 지켜야 한다. 모든 하수체계는 차량이나 다른 이동시설이 공원의 시설을 개선하거나 이용하도록 지나는데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충분히 깊은 위치에 매설되어야 하는데 적어도 10피트 이상의 깊이에 매설되어야 한다.

2. 하수관의 위치와 건설 : 모든 하수관은 시당국의 보건과에서 허용한 재질을 사용해야 하며 적절한 배출구가 있어야 하고 이부분은 단단히 결합되어야 한다. 개인이 사용하는 곳의 하수관직경은 최소 4인치의 규격이 있어야 하고 모든 연결부의 재질은 부식되지 않는 재질과 흡수되지 않는 재질 그리고 반영구적인 재질이어야 한다. 파이프의 내부는 매끄럽게 되어있어야 한다. 예비파이프는 이동주택이나 캠핑차가 부지를 점유하지 않을 때 하수관을 준비해야 한다.

3. 오염통제기관표준에 따름 : 지표면에서 흐르는 물을 이용하여 하수처리 체계를 활용할 경우에는 미네소타 오염통제기관이 규정한 표준에 따라 설계하고 흐르는 물의 질을 활용하여 환경오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흐르는 물이 있을 경우 토양흡수체계를 이용하되 보건담당자가 인정하고 수용하도록 해야 한다. 토양흡수체계가 없을 경우 분당 1인치정도의 여과를 할 수 있는 적정하게 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표면으로부터 4피트 이내에 우묵한 구덩이나 도랑을 만들어 여과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모든 하수의 매립은 표면의 물로부터 적어도 50피트정도의 깊이로 매립을 해야 한다.

· 화장실, 목욕탕, 세탁시설(4630.0900)

이동주택차량이나 캠핑장에서 이러한 시설이 화장실이나 목욕탕 등을 갖추지 않는 차량일 경우 가장 중심적인 건물은 이러한 시설을 제공해야 한다. 고정물의 수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최초의 캠핑지역에서의 화장실시설은 아래의 기준을 최초로 맞추어야 한다.

그리고 수세식으로 연결되지 않는 다른 화장실은 보건당국자의 감독을 받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그리고 캠핑장이나 이동주택공원에서는 세탁실이나 목욕시설을 제공해야 한다. 이러한 시설은 독립된 건물로 되어 있고 적절한 열을 공급하며 환기가 잘 되고 적절한 조명시설과 하수가 잘 빠지는 체계를 갖추도록 해야 한다.

벽은 씻을 수 있는 재료로 만들어져야 하고 서까래나 못이 노출되어서는 안된다.

<표 11-4> 최초의 캠핑지역에서의 화장실시설

Number of Dependent Sites	Toilets		Urinals	Lavatories		Shower	
	Men	Women	Men	Men	Women	Men	Women
1 - 15	1	1	1	1	1	1	1
16 - 30	1	2	1	2	2	1	1
31 - 45	2	2	1	3	3	1	1
46 - 60	2	3	2	3	3	2	2
61 - 80	3	4	2	4	4	2	2
81 - 100	3	4	2	4	4	2	2
101 - 130	4	5	3	5	5	3	3
131 - 160	5	6	3	6	6	4	4
161 - 190	6	7	3	7	7	4	4
191 - 220	7	8	4	8	8	5	5
221 - 250	8	9	4	9	9	5	5
251 - 280	9	10	4	10	10	6	6
281 - 310	10	11	5	11	11	6	6
311 - 340	11	12	5	12	12	7	7
341 - 370	12	13	5	13	13	7	7
371 - 400	13	14	6	14	14	8	8

화장실시설은 성별에 따라 구분이 되는 표지를 해야 하며 이 시설이 캠핑장의 위치에서 400피트 이상 떨어져서는 안된다. 목욕시설과 인접하였을 경우에는 탈의실이 있어야 하고 바닥은 물이 잘빠지도록 해야 한다. 매트나 격자, 그리고 복도는 흡수되는 재질로 만들어져야 하며 의복을 거는 곳이 보행 자동로에 제공되어야 한다. 그리고 세탁기, 건조기 등이 화장실이나 탈의실, 목욕실과 함께 위치해서는 안된다. 캠핑차에 편의를 제공하는 캠핑지역

은 쓰레기처리를 위해 쓰레기탱크를 제공해야 한다. 이러한 위생시설은 4인치의 하수관을 제공해야 하고 직접적으로 쓰레기를 흘러내리게 하는 관을 갖추고 이 탱크는 냄새의 억제를 위해 커버를 달아야 한다. 캠프의 물공급 체계를 위해 연결된 부속물로 물배수구는 즉시 인접한 지역에서 주기적으로 세척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쓰레기 임시저장고는 펜스나 장벽을 만들거나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방벽을 이용하되 캠핑장에서 적어도 50피트 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하도록 해야 한다.

· 바베큐시설, 소방시설, 스토브 그리고 방화시설(4630.1000)

캠핑지역에서 조리장, 바베큐시설, 소방시설, 목재화로 그리고 방화벽 등이 있어야 하는데 이들은 화재의 위험을 최소화하고 이웃의 재산을 손괴할 가능성을 가급적 줄일 수 있는 중요한 시설이다. 방화벽은 미네소타 오염통제 기관에 따라 설치되어야 하며 이외의 장소에서 야외에서 불을 지피는 일은 허용되지 않는다.

· 쓰레기나 분뇨의 처리(4630.1100)

캠핑장에서 쓰레기나 분뇨의 수집, 저장, 처리는 보건상 위험이 없고 쥐나 해충의 위험이 없으며 화재나 대기오염의 문제가 없는 상태로 유지되어야 한다. 모든 쓰레기는 파리, 쥐, 물 등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고 캠핑장에서 쓰레기를 버리기에 편리한 곳에 위치해 있어야 한다. 캠핑장의 쓰레기탱크는 적어도 캠핑장의 차량 4대당 1개정도를 비치해야 한다.

쓰레기 수집은 매주 두 번 이루어지며 마지막 쓰레기의 처리는 미네소타 오염통제기관이 규정한 기준에 따라야 한다.

· 곤충, 설치류의 위협과 전염의 통제(4630.1200)

캠핑장에서는 설치류나 파리, 모기, 다른 해충이 전염시키지 않도록 쓰레기의 부스러기를 흘뜨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저장지역은 설치류의 침입을 막도록 적어도 땅에서 1피트 이상의 높이에 저장하도록 해야 한다. 이들 지역에서는 다른 해로운 잡초들이 자라지 못하도록 깨끗하게 유지해야 한다.

· 야간조명(4630.1300)

보행이나 운전시 공원의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어두워지면 조명을 설치해야 한다.

· 지역사회부엌과 식당(4630.1400)

지역사회에 부엌과 식당이 제공되어야 한다. 이러한 시설과 장비는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정비되어야 하며 음식물을 조리할 수 있도록 주의 법과 규칙에 따라 설치되어야 한다.

· 가스공급(4630.1500)

프로판가스의 저장용기는 적절한 재료에 따라 잘 공급되어야 하며 이 용기는 캠핑장의 차량으로부터 5피트이상 떨어져야 한다. 이 용기는 임시적인 용기로 이용되거나 거꾸로 뒤집혀 있어서는 안되며 항상 제 위치를 유지해야 한다.

· 연료공급체계(4630.1600)

외부의 연료탱크로부터 캠핑차에 연결되는 파이프가 있어야 하며 모든 연료 저장탱크는 차량의 출구로부터 5피트 이내에 있거나 차량의 내부로 파이프가 연결되도록 해서는 안된다. 모든 연료탱크는 절연성 재료로 만들어져야 한다.

· 소방보호(4630.1700)

소방보호는 주의 소방서에서 필요한 요구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 자격증-정의(4630.1900)

1. 범위 : 다음의 정의는 4630.1900에서 4630.2210까지 포함한다.

2. 영역 A : 영역 A는 캠핑장이나 가정공원에서 만들어지거나 다음의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① 독립수영장에서 사용가능

② 지표면으로부터 흐르는 물을 음용수로 이용할 수 있는 조건

③ 50이나 그 이상의 캠핑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조건

3. 영역 B : 영역 B는 영역 A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캠핑장이나 가정공원에서 만들어진 것을 의미한다.

· 자격증을 위한 비용(4630.2000)

1. 개요 : 최초 자격증에 지원을 하거나 재발급을 받으려면 미네소타주법의 섹션 327.14에서 규정한 바에 의해 일정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2. 최초의 자격증 비용 : 최초의 자격증비용은 새로운 지원자가 이 시설을 이용하고자 할 때 지불해야 하는데 최초의 비용은 \$75로 이 비용을 내면 캠핑장의 10개 부지와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3. 재발급비용(영역 A) : 영역 A의 재발급비용은 1991년 1월 1일에 규정되어 \$25를 기본으로 하고 그 외에 각 부지당 \$2.75을 추가하여 500부지까지 이용할 수 있다.

4. 재발급비용(영역 B) : 1991년 1월 1일에 따라 영역 B의 재발급비용은 \$25를 기본으로 하고 1부지당 1.50을 추가하여 500부지까지 이용할 수 있다.

○ 자격의 소멸(4630.2100)

1. 최초의 자격

: 최초의 캠핑장이나 가정공원에서의 자격은 매년초에 생성되고 연말에 없어진다.

2. 어린이캠핑

· 캠핑장(4630.2300)

캠핑장은 어린이가 캠핑을 함에 있어 건강하고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해치는 어떤 곳으로부터 합리적으로 떨어진 장소이어야 한다. 적합한 장소는 식수의 공급이 잘되고 완벽한 쓰레기처리체계를 갖춘 곳이어야 한다. 모든 위험요소가 없어진 곳으로서 어린이를 잘 보호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

· 건물(4630.2400)

식당, 창고, 숙박실 그리고 다른 점유시설을 갖춘 모든 건물은 건물로 덮여야 하며 물리 새는 곳이 없어야 하고 화재나 비상시 쉽게 탈출할 수 있는 통로가 확보되어야 하며 화재시 이를 소화할 수 있는 적절한 장비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문은 잘 맞아야 하며 문과 창문은 열고 닫을 때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고 있어야 하고 모든 창문은 쉽게 열고 닫힐 수 있어야 하며 태풍과 같은 재난에도 견딜 수 있어야 한다.

· 숙박장소(4630.2500)

1. 개인침대 : 각 캠핑은 개인침대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거기에는 침대를 나란히 두었을 때 적어도 침대와 침대사이는 3피트 정도의 간격을 유지해야 한다. 그리고 침대의 끝부분은 사람이 충분히 지나다닐 수 있도록 한 발정도의 공간이 있어야 한다. 침대의 배열은 머리쪽에서 발쪽으로 그리고 발쪽과 발쪽끼리 맞출 수 있도록 배열을 해야 한다. 그리고 잠자는 사람의 매너를 생각해서 머리와 머리쪽의 배열도 최소한 7피트 정도 떨어지도록 배열해야 한다.

2. 침상형 침대 : 이층침상형 침대는 적어도 쉽게 열릴 수 있는 창문을 하나 이상 배치해야 한다. 창문의 꼭대기는 상층부의 침상형침대의 상층부 난간보다 높아야 한다. 마루와 침상하부의 높이는 12인치정도 떨어져야 하며 위침상과 아래침상과의 난간간격의 최소 36인치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한다.

그리고 상부침상과 천장과의 높이도 36인치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한다.

3. 환풍기 : 모든 침실에는 환풍기를 달아야 한다. 외부로 직접 환풍하는 곳은 5% 이상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조건은 적절한 환풍시설이 있으면 다를 수도 있다.

· 부엌(4630.2600)

부엌은 칸막이벽으로 식당과 분리되어 있어야 한다. 벽, 천장, 마루, 칸막이벽 등은 쉽게 청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야 하며, 부엌은 식품공급장비, 접시나 그릇의 저장, 세척, 음식준비, 저장 등의 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부엌에 들어오도록 허용한 사람보다 미리 다른 사람이 부엌에 들어오도록 허용해서는 안된다. 부엌은 환풍이 잘되어야 하며 작업장 표면에 20피트의 축광으로 밝기를 밝혀야 한다.

· 식품공급과 저장(4630.2700)

1. 식품 : 모든 식품은 질이 좋아야 한다. 상업적으로 판매되는 음식물을 밀봉하지 않아서는 안되며 고기는 공식적으로 허용한 곳으로부터 입수해야 한다. 변질하는 음식, 우유 등은 깨끗한 냉장고에 화씨 45도 이하의 온도를 유지하며 잘 보관하여야 한다. 각각의 냉장고는 적절한 온도로 잘 유지되어야 하며 변질되지 않는 음식은 환풍이 잘되고 깨끗한 장소에 보관되곤충이나 설치류 등의 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저장지역은 마루로부터 30인치 정도에 5피트축광 이하의 불빛을 밝혀야 한다.

2. 우유 : 모든 우유는 저온숙성하여야 한다. 음료를 위한 우유는 2쿼터, 쿼터, 파인트(0.47리터), 0.5파인트(0.235리터) 등의 용기에 담아 콘테이너에 담아두어야 한다. 그러나 보건담당자가 허용한 우유용기가 있으면 사용이 가능하고 컵과 잔은 분배기로부터 직접 이용해야 한다. 큰 컵이나 다른 커다란 용기를 우유를 제공할 때 분배기로부터 담아서 사용해서는 안된다. 분유를 사용할 때는 위생적인 상태로 다루어야 하며 소비를 위해 봉투를 개봉하였으면 다 사용하도록 해야 하고 남겨두어 나중에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3. 독극물의 저장 : 살충제, 살균제, 다른 독극물, 세척제 등은 식품과 같은 방에 저장해서는 안된다.

· 음식물의 제공(4630.2800)

부엌은 항상 청결한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모든 음식의 제공장비와 기구는 부드러우며 쉽게 씻을 수 있고 내구성이 강하며 쉽게 고칠 수 있는 것으로 만들어져야 한다. 이러한 장비로 식품이 닿는 표면은 해롭지 않고 독성이

없으며 상대적으로 흡착성이 낮고 쉽게 씻을 수 있어야 한다. 전국위생표준(National Sanitation Foundation Standards)에 적합한 장비를 지급해야 하며 모든 장비는 그것들을 항상 청결하게 유지하고 보관해야 하며 식품조리과정은 식품이 오염될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조리를 해야 한다.

· 음식물조리원의 건강과 청결성(4630.2900)

모든 사람은 음식물을 조리, 음료, 취사도구 이용시에 항상 깨끗한 복장과 손을 유지해야 한다. 화장실에 다녀온 후 바로 취사를 해서는 안되며 반드시 손을 씻고 음식물을 조리하도록 해야 한다. 찬물과 더운물, 비누, 적절한 위생수건, 다른 건조기 등과 같이 손을 청결하게 하는 시설이 분리되어 있으면 음식물 조리지역에 이러한 모든 시설을 갖추어 주어야 한다. 음식물을 준비하는 방에서 담배를 피거나 가래침을 뱉는 행위는 해서는 안되며 전염성이 있는 질병의 상태에서 대화하거나 음식물을 조리해서도 안된다.

· 식기세척기(4630.3000)

다음의 방법에 따라 식기세척기를 다루어야 한다.

A. 조작방법 : 세부분의 칸막이가 싱크대나 이와 유사한 부분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즉 적절한 길이, 폭, 깊이 등을 나누어 큰 취사용구도 처리가 가능하고 이러한 시설에 냉수와 온수가 공급되어야 한다. 접시와 취사용구를 씻을 수 있는 충분한 바구니가 있어야 하고 취사용구나 접시는 뜨거운 물과 비누, 세제 등을 이용하여 깨끗이 닦아져야 하고 두 번째에 깨끗한 물로 헹구어야 하며 세 번째는 적어도 170도 이상(화씨-섭씨 76.7도)의 온도에 2분 이상 건조를 시켜야 한다. 이 세부분이 적절히 나뉘어 사용하는 동안 구체적인 온도를 유지해야 한다. 접시와 취사용구는 공기건조를 해야 한다.

B. 기계 : 세척기의 세척과 헹굼기능에 공급하는 물의 압력에 대해 호스는 1인치당 15파운드 이상의 유압에 견딜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1인치당 25파운드 이상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그리고 더운물은 180도 보다 낮아서도 안된다. 새로운 식기세척기는 1956년 9월에 제정된 국가위생기구의 3번째 표준에 적합한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C. 장비나 취사도구를 깨끗하게 해야 하는데 다른 이유로 인하여 항목 A와 B가 편리하지 않으면 다른 적절한 세척과 위생과정이 제공되어야 한다.

· 물공급(4630.3100)

모든 캠프는 보건당국자가 허용한 안전한 물을 공급해야 하며 부엌조리용, 음용수, 목욕의 목적을 위해 점유자가 필요한 만큼의 물을 공급해 주어야 한다.

· 목욕과 손씻는 장치(4630.3200)

손을 씻을 수 있는 시설은 화장실 가까이 손쉽게 위치해 있어야 하며 냉온수, 비누, 위생타올, 기타 손을 말리 수 있는 시설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 음식조리지역에서 부엌이나 취사원의 사용을 위해 제공되어야 한다. 샤워시설은 25명당 1개의 샤워꼭지를 만들어야 한다.

· 배관(4630.3300)

모든 새로운 배관은 미네소타 배관법 현장 4715에 규정된 내용의 기준에 따라 보건당국자의 감독을 거쳐 설치되어야 한다. 현재의 배관에 문제가 발생하여 공공의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고 이를 교체하고자 할 경우 즉시 이행해야 한다.

· 화장실 시설(4630.3400)

화장실시설은 캠퍼 12인당 1자리정도가 배정되도록 설치해야 한다. 남자를 위한 경우 소변기는 양변기의 1/3수준으로 만들어야 한다. 화장실시설은 침실지역에 편리하게 위치해야 하며 적절하게 환풍이 되고 인공의 조명을 달아야 한다. 화장실시설은 물리적으로 물의 공급이 용이한 장소에 설치해야 하며 이 시설에서 제공하는 하수처리체계는 물이 공급되는 곳의 50피트 이내에 있어서는 안된다. 화장실 중이는 항상 비치되어야 하며 항상 깨끗하고 청결한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 분뇨와 배설물처리(4630.3500)

화장실에 물을 흘려보내 하수처리체계에 접근할 경우 보건담당자가 인정하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물리 흐르지 않는 변기일 경우 개인용 용기가 제공되어야 하며 이 또한 보건당국자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이러한 개인용구는 침실이나 부엌에서 떨어져 있어야 하며 개인용 형태의 화장실은 부엌과 식당에서 적어도 100피트 밖에 위치해 있어야 한다.

· 젖은 쓰레기(4630.3700)

부엌, 세탁소, 샤워실 기타의 장소에서 나온 물에 젖은 쓰레기는 젖은 화장실 쓰레기와 합쳐서 지하수, 토양 등을 오염하지 않도록 조심하여 토양에 분리하여 매립하도록 하여야 한다.

· 계획의뢰(4630.3700)

하수, 물공급, 배관체계의 확장이나 하수처리와 관련된 재료의 교체, 물공구, 배관의 새로이 설치 등을 구체적으로 계획할 때 미네소타 주법 4715.3130에서 4715.3160 그리고 4720.0010에 따라 승인과 검토를 위해 보건당국자의 허가를 받도록 해야 한다.

· 쓰레기(4630.3800)

모든 쓰레기는 밀봉하고 새지 않도록 하고 충분히 위생처리한 상태로 수집해야 한다. 쓰레기의 처리는 보건당국자의 허가하에 적정한 방화장소에서 태우도록 해야 한다. 쓰레기를 수집하는 컨테이너는 항상 깨끗한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 수영장(4630.3900)

자연스러운 수영장은 호수나 강변에 위치하여 사람, 동물, 산업오염 등으로부터 해를 입지 않아야 하며 수영을 위해 설계된 지역은 적절히 표시를 해야 하며 잡초나 날카로운 돌, 폭파인 웅덩이, 암석부스러기 등이 없도록 해야 한다. 수영장은 보건당국자의 감독하에 잘 관리되도록 해야 하며 캠퍼나 진행요원, 방문자들이 수시로 방수시설을 잘 감독하도록 해야 한다.

· 캠퍼를 책임지는 사람의 임명(4630.4000)

각 캠퍼와 진행요원은 캠프당당자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그리고 위급한 상황시 부모이외에 다른 사람에 연락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 이상 기입하여 두어야 한다.

· 실행자의 임명(4630.4100)

캠프운영자는 비상시에 전화를 할 수 있도록 허가받은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임명해 두어야 한다.

· 진료소의 설치(4630.4200)

캠프운영자는 캠퍼나 운영요원이 다칠 경우에 대비하여 진료소를 제공해야 한다. 응급장비의 제공이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장비는 항상 공인된 사람과 함께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전염성 질병이 예상될 경우 즉시 격리시키고 의사에게 보이도록 해야 하며 수송수단도 비상시에 신속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신체검사(4630.4300)

캠프를 하고자 할 경우 캠퍼가 또는 진행요원이 캠프운영자에게 건강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증명서는 신체검사의 기준으로 적어도 90일 이상이 경과되어서는 안되며 병력, 면역기록, 현재의 전염성 수준, 질병상태, 캠프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의 신체적 활동상태 등을 기록해야 한다.

· 보건기록(4630.4400)

모든 캠퍼와 진행요원을 위한 보건기록은 캠프운영자에게 유지해야 한다. 보건기록에 부가하여 이것은 개인의 질병, 캠프에 참여한 시기에 발생한 응급처치, 상처 등의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어야 한다.

- 위험한 무기(4630.4500)

총기나 다른 위험한 무기는 수거하거나 따로 감독자의 휘하에 두어야 한다.

- 애완동물(4630.4600)

동물은 식당, 침실로부터 적어도 500피트 이상 떨어진 곳에 두어야 한다.

이러한 시설이 제공되지 못한 경우 애완동물을 캠프에 동행해서는 안된다.

- 캠프운영자의 임무(4630.4700)

캠프운영자는 주법 4630.2300에서 4630.4700의 기준에 따라 어린이캠프를 잘 다루어야 한다.

한편 캠프시설은 아니지만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법적으로 규정한 행정기준을 마련하여 이러한 조건에 맞는 시설에 시설위탁을 해 주는 사례가 있어 관련 규정을 참고로 제시하였다.

○ 사회복지의 행정개요(현장 9550)⁸⁾

CHAPTER 9550,

General Administration of Social Services, Dep't of Human Services

- 지역사회복지의 행정 정의(9550.0010)

1. 범위 : 주법에서 규정한 사회복지의 범위는 9550.0010에서 9550.0093까지 포함된다.

2. 인가된 매각인 : 인가된 매각인은 적절한 주법의 규칙, 행정기관의 규칙, 지역기관의 기준에 따라 적절한 자격증을 갖추고 지역사회복지시설을 위탁운영하도록 제공받는 사람을 말한다.

2a. 허가된 대표자 : 허가받은 대표자는 미네소타 주법 section 523.01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보호자, 부모를 의미하며 지역사회복지를 포함한 일에 내담자나 지원자에게 적절한 법에 따라 상담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의미한다. 이러한 기록은 임용을 위해 자격과 능력이 이름을 포함하여 명확히 문서

8) State of MN, Official Publication of the State of MN, Charter 9550, Department of Human Services, MN Rules 1999.

* 일련번호는 원본의 내용과 다른데 개정되거나 삭제된 규정은 제시하지 않았다.

화되어 있어야 한다.

3. 커미셔너 : 커미셔너란 커미셔너로 지명된 사람이나 미네소타의 인간복지과에서 커미셔너로 지정한 사람을 말한다.

4. 지역사회복지 : 지역사회복지란 미네소타 주법 section 256E.08, subdivision 1에서 언급한 집단이나 미네소타 주법 section 256E.03, subdivision 2에서 규정한 집단이나 하부집단으로 카운티의 책임을 충족시키고 카운티의 지역사회복지사업계획을 포함한 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복지사업은 카운티위원회의 지역사회복지사업계획을 수립하면 카운티위원회가 하부집단에게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5. 지역사회복지계획 : 지역사회복지계획은 미네소타 주법 section 256E.09, subdivision 3에 따라 카운티위원회에서 필요로 하는 2년마다 수립하는 사회복지계획을 말한다.

6. 카운티위원회 : 카운티위원회는 각 카운티에서 커미셔너로 구성된 카운티위원회를 말한다.

7. 카운티의 재정적 책임 : 카운티의 재정적 책임은 미네소타 주법 section 256G.02, subdivision 4에 따라 개인의 내담자 사회복지의 지출을 위해 카운티가 재정적 책임을 지는 비용을 말한다.

8. 카운티의 서비스 : 카운티의 서비스는 카운티의 재정적 책임, 내담자의 인가받은 대표자, 내담자의 개인적 청구에 대한 지역사회의 복지를 포함한 모든 카운티에서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9. 부서 : 사회복지에 대한 담당 부서는 미네소타 Dep't of Human Services가 담당한다.

10. 척도 : 척도란 결과에 도달하도록 결정하는데 이용되는 수단을 말한다.

11. 개인적 서비스계획 : 개인적 서비스계획이란 지역기관이 내담자에게 사회복지의 제공을 위해 지역기관과 내담자나 내담자에게 대표성을 위임받은 대표자에게 동의한 계획을 말한다.

· 지역사회복지와 카운티의 책임(9550.0020)

1. 카운티의 책임 : 카운티위원회는 미네소타 주법 section 256E.06과 256E.07의 기준에 따라 지역사회복지에 대한 행정, 계획, 모니터링, 평가의 책임을 갖고 동시에 지역사회복지를 위해 유용하도록 재정의 분배까지의 책임을 갖는다.

2. 사회복지재담자 : 카운티위원회는 미네소타 주법 section 256E.08, subdivision 1과 section 256E.03, subdivision 2에 따라 규정된 집단, 개인에게 지

역사회복지사업을 제공해야 한다.

3. 복지제공의 방법 : 카운티위원회는 카운티위원회의 비용이 들지 않는 자원봉사사업의 배열에서부터 시설의 매각과 임대, 적법한 지역기관을 통해 직접적인 사회복지사업을 제공해야 한다.

4. 적절한 정책과 기준 : 카운티위원회는 지역사회복지를 위한 적절한 정책과 기준을 제시해야 하며 매 2년마다 카운티의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제시해야 한다.

· 지역사회복지계획(9550.0030)

1. 카운티위원회의 책임

: 카운티위원회는 증명을 위해 커미셔너에게 다음 2년의 계획을 위한 최종적인 지역사회복지사업계획서를 제시해야 한다.

만일 커미셔너가 그 제안서를 수용하지 않게 되면 사업계획서를 수정해야 하며 그 카운티는 개정된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만일 커미셔너가 사업계획서를 승인하며 카운티는 계획서를 수정하지 않아도 되며 그 카운티는 커미셔너에게 최종계획서로서의 그 계획을 수용할 것이라고 통보해야 한다. 카운티의 개정된 계획이나 내용이 최종계획서로 수용되면 카운티위원회에 카운티예산의 최종 승인 후에 30일 이내에 커미셔너에게 제시되어야 한다.

2. 시민참여의 기회통보

: 카운티위원회는 카운티시민을 위해 서비스이용자의 대표자, 제안된 지역사회봉사계획의 개발에 참여를 위한 기회 등을 발표하고 제시해야 한다. 시민참여를 위한 기회의 통보는 제시된 지역사회봉사계획의 내용이 지역사회주민이 요구하는 내용과 어느 정도 유용하게 적용되는지를 알려주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시민참여의 기회는 적어도 제안된 사업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시작되기 60일 이전에 시작되어야 한다.

3. 계획의 유용성

: 커미셔너에게 제안된 내용을 따른 후에 카운티위원회는 제안된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유용성을 사람들에게 알려야 하고 지역사회주민들이 요구한 내용을 사업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

4. 표준증명서

: 카운티위원회에서 제시된 사업계획은 커미셔너가 증명하는 표준화된 항목 A에서 I까지의 내용에 따라야 하는데 이것은 미네소타 주법 section 256E.09에서 요구하는 목적과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A. 제안된 지역사회복지사업계획은 다음과 같이 개발계획에서 주민참여를 얻기 위한 카운티의 노력을 문서화하여야 한다.

(1) 개발계획에서 주민참여를 위한 기획의 통보를 보여주는 것은 적어도 공공에게 유용한 사업을 시작하기 60일 전에 발표하여야 한다.

(2) 카운티위원회는 주민참여의 성취를 위해 구체적인 방법, 시간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3) 미네소타 주법 section 256E.03, subdivision 2에 따라 각 집단에게 구체적으로 제시되는 사업과 결정우선순위에 대한 효과, 내용, 원천 등을 사람들에게 요약해 주어야 한다.

B. 계획은 미네소타 주법 section 256E.03, subdivision 2에서 명시한 집단과 소수집단에게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내용이 있어야 한다.

C. 계획은 적법한 정책과 표준 그리고 내담자 비용정책과 계획을 포함해야 한다.

D. 계획은 항목 B에서 제시한 집단이나 하부집단의 요구에 부응하는 방법을 포함해야 한다.

E. 항목 B에서 명시한 집단이나 하부집단을 위해 계획은 (1) 적어도 하나의 내담자 중심과 나타나는 지표가 있어야 하며, (2) 어떻게 서비스체계를 조정할 것인가를 기술해야 한다.

F. 지역사회복지사업을 위한 현재의 전체 주가 포함되는 보고양식기준이 있어야 하고 이 계획은 항목 B에서 제시한 집단이나 소수집단, 각 집단을 위한 비용 등을 위해 제시된 카운티위원회에서 모든 봉사체계를 기술해야 한다.

G. 계획은 카운티위원회가 정신적, 육체적 장애를 가진 사람을 위한 유용한 접근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H. 계획은 내재된 요구의 평가와 제시된 계획의 지원을 유용하게 할 자원의 적합성의 분석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I. 계획은 예상되는 연방, 주, 지방의 모든 수입의 양, 원천의 평가를 포함해야 한다.

5. 최종계획의 유용성 : 카운티위원회는 최종 지역사회복지계획, 그리고 기금수준 등의 사본을 만들어 그 계획을 커미셔너에게 증명한 후에 60일 이내에 지역사회주민들에게 고지해야 한다.

· 복지사업계약의 승인과 전개(9550.0040)

1. 권한 : 지방기관은 기관이나 개인이 매각자로부터 승인받은 복지사업의 계약을 승인받아 지역사회복지사업을 전개해야 한다.

2. 계약조건과 전개 : 지역사회복지사업의 전개를 위한 계약은 다음과 같다.

A. 계약이나 전개의 시작날과 끝나는 날

B. 지역사회복지사업계획에서 정의한 봉사과 서비스의 기술

C. 사업계약의 승인을 위한 각 서비스의 비용이나 전개된 사업의 비용의 총합

D. 전개된 사업의 양, 빈도, 지속성의 상태가 내담자 개인의 서비스계획에서 어느 정도 조화를 이룰 것인가에 대한 내용

E. 제공자가 내담자나 지역기관에 알려야 하는 내용을 개인내담자에게 서비스를 시작하거나 종결하기 전에 서면으로 알리는 정도

F. 승인된 매각자가 가지고 있는 회계기록이나 프로그램의 제시항목

G. 프로그램과 재정기록을 위한 보유계획

H. 미네소타 정부자료보관법에 따라 자료수행에 따른 개인의 책임의 명시

I. 책임소재의 명시

J. 사업계획의 전개와 계획종결의 명시

2) 일본

일본의 공공시설 민간위탁에 대한 사례는 여러 부문에서 나타나고 있지만 청소년수련시설은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민간부분의 전이를 쉽게 찾아보기 어렵다.

다만 청소년시설가운데 자연의 집을 독립법인화 하려는 추세로 나아가고 있는 실정이며 대부분의 공공시설을 그대로 도·도·부·현에서 운영·유지하거나 아니면 이를 독립적인 법인시설로 유지하려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가운데 국립청소년의집을 독립법인화하고자 관련법률을 제정하였는데 세부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독립행정법인 국립 청소년의 집 법(法) (平成) 11년 법률 제 169호)

제 1 장 총칙

(목적)

제 1 조 이 법률은 독립행정법인 국립 청년의 집의 명칭, 목적, 업무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명칭)

제 2 조 이 법률 및 독립행정법인 통칙법(平成) 11년 법률 제103호. 이하 「통칙법」이라 한다))이 정한 내용에 의해 설립된 통칙법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독립행정법인의 명칭은 독립행정법인 국립청년의 집으로 한다.

(청년의 집 목적)

제 3 조 독립행정법인 국립 청년의 집(이하 「청년의 집」이라 한다)은, 청년(청소년중 학교교육법(소화(昭和) 22년 법률 제 26호) 제23조에서 규정하는 학령아동 및 동법 제39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학령학생이외의 자를 말한다. 이하 동일)의 단체(숙박)훈련을 실시함과 아울러, 그 설치된 시설을 청년의 단체(숙박)훈련을 위한 이용으로 제공함으로 인해 건전한 청년의 육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무소)

제 4 조 청년의 집은 주된 사무소를 시즈오카(静岡)현에 둔다.

(자본금)

제 5 조 1 청년의 집의 자본금은 부칙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정부로부터 출자된 된 금액으로 한다.

2 정부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예산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내에서 청년의 집에 추가로 출자를 할 수 있다.

3 청년의 집은 전항 또는 부칙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부의 출자가 있을 때, 그 출자액에 따라 자본금을 증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 2 장 임원 및 직원

(임원)

제 6 조 1. 청년의 집에 임원으로 그 장인 이사장 및 감사 2명을 둔다.

2. 청년의 집에 임원으로 이사를 2명 이내로 둘 수 있다.

(이사의 직무 및 권한 등)

제 7 조 1. 이사는 이사장이 정하는 내용에 따라 이사장을 보좌하여 청년의 집의 업무를 관장한다.

2. 통칙법 제19조 제2항의 개별법에서 정하는 임원은 이사로 한다. 단, 이사가 없는 경우에는 감사로 한다.

3. 단, 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통칙법 제 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의 직무를 대리 또는 그 직무를 실시하는 감사는(이사의 업무를 관장하는 기간동안) 감사의 직무를 수행해서는 안된다.

(임원의 임기)

제 8 조 이사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임원 및 직원의 비밀유지의 의무)

제 9 조 청년의 집의 임원 및 직원은 업무상 알려서는 안 되는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된다. 직무를 그만둔 이후에도 마찬가지이다.

(임원 및 직원의 지위)

제 10 조 청년의 집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명치(明治) 40년 법률 제45호) 그 외의 벌칙의 적용에 관해서는, 법령에 의해 공무에 종사하는 직원으로 간주한다.

제 3 장 업무 등

(업무의 범위)

제 11 조 1. 청년의 집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一 청년의 단체(숙박)훈련을 위한 시설을 설치.

二 전호의 시설에서 청년의 단체(숙박)훈련을 실시.

三 제1호의 시설을 청년의 단체(숙박)훈련을 위한 이용에 제공함과 아울러, 해당 청년의 단체(숙박)훈련에 관하여 지도 및 조언을 실시.

四 청년의 단체(숙박)훈련에 관하여 청년교육지도자의 연수를 실시.

五 전각호의 업무에 부대(附帶)적인 업무를 실시.

2. 청년의 집은 전항의 업무이외에 동항의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동항 제1호의 시설을 일반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적립금의 처분)

제 12 조 1. 청년의 집은 통칙법 제 29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중기목표의 기간(이하 이 항에 있어서 「중기(中期)목표기간이라 한다」)의 마지막 사업연도에 관련된 통칙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

비를 실시한 후, 동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이 있을 경우, 그 액에 상당하는 금액중 문부과학대신의 승인을 얻은 금액을 해당 중기목표기간의 다음 중기목표기간에 관계된 통칙법 제30조 제1항의 인가를 받은 중기계획(동항 후반부의 규정에 의한 변경에 대한 인가를 얻었을 경우에는 그 변경후의 것)에서 정하는 바에 의해, 차기 중기목표기간에 있어서 전조에서 규정하는 업무의 재원으로 충당할 수 있다.

2. 문부과학대신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하려고 할 경우에는 사전에 문부과학성의 독립행정법인 평가위원회의 의견을 들음과 아울러 재무대신에게 협의를 구하여야 한다.

3. 청년의 집은 제1항에서 규정하는 적립금의 액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동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금액을 공제하고, 잔액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그 잔액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4. 전3항에서 규정하는 것 이외에, 납부금의 절차 그 외에 적립금의 처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부령으로 정한다.

제 4 장 잡칙

(주무 대신 등)

제 13 조 청년의 집에 관계된 통칙법에 있어서의 주무대신(大臣), 주무관청 및 주무관청령(令)은 각각 문부과학대신, 문부과학성 및 문부과학성령(令)으로 한다.

제 5 장 벌칙

제 14 조 제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 15 조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를 한 청년의 집의 임원은 20만엔이하의 과료에 처한다.

- 一 제11조에서 규정하는 업무이외의 업무를 행한 경우
- 二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문부과학대신의 승인을 얻어야만 하는 경우에, 그 승인을 얻지 않았을 때

부 칙

(시행기일)

제 1 조 이 법률은 평성(平成)13년 1월 6일부터 시행한다.

(직원의 승계)

제 2 조 청년의 집의 성립의 시, 현재 문부과학성의 기관으로, 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의 직원인 자는, 별도의 사령을 발령하지 않는 한, 청년의 집의 성립일에 있어서 청년의 집의 직원이 되는 것으로 한다.

제 3 조 전조의 규정에 의해 청년의 집의 직원이 된 자에 대한 국가공무원법(소화(昭和) 22년 법률 제 120호) 제82조 제2항의 규정의 적용에 관해서는 청년의 집의 직원을 동향에서 규정하는 특별직 국가공무원 등과, 전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상실한 것을 임명권자의 요청에 의하여 동향에서 규정하는 특별직 국가공무원 등이 되기 때문에 퇴직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 4 조 1.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해 문부과학성의 직원이 청년의 집의 직원이 되는 경우에는 그 자에 대하여서는 국가공무원 퇴직수당법(소화(昭和) 28년 법률 제182호)에 근거하여 퇴직수당은 지급하지 않는다.

2. 청년의 집은 전항의 규정 적용을 받은 청년의 집 직원의 퇴직시, 퇴직수당을 지급하려고 할 경우에, 그자의 국가공무원 퇴직수당법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직원(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원으로 간주되는 자를 포함한다)으로서의 승계된 재직기간을 청년의 집 직원으로서의 재직기간으로 여기어 처리하여야 한다.

3. 청년의 집의 성립일 전날에 문부과학성의 직원으로 재직한 자는,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속해서 청년의, 집의 직원이 되며, 아울러 계속하여 청년의 집의 직원으로서 재직한 후 계속하여 국가공무원 퇴직수당법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직원이 된 경우에 그 자의 동법에 근거하여 지급하는 퇴직수당의 산정의 기초가 되는 근속기간의 합산에 관하여서는 그 자의 청년의 집 직원으로서의 재직기간을 동향에서 규정하는 직원으로서의 계속된 재직기간으로 간주한다. 단, 그 자가 청년의 집을 퇴직함으로 인한 퇴직수당(이에 상당하는 급부를 포함한다)의 지급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한(限)하지 않는다.

4. 청년의 집은 청년의 집 성립일 전날에 전부과학성의 직원으로서 재직하고,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속하여 청년의 집의 직원이 된 자중에서 청년의 집 성립일로부터 고용보험법(소화(昭和) 49년 법률 제116호)에 의한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을 취득할 때까지의 기간 청년의 집을 퇴직한 것으로, 그 퇴직한 날까지 문부과학성의 직원으로서 재직한 것으로 한다면 국가공무원 퇴직수당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수당의 지급을 받을 수 있

는 것에 대하여, 동조의 규정의 예에 의하여 산정한 퇴직수당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퇴직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제 5 조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해 청년의 집의 직원이 된 자로서, 청년의 집의 성립일 전날에 문부과학대신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로부터 아동수당법(소화(昭和) 64년 법률 제73호) 제7조 제1항(동법 부칙 제6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동일)의 규정에 의한 인정을 받은 자가 청년의 집 성립일에 있어서 아동수당 또는 동법 부칙 제6조 제1항의 급부(이하 이 조에서 「특별급부라 한다」)의, 지급요건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자에 대한 아동수당 또는 특별급부의 지급에 관해서 청년의 집 성립일에 있어서 동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촌장(市·町·村長)(특별구(區)의 구장을 포함)의 인정이 있는 것을 간주한다. 이 경우에는 그 인정이 있었다고 여겨지는 아동수당 또는 특별급부의 지급은 동법 제8조 제2항(동법 부칙 제6조 제2항에 있어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과 관계없이, 청년의 집의 성립일 전날에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시작한다.

(청년의 집의 직원이 되는 자의 직원단체에 관한 경과조치)

제 6 조 1. 청년의 집의 성립이, 그 시점에 존재하는 국가공무원법 제 108조의 제2조 1항에서 규정하는 직원단체로, 그 구성원의 과반수가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해 청년의 집으로 승계된 자로 청년의 집 성립시, 노동조합법(소화(昭和) 24년 법률 제174호)의 적용을 받는 노동조합이 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해당 직원단체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인 노동조합이 되는 것으로 한다.

2. 전항의, 규정에 의해 법인인 노동조합이 된 것은 청년의, 집의 성립일로부터 기산(起算)하여 60일을 경과하는 날까지로, 노동조합법 제2조 및 제5조 제2항에 적합한 취지의 노동위원회의 증명을 받아, 아울러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등기하지 않으면 그 날의 경과에 따라 해산하는 것으로 한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노동조합이 된 것에 관해서는 청년의 집의 성립일로부터 기산(起算)하여 60일을 경과하는 날까지는 노동조합법 제2조 단서(但書)(제1호에 관련된 부분에 한정한다)의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권리의무의 승계 등)

제 7 조 1. 청년의 집 성립시, 제11조 1항에서 규정하는 업무에 관하여 현재 국가가 가지는 권리 및 의무중 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청년의 집의 성립시 청년의 집이 계승한다.

2. 전항의 규정에 의해 청년의 집이 국가가 가지는 권리 및 의무를 계승한 때에는 그 계승시, 계승된 권리에 관련된 토지, 건물 그 외의 재산으로 정부령으로 정한 가격의 합계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정부령에서 청년의 집에 대하여 출자된 것을 한다.

3. 전항의 규정에 의해 정부에서 출자한 것의 전항의 재산가는 청년의 집 성립일 현재에 있어서 시가를 기준으로 평가위원이 평가한 값으로 한다.

4. 전항의 평가위원외에 평가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정부령으로 정한다.

제 8 조 1. 전조에서 규정하는 내용외에 정부는 청년의 집 성립시에 현재 건설중인 건물 등(건물 및 그 건물에 부속하는 공작물을 말한다. 차기항(項)에 있어서 동일)에서 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청년의 집에 추가해서 출자하는 것으로 한다.

2. 전항의 규정에 의해 정부가 출자를 목적으로 한 건물 등의 가치는 출자일 현재에 시가를 기준으로 평가위원이 평가한 값으로 한다.

3. 전항의 평가위원외에 평가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정부령으로 정한다.

(국유재산의 무상사용)

제 9 조 내각총리대신은 청년의 집의 성립시, 현재 부칙 제2조의 정부령에서 정하는 기관에서 사용되고 있는 국유재산으로 정부령에서 정하는 것을 정부령으로 정한 바에 의해, 청년의 집용(用)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청년의 집에 무상으로 사용토록 할 수 있다.

(정부령에의 위임)

제 10 조 부칙 제2조에서 전조까지 정하는 내용외에 청년의 집의 설립에 있어서 필요한 경과조치 그 이외에 이 법률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경과조치를 정부령으로 정한다.

한편 청소년시설 뿐만 아니라 국립대학 등도 독립법인화를 이루어 시설운영의 합리화와 예산절감을 꾀하려는 노력을 시도하고 있다. 이 가운데 대학의 독립법인화를 추진하려는 시도에 대한 사례를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국립대학을 문부과학성으로부터 독립된 법인화를 위한 제도를 검토하고 있는 문부과학성의 조사검토회의(좌장 교토대학 학장 나가오 마코토)는 2001년 9월 27일, 기본적인 틀을 제시한 중간보고서를 문부과학성에 제출했다. 여기에는 예산, 조직, 인사 등 문부과학성의 규제를 대폭적으로

완화하여 국립대학의 재량권을 확대, 민간경영을 요구하고 있다. 단, 외부(대학 외)에서의 이사들이 어느 정도까지 참여하는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안에 대해서는 향후 검토할 사항으로 미루어졌다.

문부과학성은 동(同)회의가 연도내에 정리할 최종보고서를 바탕으로 2003년도까지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빠르면 2004년도에는 국립대학법이 탄생하도록 하였는데 중간보고의 주된 제도개편의 내용을 보면 <표 II-5>과 같다.

<표 II-5> 국립대학 주요 제도개편 내용

	현재	법인화후
위치	문부과학성의 하부기관	독립된 법인
조직개편	법령, 예산 등으로 규제	대학판단으로 학과, 사무조직 개편
업무외부위탁	기본적으로 인정치 않음	부속시설의 독립이나 업무위탁 가능
학생정원	설치인가, 예산에서 규제	대학이 중장기계획을 통해 규정
중장기 계획 및 목표	없음	대학이 원안 작성
외부 인사 참가	운영자문회의에 등용	임원 등 운영에 참가
수익사업	인정치 않음	교육연구와 관련 사업은 인정
학장 선고	대학내 평가회의에서 선고	외부인사를 평가과정에 참여
간부 및 사무직원	문부과학성이 임명	학장이 임명
교직원 급여	법률로 일률 규정	대학이 정하고 업적비 및 연봉제도
근무형태	법률로 겸업 및 겸직 규제	겸업 및 겸직의 규제 완화
재무	단년도예산, 비목 지정	사용용도 지정치 않고
대학의 수입	일괄 국고 환수	기부 등 자기수입으로
학생교부금	전국 일률적 적용	일정틀내에서 대학 판단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중간보고서는 일반적인 독립행정법인과는 달리 국립대학은 예산면에서 현재 문부과학성에서 인건비, 여비 등 비용 항목이 지정되어 연도 예산으로 배분되고 있는데 법인화후에는 사용에 대한 용도를 지정하지 않는 운영비교부금으로 일괄 지급되어, 그 틀내에서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사업에 충당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조직면에서는 학장(한국의 총장급)이 교육연구와 법인경영 양면에서 최고 책임자가 된다. 1대학 1법인화하여 학장을 보좌하는 임원들이 외부 인사의 형태로 다수 총당되어, 경영에 직접 참가시킨다. 직원의 수나 배치도 대학의 판단에 맡기게 된다. 특허신청이나 관리, 연구성과의 민간이용, 수익사업도 인정한다.

인사면에서는 실질적인 공모제나 임기제를 확대하여 인재의 유동화를 촉진한다. 겸업이나 겸직의 규제를 완화한다. 이런 사항들에 의해 대학의 자유도가 증가, 운영이나 연구, 사업에 특색이 생기게 되는 반면, 경영의 책임도 지게 된다.

향후의 성과를 보면 법인화후에도 국비운영이 기본이나, 중간보고서는 제3자에 의한 평가에 따라 교부금의 배분을 차등화한다고 하는 내용도 제시하고 있다. 문부과학성내에서 평가기관을 두도록 하였으나, 조직형태나 차등 배분을 등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이다.

의사결정에 있어 외부의 유력 인사가 어느 정도 관여하게 될지가 최 종보고서의 초점이다. 법인화로 길어 조금씩 구체화됨에 따라 문부과학성이 병행하여 추진하는 재편 통합을 가속화할 가능성도 있다.

3) 시사점

지난 수십년 동안 정부의 조직유형이 변화되면서 공무원 전 직원이 감소되고 새로운 계약의 형태와 기법이 도입되기 시작하였다. 정부가 받아들이는 서비스의 현 환경이 1990년대와 비교해 보면 매우 다르게 나타

나고 있는데 문제점으로는 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서비스계약의 운영 문제가 큰 변화를 보이지 않음으로써 많은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는 현실이다. 특히 비용절감의 측면에서 그들의 요구를 보충하거나 보장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수 없는 기관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서비스계약의 중대한 점의 증가는 신속하고 적법하게 나타나야 한다는 점이다. 특히 행정기관은 서비스계약으로 장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의회에서 재계약시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정부는 동시의 인간자원의 이슈를 선택하는 동안 서비스의 인지를 개선해야 하는 두 가지 차원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행에 기초한 계약의 접근과 전략적 인간자본계획을 강조하고 있으며 적극적인 단계로 수용되어진다. 그러나 리더십의 유지와 위임과 같은 것은 이러한 노력을 서비스를 위한 계약이 이루어질 때 정부가 현재 직면하고 있는 위험을 줄이는 노력을 보장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유지해야 한다.

특히 시설의 위탁과 관련하여 선진국의 경우 우리나라와 같이 청소년 수련시설의 민간이전과 같은 제도적 방안은 모색하고 있지 않다. 그 이유는 대부분 청소년시설은 교육환경의 부수적 시설로 이용되면서 학교교육의 보완적 기능을 수행하고 이를 외연에서 지원하는 교육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처럼 법적인 지원으로 따로 청소년 수련시설을 둘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다만 정부기구의 위탁을 결정하거나 평가하는 과정에서 명확한 기준이라기보다는 그때그때 시설평가의 기준을 정하면서 자율권을 최대한 부여하고 위탁을 결정하는 기관의 책임성과 위탁받는 기관의 융통성을 보장하면서 고정적 지표보다는 가변적이면서 비용의 효율성을 보장하는 방안을 강조하고 있다.

미국의 사례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캠핑이나 레크리에이션시설이 미국의 시민이나 주민들의 생활 깊숙히 뿌리를 내리고 있고 이들 시설을

연중 매우 효과적으로 잘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시설은 민간에 이전시키어 독립적으로 운영하기보다는 주 정부나 시 또는 카운티의 수준에서 매우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시설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자 주 정부의 헌장에 독립적인 영역(야외레크리에이션 또는 어린이캠핑 현장제정)을 1960년대에 제정하여 효과적으로 관리해 오고 있다.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숙영지의 관리와 함께 환경보존의 효율성을 적시하면서 각 시설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시설에 대한 기준을 상세히 열거하고 있다. 화장실의 규모라든지, 침실의 규모, 위치, 침대의 공간, 창문, 물공급, 쓰레기처리 등 모든 영역의 내용을 상세히 명문화하여 이를 관리하는 사람을 정부에서 임명하고 이들이 각종 시설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근본적인 문제점을 꼽는다면 선진국의 청소년캠핑장이나 야외공원, 호수 등을 관리하는 체계를 통해 느낀 점으로 시설의 관리를 맡은 사람의 역할과 함께 이들 시설을 이용하는 일반시민들의 성숙한 의식을 들 수 있다. 해서는 안된다는 의식이 뿌리깊이 내재되어 있으며,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는 사고가 강하여 강제적인 감독과 규제보다는 자율성에 기초하여 스스로 이들 시설을 관리하고 아끼려는 자세에서 청소년 시설의 외부 위탁이나 계약을 한다는 것은 이들 사람들의 사고로는 잘 이해되지 않는 것이었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의 경우 청소년수련시설을 위탁하고자 할 경우 최대한 이 시설의 수혜자가 지역사회 주민이나 운영자보다는 청소년 개개인에게 부여될 수 있는 의식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Ⅲ. 청소년수련시설의 민간위탁 실태 및 문제점

1. 민간위탁 관련 법·제도 실태

1) 민간위탁 법률근거

- 정부조직법 제6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③행정기관은 법령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그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6864호: 1998.8.11) 제1조에 ‘이 령은.....(중략) 정부조직법 제6조 3항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행정간여의 범위를 축소하여 각종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소관사무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청소년기본법 제27조(수련시설 운영의 위탁)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26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수련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청소년단체 등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련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은 청소년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위탁한 수련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청소년기본법시행령 제35조(수련시설 운영의 위탁)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련시설을 청소년단

체 등에 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수련시설의 관리방법, 위탁기간 등을 정하여 이를 위탁하여야 한다.

2) 민간위탁의 규정 내용

○ 정부위탁기관의 선정기준

- 정부의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12조 1항에 따르면 행정기관이 민간위탁사무의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인력과 기구, 재정적인 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지역간 균형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절한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도록 한다.

<표Ⅲ-1> 정부위탁기관의 선정기준

선정기준	구체적 내용
인력과 기구	-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인력 구비 - 기구는 조직 편제를 의미하며 업무의 분배가 중요
재정적 부담능력	- 수탁업무 수행비용을 충당할 재정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 수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의 구비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 수탁업무 수행을 위한 책임능력과 공신력을 보인 선행사례 또는 이를 장래에 보장할 능력
기술보유정도	- 수탁기관의 기술보유 정도 및 발전 가능성

동령 12조 2항에서는 행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른 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모집하여야 한다. 다만, 민간위탁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민간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 청소년기본법에서의 선정기준

청소년기본법시행령 제35조(수련시설 운영의 위탁) ②수련시설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청소년단체 등은 다음과 같다.

1. 법 제3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단체
2. 국민체육진흥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서울올림픽국민체육진흥공단
3. 기타 수련시설을 운영할 능력이 있다고 시·도시사가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③ 지방자치단체가 수련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 2이상의 법인 또는 단체로부터 위탁운영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수련시설 운영능력을 비교하여 선정하되, 수련시설 운영능력에 현저한 차이가 없는 한 제2항 각 호의 순서에 의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 행정자치부의 수탁기관 선정 원칙 예시

① 민간위탁을 위하여 새로운 기관이나 단체를 신설하지 않도록 하며, 가급적 업무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기존의 산하단체를 최대한 활용한다.

② 책임성이 문제되는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사무는 공공단체에 한하여 위탁하도록 한다.

③ 청소·수거등 단순반복적이고 재량이 여지가 없는 집행사무는 사법인에게도 위탁할 수 있다.

④ 관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등 국가가 인정하는 자격을 소지한 사람을 최대한 활용한다.

○ 업무위탁방법에 관한 사항

- 정부의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2조의 2 1항에 따르면 행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이 선정된 때에는 수탁기관과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동령 제12조의 2 2항에서는 행정기관이 민간수탁기관과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계약내용에 민간위탁의 목적, 위탁수수료, 또는 비용, 위탁기간, 민간수탁기관의 의무, 계약위반시의 책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운영 및 지휘·감독에 관한 사항

- 정부의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르면 위탁기관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민간수탁기관을 지휘·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민간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위탁기관은 "민간수탁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민간수탁기관의 수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당해사무를 취소 또는 정지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민간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도록 되어 있다.
- 동령 제14조에서는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처리기간·처리절차·처리기준·구비서류·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하여 위탁기관의 승인을 얻은 다음 비치"하여야 한다
- 동령 제15조에서는 "민간위탁사무의 처리 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감사결과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민간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고, 관계임원 및 직원에 대하여 인사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3)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관련 사항

○ 근거규정

지방자치법 제95조(사무의 위임등)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무소, 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③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추진절차

행정자치부는 1998년 12월 자치단체사무의 민간위탁 추진지침을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 추진절차를 <표Ⅲ-2>와 같이 제시하고 있다

<표Ⅲ-2>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 추진절차

단 계	내 용
1. 민간위탁 추진구상	위탁추진 사전기초조사, 위탁대상 사무 조사, 자치단체의 자료수집
2. 민간위탁 추진계획수립	위탁대상사무 또는 시설 확정, 위수탁 개시일 결정, 수탁자 선정 방법 결정, 위탁비용산정, 위탁조례 제·개정
3. 지방의회 심의결정	추진 기본계획 보고, 민간위탁심의위원회 개최, 조례 제·개정
4. 수탁자 선정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의, 수탁가능기관 조사, 자격심사기준 마련, 공개입찰에 의한 수탁자 결정
5. 위·수탁 계약체결	계약서 작성, 협약안의 작성시 유의사항, 연간비용 지급단가 결정
6. 사무,시설 운영인계인수	인수자 시험 운행, 행정지도·감독부서 지정, 인수인계서 작성

* 자료 : 이창균·서정섭(2000),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의 개선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p.79.

○ 문제점

- 지방자치단체에서의 민간위탁은 일반적인 준칙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개별 자치단체에서 개별 기능의 수행과 관련된 조례 또는 규칙에서 규정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다 보니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각 조례별로 수탁기관 선정, 업무위탁의 방법 등을 제각각 규정하고 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은 필요시 적정한 내용을 담은 조례를 제정하여 추진하고 있다.
- 그러나 개별자치단체에서의 조례제정은 위탁시설의 목적과 필요성 그리고 그 효과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이루어져야하나 실제로 있어서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다른 위탁사업에 준하여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 따라서 수탁기관의 특성을 분석통한 통합된 조례를 제정하고 이를 근거로 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청소년수련시설의 민간위탁 실태

1) 일반현황

우리나라에 설치되어 있는 청소년수련시설의 현황은 <표Ⅲ-3>와 같이 이·국립·공립은 68.5%, 민간이 32.3%로서 공립은 생활권 중심으로 민간은 자연권과 유스호스텔 중심으로 청소년수련시설이 설치되고 있다.

<표Ⅲ-3> 청소년수련시설 설립주체별 현황

구분		생활권		자연권		유스호스텔	전체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야영장		
국립(%)		-	-	1(0.6)	-	-	1(0.2)
공립(%)	시·도 및 시·군·구	64(81.0)	120(93.0)	47(26.1)	23(19.7)	9(16.4)	263(47.0)
	시·도 교육청	10(12.7)	-	28(15.5)	77(65.8)	-	115(20.5)
민간(%)		5(6.3)	9(7.0)	104(57.8)	17(14.5)	46(83.6)	181(32.3)
계		79	129	180	117	55	560

공공 청소년수련시설의 위탁현황은 <표Ⅲ-4>에서와 같이 위탁이 58%이며, 직영이 42%로 나타났다. 청소년야영장(직영89%, 위탁11%)을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 직영보다는 위탁이 많은 편으로 나타났다

<표Ⅲ-4> 공공 청소년수련시설의 위탁현황

(단위: 천원)

구분	생활권		자연권		유스호스텔	전체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야영장		
직영(%)	18(28)	34(41)	20(45)	17(89)	2(22)	91(42)
위탁(%)	46(72)	49(59)	24(55)	2(11)	7(78)	128(58)
계	64	83	44	19	9	219

2) 직영시설과 위탁시설간 경영비교 분석

민간위탁 청소년수련시설의 경영비교 분석은 1)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전체 경영현황 2) 재정비교 3) 수련활동 서비스 이용수준 비교 4) 인력규모 비교 분석 5) 기타 시설 규모 및 안전성 비교 순으로 이루어졌다.

경영비교분석에서 사용한 주요 통계적 방법은 기술통계와 평균분석을 사용하였다. 분석대상은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중 청소년수련관 전체 110개소를 대상으로 하였으나 기 제출된 자료가 미흡한 16개소를 제외한 94개소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1) 전체 경영현황

공공청소년수련시설의 전체현황에 대한 기술통계 결과는 <표Ⅲ-5>과 같다.

- ① 공공청소년수련시설의 수용정원은 평균 681.1명이다.
- ② 공공청소년수련시설의 재정은 총수입 3억8천3백6십6만4십3원, 총지출 5억7백5십4만9천1백9십8원으로서 자립율 75.5%이다. 총지출 중 수련시설관리비(공과금, 시설관리비등)가 4억9백5십5만8천2백8십6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 ③ 공공청소년수련시설의 인력현황은 평균 18.1명으로서 이 가운데 상근직원비율은 78.2%, 상근직원 중 청소년지도사 비율은 42.3로서 인력 확보 비율은 78.2%로서 미흡한 편이다. 이직율은 17.9%에 달한다.
- ④ 이용자 현황은 평균이용인원은 138,112명으로 이 가운데 청소년 이용율은 62.2%이다.
- ⑤ 청소년수련시설에서의 사고건수는 2.1건으로 낮은 편이며, 수련시설의 제도화(규정이나 지침이 갖추어 진정도)는 4가지 분야(인사, 조직, 보수, 복무)에 대하여 3.7건이 갖추어져 있다.

<표Ⅲ-5> 청소년수련시설의 기술통계

구 분	평균	표준편차	응답자수
수용정원	681.6	959.8	94
정부보조	88466649.4	161877928.9	55
자립율	75.5	106.207	91
총수입금	383660043.9	568064438.4	93
총지출금	507549198.2	575504648.4	91
인건비	196124694.8	276872363.6	89
사업비	183891543.2	254118921.0	80
관리비	409558286.3	2401996518.8	93
상근 직원	12.9	11.1	86
지도자 상근 비율	42.3	28.1	63
상근직원 비율	78.2	24.4	86
이직율	17.9	10.5	26
전체직원	18.1	19.4	88
총이용자 수	138112.7	279217.6	90
청소년 이용율	62.4	27.1	90
년간사고 량	2.1	1.5	92
제도화 정도	3.7	2.5	90
인력확보 비율	78.2	24.4	86

(2) 재정관련 비교분석

공공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 유형에 따른 재정 비교는 <표Ⅲ-6>와 같다.

- ① 자립율은 직영시설 25.7%, 위탁시설 89.2%로 비용절감 측면에서 볼 때 민간위탁시설의 효율성이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 ② 총수입금은 직영시설 7천7백여만원, 위탁시설 5억6천8백여만원으로

로 직영시설은 위탁시설에 13.6%수준이다. 총지출금은 직영시설이 위탁시설의 47.3% 수준이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수련시설의 기본 지출 규모에 대한 최소한 지출 수준으로 볼 수 있으며, 수입 대비 지출비교에서 직영시설이 민간위탁시설 보다 비용절감 수준이 낮음을 알 수 있다.

③ 정부보조금은 직영시설이 위탁시설의 21% 수준으로 자치단체는 민간위탁시설에 더 많은 비용을 지급하고 있다.

④ 총수입금 대비 인건비 사업비 관리비를 비교하면 직영시설은 각각 164%, 183%, 76%이며, 위탁시설은 각각 41.5%, 36%, 107%이다. 위탁시설에 대한 직영시설의 지출항목을 비교하면 인건비 54%, 사업비 69%, 관리비는 9.6%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 결과는 민간위탁시설이 직영시설에 비하여 사업활동정도가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표III-6> 운영유형별 재정 비교 현황

운영유형		자립율	총수입금	정 부 조	총지출금	인건비	사업비	관리비
직영시설	평균	25.76	77585712	24819062	301176114	127804969	142744222	59200362
	최소값	0	300000	3000000	1510000	56000	300000	0
	최대값	328.00	474513000	193719000	2326721000	728773000	1596670000	271602000
위탁시설	평균	89.2	568360071	114578480	636532375	236384532	204853385	611459462
	최소값	0	197000	4444444	6597000	59650	11000	0
	최대값	348.73	2726320000	951186000	2332914000	2085000000	865660000	23220290000
합계	평균	582.28	383660043	88466649	507549198	196124694	183891543	409558286
	최소값	26.56	197000	3000000	1510000	56000	11000	0
	최대값	20428.00	2726320000	951186000	2332914000	2085000000	1596670000	23220290000

⑤ 기타 공공청소년수련시설의 평균 비용 계산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숙박비(1박) 2,912원, 식대(1식) 2,600원
- 1박2일 10,701원, 2박3일 23,360원,
- 야영장(식사제공)1일 10,000원 야영장(자가취사) 1일 2,000원
(자가취사 장비 대여비 별도)
- 프로그램지도비 1박2일 8,000원, 2박3일 15,000원

(3) 수련시설 서비스 이용도 비교 분석

공공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유형에 따른 서비스 이용 현황은 <표Ⅲ-7>과 같다.

- ① 청소년수련시설의 이용정도를 보면 직영시설은 민간위탁시설의 19.5% 수준이며, 청소년 전용공간으로서의 정체성을 알 수 있는 청소년 이용율은 직영시설은 57.7%로서 법정기준인 60%에도 미치지 못한 반면에 민간위탁시설은 65.2%이다.
- ② 연간 제공일은 직영 229일 위탁 281일이며, 개원기간은 직영이 6.77년, 위탁이 5.71년이다.

이상의 결과를 볼 때 청소년수련시설의 서비스 양적 제공측면에서 직영시설은 민간위탁시설에 비하여 개원기간이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Ⅲ-7> 운영유형별 서비스 이용 비교

운영유형		총 이용자 수	청소년 이용율	연간제공 일	개원기간
직영시설	평균	38790.94	57.7315	229.00	6.77
	최소값	502	.00	19	2
	최대값	231403	136.95	365	19
위탁시설	평균	198415.27	65.2665	281.20	5.71
	최소값	241	.00	12	2
	최대값	1969188	100.00	365	21
합계	평균	138112.74	62.4199	261.38	6.11
	최소값	241	.00	12	2
	최대값	1969188	136.95	365	21

(4) 인력관련 비교 분석

청소년수련시설의 서비스의 질적인 면을 알 수 있는 인력관리 측면에서의 직영시설 및 위탁시설의 비교 결과는 <표Ⅲ-8>와 같다.

- ① 공공청소년수련시설의 인력관리 분야 비교에서 전체직원은 직영 8명, 위탁 23.89명이다. 이중 상근 직원은 직영시설 7.57명 위탁시설 15.77명이다.
- ② 청소년수련시설의 서비스 질과 직접적인 관계가 볼 수 있는 전문성 측면에서 청소년지도사의 비율을 보면 직영 24.49% 위탁 46.13%로서 위탁시설의 전문성이 높다고 볼 수 있으며, 이직율에 있어서는 직영이 6.6%이고 위탁은 18.4%로서 직영시설의 서비스 안정성이 높다

<표Ⅲ-8> 운영유형별 인력관리 분야 비교

운영유형		상근직원	전체직원	상근직원비율	이직율	인력확보비율	지도자상근비율
직영시설	평균	7.57	8.00	82.2880	6.6667	82.2880	24.4935
	최소값	1	1	25.00	6.67	25.00	5.71
	최대값	35	35	100.00	6.67	100.00	71.43
위탁시설	평균	15.77	23.89	76.0414	18.3628	76.0414	46.1357
	최소값	1	1	25.53	4.35	25.53	3.85
	최대값	55	101	100.00	40.74	100.00	160.00
합계	평균	12.91	18.11	78.2205	17.9129	78.2205	42.3569
	최소값	1	1	25.00	4.35	25.00	3.85
	최대값	55	101	100.00	40.74	100.00	160.00

③ 기타 위의 표에서는 제시되지 않았으나 직영 시설의 경우 파견공무원은 2.6명이다.

(5) 기타 규모 및 안전성 관련 비교 분석

기타 공공수련시설의 규모 및 안전과 관련하여 <표Ⅲ-9>에서는 수용정원에 있어서 직영은 391명이고 위탁시설은 853명, 건축면적은 직영시설의 경우 2858㎡, 위탁시설은 4698㎡로서 직영시설이 위탁시설의 50%수준에 머문다.

안전과 관련하여 연간 사고건수는 직영의 경우 1.18건, 위탁의 경우 2.1건으로 수용정원가 비교에 볼 때 비슷함으로 알 수 있다.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제도화 정도는 인사, 조직, 보수, 복무 4가지

분야에서 직영시설은 2.91건, 민간위탁시설은 4.16건으로 제도화 수준이 위탁시설이 수준이 높다. 그러나 이 결과는 직영의 경우 공무원 규정에 따른다고 볼 때 실제로 있어서는 직영시설은 모든 분야의 제도화가 이루어져 있다고 볼 수 있다.

<표Ⅲ-9> 운영유형별 수련시설의 개요

운영유형		건축면적	수용정원	전체직원	년간사고량	제도화 정도
직영시설	평균	2858.2037	391.23	8.00	1.18	2.91
	최소값	375.79	50	1	0	0
	최대값	10689.00	1400	35	4	6
위탁시설	평균	4698.8641	853.93	23.89	2.64	4.16
	최소값	327.00	100	1	0	0
	최대값	33674.00	8000	101	5	6
합계	평균	4006.1425	681.65	18.11	2.10	3.71
	최소값	327.00	50	1	0	0
	최대값	33674.00	8000	101	5	6

3) 경영분석 결과

청소년수련시설의 민간위탁시설에 대해 직영시설과의 경영 비교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재정분야

- 민간위탁 청소년수련시설은 직영시설과의 재정비교에서 자립율이 높고, 총수입금이 많다. 또한 지출구성에서 사업비 비중이 높아

민간위탁 결과가 긍정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 그러나 정부보조금의 지급에 있어서는 직영과의 직접적인 비교가 불가능함에 따라 별도의 산정분석이 요구된다.

○ 청소년수련시설 서비스 이용도

- 청소년수련시설 이용수준은 민간위탁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또한 수련활동 서비스 제공일에 있어서도 위탁시설이 높게 제시되었다. 이 결과는 민간위탁이 지역사회에 높은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

○ 인력관리분석

- 청소년수련시설의 전체 운영인력은 직영시설보다 위탁시설이 높다. 그러나 전문인력구성에 있어서는 위탁시설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이직율에 있어서는 민간위탁시설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 인력관리는 서비스의 질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볼 때 민간 위탁을 추진할 때에는 수련시설 적정운영인력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현재 수련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평균인력이 법정기준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법정인력비율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
- 그러나 위탁시설의 이직율은 서비스 질을 낮추고 서비스의 연속성을 저하하는 것으로 볼 때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된다.

○ 규모 및 안정성

- 규모는 위탁시설이 직영시설보다 크다. 이는 수탁기관의 수익성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이므로 자치단체에서는 가능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는 조치가 요구된다.
- 안전성은 전체적으로 매우 높으나 구체적으로는 직영이 위탁보다

약간 더 높게 나타났다.

- 이 결과에서 볼 때 민간위탁은 적정수익율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규모가 필요하거나 적은 규모의 경우 적정수준의 재정을 보장해야함을 의미하며, 안전성에 있어서는 자치단체에서 별도로 확보하는 방안이 요구된다.

3. 면접조사 결과분석

‘청소년시설 민간위탁 실태 및 위탁기준마련을 위한 조사’를 위하여 간단한 면접조사지를 작성하여 공무원과 단체, 전문가의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공무원은 전국의 239개 지방자치단체 중 청소년시설 담당자 공무원 29명을 선정하여 심층면접 하였으며, 단체는 청소년단체협의회 회원단체로 전국의 60개 단체 중에서 국장급이상 의사결정자 14명과 청소년관련 전문가 10명을 선정하여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면접조사의 결과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시설 담당공무원 면접조사

① 자치단체 청소년수련시설(수련관) 운영형태

청소년수련관의 운영형태로 자치단체 직영보다는 대다수 민간위탁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탁시기는 2000년-2005년이 대다수였으며, 과거의 수탁 담당경험에 있어서 과반수 이상이 경험이 없다고 응답했으며, 위탁 계약기간은 3년과 2년이 많았다. 위탁사업자 선정방식은 완전 공개경쟁이 대부분이었고, 자격심사 등을 통한 제한경쟁, 수의계약 순으로 나타났다. 위탁 선정 기준의 공개는 매우 구체적 완전공개와 어느

정도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② 민간위탁 과정에 대한 행정기관의 조치사항

법령(조례)이나 정책 지침을 대부분 가지고 있었으며, 위탁의 타당성 검토를 통하여 위탁비용(원가)의 합리적 산정을 하고있었다. 위탁추진 위원회(심의)구성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수탁자의 모집공고는 지역단위 모집이 많았고, 제안서 심사 외부 구성원 참여율은 50%이상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③ 민간위탁시 경쟁성

수탁참여 단체의 경제능력 제한내용은 약간 구체적이며, 수탁참여 단체의 지역범위 제한은 약간 있었고, 수탁 참여 단체의 전문적 능력 제한을 구체적으로 두고 있었으며, 현 시설 수탁시 참여단체의 수는 3-4개가 대부분이었다.

④ 민간위탁 계약내용에 대한 인식

계약내용에 책임성과 한계를 분명히 하는 것에 긍정적인 편이었고, 수탁단체 서비스내용의 구체화, 계약된 이행내용의 적절성, 위탁계약의 제도적 보완 필요, 연속적인 수탁제한의 필요에 대하여도 대부분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⑤ 시설운영에서의 행정책임

운영에 따른 책임소재는 대부분 분명한 편이며, 관리책임은 지방정부인 편이고, 위탁은 직영보다 책임성이 낮은 경향이 있다고 인식하고있다. 위탁시설에 대한 완전한 통제는 어려운 편이며, 계약위반에 대한 조치는 그다지 엄격하다고 할 수 없으며, 위탁시설과는 동업자 관계는 아닌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위탁과정에서는 결탁관계가 생길 수 없으며, 서비스 중단 시 빠른 대체가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업무계획에 대한 지도감독, 운영수입 및 지출에 대한 지도감독, 업무추진에 대한 공식보고, 업무계획 대비 집행에 대한 지도감독, 이용자 불만 접수나 만족도 조사에 대한 행정책임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문가 등에 의한 심층적 분석지도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⑥ 시설의 수련활동 서비스 비용

이용료가 예상보다 올랐다, 수탁자가 경영수지에 집착한다, 필요한 직원을 보다 적게 고용한다, 보조금의 증액이 이루어졌는가에 대해서는 아닌 것으로 응답하였고, 시설투자는 위탁자가 시행해야 한다, 일반인 대상 프로그램이 많아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⑦ 수련활동 서비스 특성

수련활동 서비스는 많은 경험과 기술이 요구되고,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며, 사명감이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다라고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서비스 생산 제공절차의 복잡성이나 수요변동, 그리고 공무원이 직접 수행이 어렵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해서는 평균정도였다.

⑧ 행정과 시설간 협력내용

담당자간 의사소통이 원활하다, 중요한 협력사항은 공식문서로 한다, 불만은 상호간에 협의 처리한다, 양자관계는 공식관계로만 한다는 그런편이라고 응답하였고, 계약내용 이외의 요구사항은 없다, 협의할 내용은 항상 타당하다에는 보통이었다.

⑨ 수탁기관의 전문성

전문인력이 많다, 프로그램이 다양하다, 경영자가 이 분야의 전문가이

다는 그런편이라고 응답하였고, 프로그램 운영 전문설비가 많다에는 보통으로 응답하였다.

⑩ 직영시와 비교하여 위탁결과에 대한 인식

효율성과 관련하여, 위탁에 따른 행정업무의 축소, 행정직원의 축소, 예산지출의 절감에 있어서는 직영보다 줄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예산결정은 총 사업비 결정 지급보다 수입배분에 따른 보조방식이 반반을 차지하고 있다.

위탁 후 서비스 질과 관련하여, 전문자격자가 증가나 직원 보수교육 그리고 자원봉사자의 증가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위탁후 직원의 이직을 축소, 사업비 비율의 증가, 이용자가 증가, 프로그램 내용의 충실과 서비스가 형평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계층에 제공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그렇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⑪ 위탁성과에 대한 평가로서 중요한 항목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항목은, 수련활동 서비스 성과를 구체적으로 측정하는 문제, 공무원의 평가관련 전문적 기술능력의 절대부족 문제, 수탁자의 비협조로 평가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확보하는 문제, 평가에 필요한 시간, 인력, 재원의 절대부족 문제, 위탁된 이후에는 상급부서에서 평가를 중요치 않게 생각하는 문제, 수탁기관간의 관계성으로 인해 실제적인 평가가 어려운 문제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⑫ 민간위탁시설 관리 지원을 위한 정책

청소년수련시설과 관련한 민간위탁 선정기준 및 절차에 대한 통일된 제도적 지침의 필요성, 민간위탁 및 재위탁에서 수련시설 운영 성과에 대한 전문기관의 평가지원의 필요성, 지원금액의 결정을 위해 과학적인 분석을 통한 적정한 운영비 산정 등의 필요성, 국가단위에서 청소년수련시

설관리공단과 같은 공공수련시설 전문수탁기관의 필요성에 대하여 매우 긍정적으로 응답하였으며, 특히 수련시설의 운영비에 대한 국가-자치단체-수련시설 운영자(서비스이용자)간의 적정한 비용분담의 필요성과 수련시설의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법정 배치기준 전문인력에 대한 보수지원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절대 다수가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⑬ 민간위탁에 따른 수련시설 운영의 변화방향에 대한 인식

전문성, 서비스질에 대하여는 높은 편이라고 하였으며, 공공성, 책임성, 보조금액 절감, 형평성, 운영의 합리성, 사업내용의 다양성, 프로그램 이용비용, 프로그램 이용자 수에 대하여는 보통이라고 응답하였다.

⑭ 정부의 민간위탁 선정기준에 대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항목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항목의 순위는 인력과 기구(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인력 구비, 기구는 조직편재를 의미하며 업무의 분배가 중요), 재정적 부담능력(수탁업무 수행비용을 충당할 재정 부담능력), 기술보유정도(수탁기관의 기술보유 정도 및 발전가능성), 책임능력과 공신력(수탁업무 수행을 위한 책임능력과 공신력을 보인 선행사례 또는 이를 보장할 능력), 시설과 장비(수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의 구비정도)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2) 청소년단체 운영자 면접조사

① 위탁시설의 운영을 위해 제시된 내용

청소년수련시설과 관련한 민간위탁 선정기준 및 절차에 대한 객관적인 제도적 지침의 필요성, 민간위탁 및 재위탁에서 수련시설 운영성과에 대한 전문기관의 객관적 평가지원의 필요성, 정부보조금 등의 결정을 위

해 과학적인 분석을 통한 적정한 운영비 산정 등의 필요성, 수련시설의 운영비에 대한 국가·자치단체·수련시설 운영자(서비스이용자)간의 적정한 비용분담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매우 긍정적이었다.

필요하다면 정부·자치단체 대비 수련시설 운영자의 부담율은 어느정도가 적정인가(예시: 정부·자치단체 50%, 수련시설 운영자 50%)라는 문항에는 20%에서 80%까지 다양하였으나, 50%이하가 대부분이고 30%가 가장 많았다.

민간위탁 수련시설의 재위탁 선정과정에서 현 위탁단체의 수탁금지조항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보통으로 응답하였다. 재위탁의 금지가 필요하다면 몇 번째부터 금지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하여는 1회에서 3회라고 응답하였다. 민간위탁시 수탁단체의 재정부담이 요구될 때 적정액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는가에 대하여, 3천만원에서 9천만원까지로 나타났으며 과반수 이상이 9천만원 정도라고 응답하였다.

③ 민간위탁에 따른 수련시설 운영의 변화에 대한 견해

전문성은 높아지고, 지자체 보조금과 프로그램 이용비용은 낮아 질 것으로 예측하며, 공공성, 책임성, 서비스질, 형평성, 운영의 합리성, 사업내용의 다양성, 프로그램 이용자 수는 지금과 비슷할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④ 청소년수련활동 서비스 특성에 관한 인식

서비스 수요의 변동에 대해서는 보통수준으로 인지하고있는 반면에 많은 경험과 기술이 요구되고, 전문적 지식을 필요하며, 사명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리고 서비스의 생산과 제공 절차가 복잡하며, 공무원이 직접 수행하기는 어렵다라고 인식하고 있다.

⑤ 정부의 수탁단체 선정기준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항목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항목의 순위는 재정적 부담능력(수탁업무 수행비용을 충당할 재정 부담능력), 책임능력과 공신력(수탁업무 수행을 위한 책임능력과 공신력을 보인 선행사례 또는 이를 보장할 능력), 시설과 장비(수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의 구비정도), 인력과 기구(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인력 구비, 기구는 조직편재를 의미하며 업무의 분배가 중요), 기술보유정도(수탁기관의 기술보유 정도 및 발전가능성), 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⑥ 수탁단체 선정과정에 대한 인식

수탁단체 선정과정에 대한 인식은 대부분 부정적이었으며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선정과정에서 외부의 영향력은 거의 없으며, 선정과정과 절차는 객관적이고 공정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현재의 정부의 수탁기준이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며, 참여단체에 대한 제한(경제적, 지역적 등)이나 수탁 정보 제공의 공평성 그리고 기존의 수탁단체에 대한 기득권에 대해서는 대부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⑦ 청소년수련시설의 민간위탁 결과에 대한 평가기준

평가기준에서 경영수지의 합리성 기준은 매우 필요하며, 보조금 축소 기준은 별로 필요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비용절감 기준과 인력축소 기준은 보통이라고 응답하였다.

서비스 질에 대하여는, 전문인력 확보 기준, 사업비 비율, 이용자 수, 프로그램 충실도, 외부 자원 활용도, 서비스제공의 형평성에 관한 기준이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3) 청소년관련 전문가 면접조사

청소년관련 전문가로서 교수, 학계 등 10명을 선정하여 전문가 의견 조사하였다. 민간위탁 관련 실태현황 파악 및 문제점 등의 내용을 조사함으로써, 공공성 확보를 위한 프로그램 내용의 전문성 강조, 위탁과 수탁관계에서 공익성과 수익성 문제의 갈등, 민간위탁 조사 및 평가기준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등과 관련하여 수탁받을 수 있는 기관 및 청소년단체 상황, 위탁 평가기준 보다 평가 주체인 평가선정위원의 중요성 등에 관한 현황 및 문제점이 제기됨을 알수있었다.

전문가 의견조사지의 주요내용은 1) 공공청소년수련시설의 민간위탁 실태와 위탁기준의 연구제목과 과제성격, 2) 가장 중요시 되어야하는 민간위탁의 기준, 3) 위탁하려는 정부 측면과 수탁 받는 기관 측면의 수·위탁관계에서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문제, 새롭게 대두되는 문제, 가장 크게 사회문제화 되었던 문제 등과 관련한 구체적 사례제시, 4) 추천할 전문가와 유의사항 등에 대한 것이다. 이에 대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실태 및 문제점

① 현재 청소년수련시설의 특별한 사업, 전문성 사업을 고려하여, 단체 중에서 청소년 분야에 전문성 갖춘 단체를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재정능력을 기준을 삼고 있는 실정이다. 민간위탁 목적은 비용절감이나 효율성보다 공익성과 서비스가 더 우선이 되어야 한다.

② 공공기관 위탁능력 중 하나의 사항으로 재정능력이 중요하긴 하지만 그것이 최우선시 되지 않을 수 있는 방법 지표개발이 필요하다. 기본비용 측정하여 비용만큼 인건비를 보조하여야 한다. 구청마다 청소년시설이 1개(약 100억 소요)씩 설립되는 실정이나, 청소년시설은 위탁해도 재정지원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③ 법적 시설 성격상 청소년단체가 수탁을 맡는 것이 현실적이다. 그러나 한국에서 청소년단체는 대부분 영세하다. 이런 청소년단체 현황을 파악해서 청소년 시설 위탁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시설 현황조사 시에도 공무원 조사에 치중하기 보다는 오히려 수탁받을 수 있는 청소년단체 상황을 조사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청소년단체는 대부분 영세함으로 재정만 가지고 기준을 정하면 안된다.

④ out 평가는 청소년시설의 out 평가시 그것이 정확히 효과를 계량화하기가 어렵다. 주관적 평가가 되며 out 평가는 어려운 한계가 있다. 투입평가는 처음 위탁선정기준과 실행중인 위탁시설 평가기준은 다르다(위탁과 재위탁 관리과정). 투입평가로 선정하더라도 중간평가 강화필요하다.

⑤ 사업계획서를 중시해서 선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객관적인 수치로 계량화하여 선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전문가들이 신뢰를 갖고 기관 운영계획서와 그동안의 성과를 보고 전문가들이 전문가 시각을 가지고 주관적 평가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기준보다 사람(평가 선정위원)이 더 중요하다. 위탁기준 선정 전문가 즉 사람인선이 더 중요하다

⑥ 위탁 및 재위탁 평가기준에 관련한 문화관광부 위탁기준은 법인으로 단체이어야 한다는 기준이다. 위탁문제는 법령연구도 필요하다. 조례가 시·도, 시·군·구 조례에 명시되어 있다. 시·구의 위탁규정에는 없지만 위탁운영 마인드가 시, 구보다 위탁기관의 보수가 적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휴일 등 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등 애로사항이 많다. 조례에 의한 제약이 많다. 시의회, 지자체에서 자신의 평가기준을 강하게 제시하고 있다

⑦ 미국 민간위탁은 활발하다. 외국은 프로그램 위주 위탁이 많다. 정부가 투입조건 "계약아니라" 성과쪽으로 "계약을" 한다. 미국은 "성과기준을" 중요시하고 한국은 투입기준(우리 지역사회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 등)을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위탁기준 마련 시에 성과보다 투입쪽을 더 고려하고 있다. 그러나 누가 더 큰 회사이고 조건이 좋은가가 기준이어선 안된다.

⑧ 계약기간 종료되어도 재계약 되니까 위탁의 본 취지와는 거리가 멀게 운영을 잘못하고 있다. 자치 중앙정부는 법령상 하게 되어 있으니 경쟁요소 없이 자기 마음대로 하고 서비스의 질은 낮은 상황이다. 실태를 평가해서 미니멈 수준 평가기준, 결과측면과 투입측면의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운영기준 지침은 투입세분화 한 것, 인력, 계획서가 포함되어야 한다.

⑨ 위탁운영이 미흡한 것과 관련하여 위탁 선정 시에 재정능력, 인맥 위주, 지역위주로 본래 취지로 위탁되지 않을 수 있는 여지를 없애야 한다. 위탁기준보다 위탁하는 제도, 심사제도, 입찰, 위탁운영제도를 중요시 제시할 필요가 있다. 실제 선정되는 단체나 업체는 본래 취지로 선정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수탁기준, 운영기준, 관리기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기존 운영실태 평가없이 위탁기준 모색하려면 서울시 각 구청 담당과 조례기준에 지침(사업계획서 등)을 유형화 나열하면서 위탁시 이 기준에 대해 수탁자, 전문가, 담당공무원, 위탁자 중심 설문조사로 실태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⑩ 관리마인드가 폐쇄적이고 프로그램 홍보인식이 없어서 서비스질이 저하된다. 청소년시설은 많은 청소년들이 이용하도록 시설과 프로그램을 홍보하고 활발하게 움직이는 열린공간이다. 형식만 수탁 구성원의 전문성 중요, 계약된 것, 재계약시 평가기준 필요하다. 평가이하 부실단체 탈락할 수 있는 강한 규정이 필요하다. 기준, 과정, 관리, 조치에 대한 업체 시범 운영 및 외국의 앞선 기술이나 운영도입이 필요하다. 미국의 public캠프장과 같은 외국운영진 도입해서 시범운영을 통해 배울필요가 있다.

⑪ 시설위탁이 준비 미비된 상황에서 출발하고 있다. 평가지표, 구체성, 통일성 부족한 실정이다. 수련시설 위탁과정과 운영과정에서 청소년시설에 대한 전문 마인드 없이 운영되고 있다. 기관의 부를 축적하는 수단으로 사용 따라서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고자 평가지표 개발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⑫ 인근복지관과 시설과의 상충문제 감안하여 민간위탁의 효율성을 높이는 청소년시설의 평가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기관 믿는 신뢰에서 출발하여야 한다. 시설관리공단 프로그램만 위탁하고 있으며, 민간위탁 의식 미흡한 실정이다.

⑬ 프로그램 평가기준이 미흡하다. 사업계획서만 가지고 평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프로그램 평가를 강조할 필요가 있다. 투입기준 부족하다고 할 때 제제 없다. 서비스의 질 대변하는 핵심사항 필요하다. 전문가 평가, 전문적 내용, 청소년단체 기준이 필요하다.

⑭ 안전성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다. 씨랜드 사고 이후, 민간수련시설의 안전에 대한 불신은 날로 커지고 있다. 전문성, 경제성, 효율성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안전성이다. 공공청소년수련시설을 민간위탁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필요한 일이겠지만, 안전성 확보라는 대안을 반드시 제시해야 한다. 이를 위해 공무원과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 민간이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하면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부작용을 근절할 수 있는 방안까지 제시되어야 한다.

⑮ 청소년수련시설을 활용하는 주된 고객이 학생이라고 할 때, 현재 150여개 시·도교육청 소관 수련시설인 학생교육원 등에 대한 대안도 제시되어야 한다. 향후 주5일제 근무(수업)에 따른 수련활동의 변화예측이 필요하다. 동아리활동(소규모) 위주로 변화될 수련활동을 예측하면서, 청소년시설의 위탁기준에 대한 심층분석이 첨가될 필요성이 있다. 이는 반드시 규모가 크다고 해서 유리한 조건이 될 수 없으며, 프로그램의 다양성과 아이디어 등이 더욱 부각될 수 있기 때문이다.

⑯ 위탁현장의 분석에서 공공청소년수련시설을 민간위탁 운영시키는 배경과 동기가 분명히 밝혀져서 범주화시킬 필요가 있다. 지자체의 특성과 위탁운영의 실태, 즉 소재지역별, 재정자립도별, 설립규모별, 설립시기별 등으로 분석이 필요하다.

(2) 민간위탁 조사 및 평가기준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① 수탁받을 기관 및 청소년단체에 관한 연구

청소년수련시설의 특별한 사업, 전문성 사업, 단체로서 청소년 분야 전문성 갖춘 단체에 대한 연구가 포함되어야 한다.

② 비용절감

정부의 민간위탁 기준의 핵심은 비용절감에 있으며, 수탁자의 선정에 있어서도 핵심적인 요인이 된다. 그러나 청소년시설의 경우 전문성을 갖춘 민간비영리단체라고 볼 수 있는 청소년단체의 재정여건이 영세함으로 재정분야에 있어서는 경영분석을 통하여 최소한의 재정부담 수준을 설정하고, 운영에 있어서는 기본비용을 분석하여 보조해야 한다.

③ 투입평가와 산출평가의 구체화

투입평가가 현재 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산출평가도 구체화 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계약에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위탁선정기준과 재위탁 평가는 다르다 따라서 재위탁은 경영평가를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해야한다.

④ 서비스질과 비용

서비스질과 비용 양 측면의 동시에 고려되어야 하며, 공공서비스 일지라도 어느 정도의 경쟁요소가 포함되어야 서비스 질이 향상될 것이다.

⑤ 기준이 되는 대표지표

사회 공신적 평가지표로 개발되어야 한다. 다양한 기준, 평가지표 도입 사용가능 하도록 해야하며, 그 중에서 몇가지 항상 체크되어야 하는 대표지표를 찾아낼 필요하다. 위탁기준은 모든사람들의 동의를 얻기 어려

음으로 심플한 것이 최선이다. 왜냐하면 다양한 기준, 평가지표를 도입했을 때 사용가능한가를 실제적으로 고민해야 한다. 따라서 몇가지 항상 체크되어야 하는 대표지표를 찾아낼 필요하다.

⑥ 위탁운영제도

위탁기준보다 위탁하는 제도, 심사제도, 입찰, 위탁운영제도를 중요시 제시할 필요가 있다. 실제 선정되는 단체나 업체는 본래 위탁 취지에 의해 선정되지 않는 경향이 있다.

⑦ 민간위탁 시설의 수탁단체 선정시 고려할 사항

청소년시설의 전문적인 일을 할 수 있는가, 공신력, 최소 운영능력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어디가 더 나은 단체인지 선별할 수 있는 기준과 청소년단체들이 원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조사할 필요가 있다. 영세한 청소년단체라도 단체 규모가 작아도 좋은 경력, 아이디어가 있는 단체는 잘 운영할 수 있다. 청소년단체 90%는 위탁을 받으면 단체직원이 시설직원이 된다.

4) 소 결

(1) 수탁기관의 선정방법 및 기준설정의 제도적 보완

공익성확보를 위한 프로그램 내용의 전문성 강조, 위탁과 수탁관계에서 공익성과 수익성의 조화, 청소년시설의 비용절감보다는 설립취지우선, 전문성 · 경제성 · 효율성 뿐아니라 안전성이 강조되어야 한다.

본 조사결과, 민간위탁 계약내용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위탁계약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있음을 알수있다.

그러나 구체적 평가기준에 있어서는 청소년시설 운영자들은 민간위탁 계약내용으로 위탁계약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고, 단체운영자들은 수탁단체 선정기준으로 재정적 부담과 책임능력과 공신력을 가장 중요시하고 있으나, 공무원들은 인력과 기구와 재정적 부담능력을 중요시하여 견해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기준이 필요하다.

첫째, 공익성확보를 위한 프로그램 내용의 전문성 강조하여야 한다.

둘째, 위탁과 수탁관계에서 공익성과 효율성의 갈등을 조화롭게 접근해야 한다. 위탁하려는 정부입장과 수탁 받는 기관의 입장의 갈등을 조화롭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셋째, 청소년시설은 사업성격상 수익적 측면이 아니라 복지적 성격이다. 따라서 청소년수련시설의 설립목적에 적합하게 기준이 제시되어야 한다.

넷째, 안전성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다. 씨랜드 사고 이후, 민간수련시설의 안전에 대한 불신은 날로 커지고 있다. 전문성, 경제성, 효율성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안전성이다. 공공청소년수련시설을 민간위탁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필요한 일이겠지만, 안전성 확보라는 대안을 반드시 제시해야 한다.

(2) 민간위탁 심의위원회설치와 경쟁입찰체제의 확대

위탁운영체 선정의 주체는 공무원, 전문가, 수혜자인 지역주민이어야 하며, 수탁운영 단체의 기준을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기업 및 개인에게로 확대하여야 한다.

본 조사결과 수탁단체 선정과정에 대한 인식은 대부분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전문적 위탁전담 위원회가 필요하다. 위탁운영체 선정의 주체는 공무원, 전문가, 수혜자인 지역주민이어야 하며, 수탁운영 단체의

기준을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기업 및 개인에게로 확대하여야 한다.

또한 청소년수련시설의 서비스 질은 잠재적 경쟁체제를 유지하고 있어야만 높아진다. 따라서 정부에서 서비스 제공 자체를 누가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경쟁입찰이 이루어져야 한다.

(3) 성과중심의 계약, 합리적인 사업비 산정

공공기관 위탁능력 중 하나의 사항으로 재정능력이 중요하긴 하지만 그것이 최우선시 되지 않을 수 있는 지표개발 방안이 필요하다. 기본비용 측정하여 비용만큼 인건비를 보조하여야 한다.

청소년수련시설의 민간위탁 결과에 대한 평가기준으로 효율성에 대하여는, 경영수지의 합리성 기준으로 인식하고 있다. 또한 민간위탁 계약서에는 구체적인 성과 달성목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이러한 논의는 현실적으로 볼 때 사업계획서를 중시해서 선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평가는 객관적인 수치로 계량화하여 선별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전문가들이 신뢰를 갖고 기관운영계획서와 그동안의 성과를 보고 전문적인 지식을 소유한 사람에 의한 주관적 평가가 중요하다. 이것은 평가기준보다 사람(평가 선정위원)이 더 중요하다.

또한 청소년시설의 산출평가는 정확히 효과를 계량화하기가 어렵다. 즉, 이러한 한계에 따라 주관적 평가 위주로 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청소년수련시설의 서비스 질을 대변할 수 있는 핵심적 사항을 개발해야 한다. 투입평가는 처음 위탁선정기준과 실행중인 위탁시설 평가기준은 다르다(위탁 관리과정). 투입평가로 선정하더라도 중간점검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4) 지도감독 강화

지도감독방법 강화, 재협약방법의 개선, 제도의 개선이 필요함을 알수 있다. 비용절감이나 서비스질의 개선은 긍정적으로 실행되고 있으나, 서비스 이용가격의 상승이나 관리감독의 문제, 경쟁 및 재계약 횟수의 제한 등의 실행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지도감독과 재계약을 위한 적절한 통제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지도감독방법 강화, 재협약방법의 개선, 제도의 개선대해서는 대부분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인터뷰 결과는 관리감독의 문제 등, 경쟁 및 재계약 횟수의 제한 등이 부족한 것으로 제시되었으며, 이는 지도감독과 재계약을 위한 적절한 통제장치를 마련해야함을 의미하고 있다.

따라서 구체적인 실태를 중심으로 단순하고 최소한의 평가기준이 필요하며 결과측면과 투입측면을 동시에 고려해야 할 것이다. 즉, 구체적으로는 위탁시설에 대한 운영기준 지침 등을 통하여 투입을 세분화하고 인력운영과 사업계획서가 세밀하게 포함되어야 한다.

IV. 분석모형과 조사설계

1. 분석모형

본 연구는 공공청소년수련시설의 서비스 질과 효과성에 영향을 미치는 민간위탁과정 요인을 확인하고 이를 중심으로 민간위탁기준을 제시하는데 있다.

이를 위하여 민간위탁을 설명하고 있는 정부실패를 논의의 출발점으로 하고있는 작은 정부론, 시민들에게 다양하고 자율적인 선택의 기회가 많이 제공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공공선택이론, 민간위탁은 서비스 특성이나 상황의 불확실성에 의하여 위·수탁자의 거래행위에서 다양한 기회주의적 행태가 내재되어 있으므로 정부는 거래비용을 최소화하는 행동합을 전제하는 거래비용이론 등은 민간위탁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통합적으로 설명되어야한다.

첫째, 작은 정부론에서는 경쟁성, 전문성, 비용절감효과, 지도감독이 중요한 요인으로 선택되었다.

둘째, 공공선택이론에서는 경쟁도, 비용절감, 성과측정가능성, 다양성, 합리성, 비용절감, 이용자 수가 중요한 요인으로 선택되었다.

셋째, 거래비용이론에서는 성과측정가능성, 전문성, 서비스의 복잡성, 서비스 질, 협력성이 중요한 요인으로 선정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위의 이론들이 설명하고 있는 요인들 고려하여 [그림 IV-1]과 같이 선형회귀 분석모형을 구성하였다. 이러한 모형을 통하여 각각의 변수들이 민간위탁 성과에 어느정도 영향력을 미치고 있으며, 또한 각 변수들의 상대적 영향 강도를 비교하였다.

<선형회귀분석 모형>

$$\text{모형 1 : } Q1 = \alpha + \beta_1 x_1 + \beta_2 x_2 + \beta_3 x_3 + \beta_4 x_4 + \beta_5 x_5$$

종속변수 : Q1 = 서비스질

$$\text{모형 2 = } Q2 = \alpha + \beta_1 x_1 + \beta_2 x_2 + \beta_3 x_3 + \beta_4 x_4 + \beta_5 x_5$$

종속변수 : Q2 = 비용절감(2000년도 보조금 지급수준)

$$\text{모형 3 = } Q3 = \alpha + \beta_1 x_1 + \beta_2 x_2 + \beta_3 x_3 + \beta_4 x_4 + \beta_5 x_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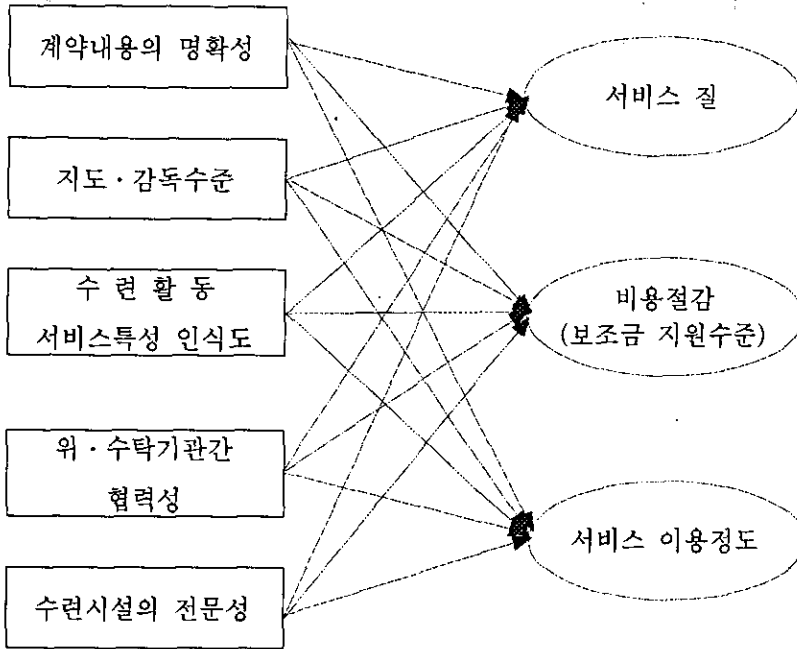
종속변수 : Q3 = 서비스 이용량 변화

독립변수

- x_1 = 계약서 내용의 명확성
- x_2 = 위탁기관의 지도·감독수준
- x_3 = 수련활동 서비스 특성에 대한 인식도
- x_4 = 위·수탁기관간 협력수준
- x_5 = 수탁기관의 전문성

각각의 모형에서는 독립변수 하나를 회귀설정하면 나머지 변수는 통제변수로 활용된다. 나머지 변수들을 통제변수로 활용하는 것은 회귀분석 결과 종속변수에 대한 효과를 통제변수 효과로부터 분리시키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다른 변수를 통제한 상태에서 회귀계수 β 값이 양(+)이나 음(-)의 값에 따라 민간위탁 효과 여부를 추정할 수 있다.

위 분석모형에서 이론적으로 중요한 요인인 경쟁성을 제외한 것은 본 연구의 목적이 위탁수행과정의 결과 즉, 효과성과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한 것이므로 여기서 초기 선정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경쟁성은 그 의미가 중요치 않다고 판단되어 제외하였다. 다만 질문지에 별도의 항목으로 조사대상으로 포함하였다.



[그림 IV-1] 민간위탁 영향요인에 대한 분석모형

2. 조사설계

1) 조사대상

본 연구의 모집단은 청소년기본법에 의해 설립된 청소년수련시설 가운데 민간위탁시설을 128개소를 조사대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규모가 작은 청소년문화의집 47개소와 청소년야영장 2개소를 제외한 민간위탁시설 총 77개소(청소년수련관 46개소, 청소년수련원 24개소, 유스호스텔 7개소)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 작성은 청소년수련시설 조직체계를 고려하여 개별 시설당 1부씩 시설운영책임자가 작성하도록 하였다.

<표 IV-1> 질문지 조사대상 시설 현황

구 분	총 계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유스호스텔
시설 수	77개소	46개소	24개소	7개소

2) 변수의 조작화 및 설문지 구성

앞에서 제시된 연구목적과 분석모형을 측정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구조화된 질문지를 이용하였다.

조사문항의 형식은 기입형과 Likert 5단계 평정척도를 이용하였다.

(1) 독립변수

독립변수는 크게 6개 영역으로 나누어진다. 구체적으로 ①위·수탁 계약사항에 관한 영역 ②수탁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 영역 ③청소

년수련시설의 서비스특성에 관한 영역 ④위·수탁자간의 협력성에 관한 영역 ⑤수탁운영시설의 전문성에 관한 영역 ⑥일반적 사항 영역(수탁기관의 특성과 수탁과정, 위탁후 경영변화, 응답자의 개인특성)에 관한 영역으로 구분된다.

독립변수 영역별 세부지표항목은 <표 IV-2>와 같다.

<표IV-2> 독립변수 영역별 측정지표

항 목	측 정 지 표
위·수탁 계약사항에 관한 영역 (12개 측정지표)	-계약책임의 명확성 -계약이행 내용의 적절성 -계약위반조치의 엄격성 -운영책임 -관리책임 -계약위반조치 -서비스내용의 구체성 -운영책임의 명확성 -위탁계약 제도 -운영통제 -수탁자 책임성
수탁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 영역 (6개 측정지표)	-업무계획 지도감독 횟수 -운영수입 및 지출 감독 횟수 -업무추진 공식보고 횟수 -업무계획대비 집행감독횟수 -이용자 불만 및 만족도 조사 -전문가에 의한 분석 지도
청소년수련시설의 서비스특성에 관한 영역 (6개 측정지표)	-경험과 기술요구도 -전문적 지식의 필요성 -사명감이 중요도 인식 -수요변동 정도 -서비스 생산 및 제공의 복잡성 -공무원의 직접 수행 가능성
위·수탁자간의 협력수준에 관한 영역 (6개 측정지표)	-의사소통수준 -갈등사항 협의 처리 -협의내용의 타당성 -중요사항의 문서화 정도 -양자관계의 공식성 -계약내용외 요구

항 목		측 정 지 표	
시설의 전문성에 관한 영역 (4개 측정지표)		-전문인력 충분성	-프로그램의 다양성
		-경영자의 전문성	-전문설비의 구축 수준
일반적 영역 (3개영역 15개 측정지표)	수탁기관의 특성과 수탁과정	-수탁법인의 종류	-수탁법인의 과거수탁경험
		-위탁기관 선정방식	-선정기준의 공개성
		-위탁 계약기간	-수탁시기
	위탁 후 경영변화	-이용료 상승	-경영수지 중요
		-위탁자에 의한 시설 투자	-운영인력 축소
		-성인대상 프로그램증가	-보조금의 증액
개인특성		-근무기간	-학력수준
			-연령

(2) 종속변수

종속변수는 민간위탁 청소년수련시설의 효과를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 구성되었다. 민간위탁 청소년수련시설의 효과는 크게 3가지 구분된다. 첫째는 수련시설의 서비스의 질에 관한 영역, 둘째는 비용절감 즉, 효과성에 관한 영역, 셋째는 민간위탁 시설 이용자 수의 변화에 관한 영역으로 구성되었다. 종속변수를 측정하기 위한 구체적인 측정지표는 <표 IV-3>과 같다.

<표 IV-3> 종속변수 영역별 측정지표

항 목	측 정 지 표
서비스 질 영역 (7개 측정지표)	-공공성 -책임성 -전문성 -서비스질 인식도 -형평성 -운영의 합리성 -사업내용의 다양성
비용절감 영역 (2개 측정지표)	-2000년도 자치단체보조금 지원액 -향후 보조금의 변화
서비스이용도 변화	-향후 프로그램 이용자 수 변화

(3) 민간위탁시설 관리지원 정책지원 요구 조사

정책지원 요구 조사 항목은 민간위탁 운영에 있어서 필요로 하는 정책적 지원 사항에 관한 조사내용으로서 이것은 향후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할 때 법적·제도적 지원이 필요한 분야이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항목은 <표 IV-4>와 같다.

<표 IV-4> 위탁시설 지원 정책 요구 조사 지표

조 사 지 표
-민간위탁 선정 기준 및 절차에 대한 객관적인 제도적 지침 -수련시설 운영성과에 대한 전문기관의 객관적 평가의 지원 -운영보조금 등의 결정을 위한 적정 운영비 산정 -운영비에 대한 국가-자치단체-운영자(서비스이용자)간의 비용분담

3) 자료의 수집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질문지를 이용하여 수집하였다.

질문지 조사대상은 77개 시설 각 1명씩 총 77명의 운영책임자를 전수조사 하였으며, 질문서의 배포 및 회수는 우편을 기본으로 이용하고, 팩스 등을 통하여 보완하였다.

조사결과 설문 조사대상 77명 중 내용이 부실한 설문지 제외한 총 62부(회수율 81%)를 최종유효 부수로 하여 분석하였다.

4) 질문지 조사 분석

본 연구에서 설문조사의 목적은 민간위탁 청소년수련시설의 위탁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SPSSWIN 7.5 통계패키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변수의 신뢰도 Cronbach's Alpha를 구한뒤 α 값을 낮추는 측정지표는 제거하였다. 그후 기술통계, 분산분석,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1) 기술통계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도수분포표 산출 및 변인의 평균, 최소값, 최대값, 표준편차를 알아보기 위하여 기술통계를 활용하였다.

(2) 분산분석

분산분석은 ①위·수탁 계약내용 ②수탁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횟수 ③청소년수련시설의 서비스특성에 관한 인식수준 ④위·수탁자간의 협력수준 ⑤수탁운영시설의 전문성 ⑥ 서비스 질 변수에 대하여 수탁기관의 조직특성과 위탁추진절차, 응답자의 개인적 특성별 집단간 차이를 검정하기 위하여 ANOVA 분석을 하였다.

(3) 다중회귀분석

다중회귀분석은 종속변수인 서비스 질, 비용절감(2000년도 보조금 지원수준), 서비스 이용변화도에 대하여 독립변수인 ①위·수탁 계약내용 ②수탁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횟수 ③청소년수련시설의 서비스특성에 관한 인식수준 ④위·수탁자간의 협력수준 ⑤수탁운영시설의 전문성이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V. 조사결과의 해석

1. 측정도구의 신뢰성 분석

신뢰성(reliability)이라는 것은 어떤 대상을 반복하여 측정하여도 동일한 결과가 나오고, 측정방법이 정확하여 믿을 만하고, 측정가능성이 있으며, 어떤 비표를 구성하는 항목들 간에 일관성이 있는가를 의미한다.

신뢰도가 높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과학적 결과를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나 신뢰도가 낮으면 좋은 과학적 결과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한 변수에 대해 여러 문항으로 측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경우 내적 일관성을 측정하는 Cronbach's alpha를 많이 사용하였다. α 계수의 값이 .6이상이면 비교적 신뢰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으며, 한 변수에 대한 측정지표가 많을수록 α 값이 증가한다. 따라서 α 값을 구한 뒤 이 값을 낮게 하는 문항을 제거하여 분석하였다.

1) 계약내용의 명확성에 대한 신뢰도

계약내용의 명확성에 대한 측정지표는 5개로서 이들간의 전체신뢰도는 .8457로서 내적 일관성이 매우 높아 신뢰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표준화 된 항목의 α 값 <표 V-1>과 같다.

<표 V-1> 계약 내용의 명확성 측정문항의 신뢰도 검증

항 목	Scale Mean if Item Deleted	Scale Variance if Item Deleted	Corrected Item-Total Correlation	Alpha if Item Deleted	Standard Item Alpha
계약책임	13.5741	8.4001	.7846	.7760	.8457
항목의구체성	13.6296	8.9923	.7138	.7976	
내용의적절성	13.6111	8.8836	.7542	.7868	
운영 책임	13.1667	10.0283	.4766	.8615	
위반 조치	13.5000	10.1038	.5562	.8384	

2) 지도·감독수준에 대한 신뢰도

<표 V-2> 위탁기관의 지도·감독 수준에 대한 신뢰도

항 목	Scale Mean if Item Deleted	Scale Variance if Item Deleted	Corrected Item-Total Correlation	Alpha if Item Deleted	Standard Item Alpha
업무감독	13.1818	6.1515	.5950	.6745	.7481
재정감독	13.4545	6.2896	.5039	.7068	
공식보고	13.0727	6.6613	.5767	.6889	
집행감독	13.0727	5.6983	.6501	.6493	
이용자조사	12.9636	6.6653	.3089	.7893	

수탁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수준은 <표 V-2>에서와 같이 5개 측정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이들간의 신뢰도는 .7481 신뢰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용자 조사항목을 제거한다면 신뢰도가 .7893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으나 전체적인 신뢰도에 있어 큰 차이가 없으므로 결과 분석에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3) 수련시설 서비스특성 인식에 대한 신뢰도

수탁하고 있는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수련활동 서비스특성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에 대한 측정에서 측정항목의 α 값은 .6616으로써 내적일관성이 좋다고 볼 수 있다. 수요변동항목을 제거하면 신뢰도는 약간 상승하나 현재의 신뢰수준으로도 충분하다고 판단되고 변수의 중요성으로 볼 때 원시자료를 그대로 활용하는 편이 나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표 V-3> 수탁시설의 서비스특성 인식에 대한 신뢰도

항 목	Scale Mean if Item Deleted	Scale Variance if Item Deleted	Corrected Item-Total Correlation	Alpha if Item Deleted	Standard Item Alpha
기술요구	15.1833	5.4743	.4391	.6056	.6616
전문지식	15.2000	5.1797	.5886	.5537	
사명감	15.0833	5.2980	.4273	.6061	
서비스의복잡성	16.4333	4.7582	.4329	.6018	
수요변동	16.0333	4.6429	.3094	.6907	

4) 위·수탁기관간 협력수준에 대한 신뢰도

민간위탁 수련시설의 위탁 지방자치단체와 수탁기관간에 이루어지고 있는 협력활동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에 대한 측정에서 α 값은 .5949이다. 이는 α 값이 .6 이상이 되면 충분하나 그 이하의 경우에 있어서는 결과 해석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표 V-4> 위·수탁기관간의 협력수준에 대한 신뢰도

항 목	Scale Mean if Item Deleted	Scale Variance if Item Deleted	Corrected Item-Total Correlation	Alpha if Item Deleted	Standard Item Alpha
의사소통	14.1579	5.6353	.4800	.4585	.5949
중요협력	13.4211	7.6767	.3364	.5547	
불만처리	13.9825	6.1961	.4185	.5004	
양자관계	14.1579	6.9568	.2618	.5905	
협력내용 타당도	14.1053	7.2744	.2824	.5740	

5) 수탁 수련시설의 전문성에 대한 신뢰도

수탁 청소년수련시설의 전문적 능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표 V-5>에 서와 같이 4개 구성하였다. 이들간의 신뢰도는 .8362로서 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

<표 V-5> 수탁 수련시설의 전문성에 대한 신뢰도

항 목	Scale Mean if Item Deleted	Scale Variance if Item Deleted	Corrected Item- Total Correlation	Alpha if Item Deleted	Standard Item Alpha
전문인력	9.9483	10.1903	.7280	.7664	.8362
프로그램의 다양	9.5862	10.1065	.7787	.7460	
경영자	9.9310	9.3636	.6316	.8209	
전문설비	10.1552	11.7825	.5676	.8336	

6) 수탁시설의 서비스 질에 대한 신뢰도

<표 V-6> 수탁시설의 서비스 질에 대한 신뢰도

항 목	Scale Mean if Item Deleted	Scale Variance if Item Deleted	Corrected Item- Total Correlation	Alpha if Item Deleted	Standard Item Alpha
공공성	30.8182	65.2997	.7059	.9130	.9198
책임성	30.0364	60.6653	.8861	.8926	
전문성	30.1455	59.7562	.9028	.8905	
서비스 질	30.1455	63.7933	.8400	.8983	
형평성	30.8545	73.3488	.5780	.9233	
합리성	30.1455	69.8303	.6998	.9129	
다양성	29.9273	70.2168	.6510	.9172	

수탁 청소년수련시설의 서비스 질 수준을 확인하기 위하여 <표 V-6>에서와 같이 7개 항목을 측정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이들 표준 문항간의 신뢰도는 .9198로서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2. 기초통계 분석

1) 조사대상기관 및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 청소년수련시설의 민간위탁관련 특성과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V-7>, <표 V-8>, <표 V-9>와 같다

<표 V-7> 조사대상기관의 특성

법인 유형	비율(%)	수탁시기	비율(%)	수탁경험	비율(%)
공공법인	32.8	1988-1995	13.1	있다	67.2
청소년단체	23.0	1996-1998	26.3	없다	32.8
민간비영리법인	44.3	1999-2002	60.5	합계	100.0

① 수탁법인의 유형을 보면 민간비영리법인이 44.3%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공공법인(공단 등)이 32.8% 이다. 청소년단체는 가장 낮다.

이 결과는 현재 민간위탁이 전문성을 고려하기 보다는 다른 것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청소년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청소년단체가 위탁시 타단체와 큰 차이가 없으면, 우선 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에대해 정부의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청소년수련시설의 수탁시기는 1999-2002년(60.5%)이 많다. 이것은 1998년도 이후 청소년수련시설의 민간위탁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된다.

③ 현재 수탁기관의 과거 수탁경험에 있어서는 과반수 이상이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개별적 차원에서 수탁기관의 역량이 높아진 것도 있으나, 현재 자치단체의 상황으로 볼 때 과거의 수탁자는 큰 문

제가 없을 경우에는 재 위탁 과정을 통해서 선정되는 것이 아니라 최초 위탁 이외의 재위탁은 기 운영 기관에대한 계약연장을 차원에서 심의되고 있다.

<표 V-8> 조사대상기관의 위탁관련 기준

위탁기준의 공개수준	비율(%)	선정방식	비율(%)	계약기간	비율(%)
매우 구체적으로 완전 공개	38.9	완전공개 경쟁	42.6	1년	4.7
어느정도 구체적 공개	35.2	제한경쟁	48.1	2년	30.2
포괄적 기준만 제시	16.7	수위계약	9.3	3년	55.8
전혀 공개하지 않음	9.3			5년 이상	9.3

① 위탁과정에서 선정기준의 공개수준은 '매우 구체적으로 완전공개' 하는 것이 38.9%로 나타나고 있으나 중간수준정도의 공개성도 51.9%를 차지한다. 반면에 전혀 공개하지 않는 경우도 9.3%를 차지하는 것으로 제시되었다.

이것은 정부와 자치단체에서 공개를 의도적으로 제시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와 관련된 제도의 정비 및 전문적인 평가기준항목이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② 위탁과정에서 수탁자 선정방식은 자격심사 등을 통한 제한경쟁 48.1%과 완전 공개경쟁 42.6%이 비슷하게 제시되었다. 반면에 수위계약도 9.3%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수탁기관의 선정에서 청소년기본법에서는 비영리 법인으로 한정하고 있다. 일부 자치단체는 지역제한이나 비용 부담액으로 자격을 제한하기도 한다. 그리고 수위계약의 경우는 일부지역에 적합한 수탁단체가 없거나 그 수가 적어 경쟁위탁이 이루어지지않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가능한 완전경쟁을 지향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만드

시 필요하지 않는 지역제한 규정이나 비용부담수준은 최소한으로 하는 것이 요구된다.

③ 위·수탁자간의 민간위탁계약 기간은 2년- 3년이 86%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차원과 수련활동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도 적어도 2-3년 이상의 계약이 보장되어야만 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여겨진다. 반면에 장기계약의 경우는 기회주의적 행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표 V-9>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학력	비율(%)	구 분	근무기간	연령	2000년도 보조금액
고졸	7.1	N	56	57	24
전문대졸	8.9	최소값	7	27	5
대졸	62.5	최대값	249	59	780
대학원	21.4	평균	66.63	38.25	156.00
합계	100.0	표준편차	58.65	8.10	233.56

① 학력수준은 대졸이상이 83.9%로 청소년수련시설의 인적자원의 능력이 높다고 볼 수 있다.

② 근무기간은 평균 5년6개월(66개월)이며, 최소 7개월에서 최대 20년 7개월로 다양하게 분포되어있다.

③ 연령은 27세에서 59세까지 폭넓게 분포되어 있으며, 평균적으로 38세이다.

④ 2000년도 정부 및 자치단체로부터 받은 보조금은 작게는 5백만원에서 최대 7억8천만원이다. 위탁운영시설의 평균 보조금액은 1억5천6백만원이다.

2) 위·수탁 계약내용의 명확성

위·수탁 계약서에 지시된 내용의 명확성은 12개로 구성되었다.

구체적인 내용은 <표 V-10>과 같다.

<표 V-10> 위·수탁계약 내용에 대한 인식도

구 분	수탁시기	계약기간	계약책임	내용구체성	내용적절성	제도보완
N	38	43	55	55	55	55
최소값	1988	1	1	1	1	1
최대값	2002	9	5	5	5	5
평균	1998.32	2.93	3.29	3.22	3.25	3.67
표준편차	3.01	1.37	.99	.96	.93	1.14
구분	운영책임	관리책임	운영통제	위반조치	동업관계	수탁책임
N	55	55	55	55	54	55
최소값	2	1	1	1	1	2
최대값	5	5	5	5	5	5
평균	3.67	3.36	2.76	3.36	3.24	3.73
표준편차	1.00	1.22	1.10	.87	1.23	1.01

① 현재 청소년수련기관에 대한 수탁시기는 대부분 1998년 이후로 나타났다.

②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위탁계약은 대부분 3년으로 나타났다.

③ 위·수탁 계약서의 내용에 책임성과 한계성이 분명한가에 대해 중간수준을 보였다. 이는 아직까지 계약내용에 구체적인 항목보다는 포괄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었음을 의미한다.

④ 계약내용의 구체화는 중간정도 수준을 보였다. 계약내용이란 산출과 투입에 대한 투명도를 높이고 서비스 질 향상과 직접적인 관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위탁효과 평가의 기준이 되므로 이에대한 보다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⑤ 계약내용의 적절성은 평균 3.22로서 보통수준이다. 즉, 현재 계약 내용은 좀더 보완할 필요가 있다.

⑥ 위탁계약제도 보완 필요성 인식에서는 3.67로서 응답자들은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는 위탁계약에 관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함을 의미한다.

⑦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책임의 한계성이 분명한가에 있어서는 어느정도 긍정적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이 결과는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운영상에 발생하는 책임의 한계가 어느정도 공유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⑧ 관리책임의 소재가 지방정부인가에 대한 응답에서는 보통수준이다. 즉, 관리책임이 반드시 지방정부라고 말할 수는 없다고 볼수 있다. 그러나 청소년수련시설의 위탁이란 서비스운영의 위탁을 의미하는 것이지 관리책임을 자치단체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보다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⑨ 담당공무원에 의한 운영 통제는 그렇지 않은 편으로 나타났다.

⑩ 계약위반 조치사항의 엄격성에 대하여 응답자들은 보통수준을 약간 넘는 정도로 그렇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⑪ 위탁기관과의 동업관계의 인식은 보통으로 나타났다.

⑫ 수탁기관의 책임 구분에서 대부분이 수탁기관의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3) 위탁수련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정도

위탁수련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수준은 6개 항목으로 조사되었다. 전체적으로 지도·감독수준은 정기적인 수준에서 이루지고 있다. 구체적인 결과는 <표 V-11>과 같다.

<표 V-11> 위탁기관의 지도·감독수준

구 분	업무감독	재정감독	공식보고	집행감독	이용자조사	전문가지도
N	55	55	55	55	55	54
최소값	1	1	2	1	1	1
최대값	5	5	5	5	5	5
평균	3.25	2.98	3.36	3.36	3.47	2.76
표준편차	.82	.87	.70	.89	1.00	1.03

① 업무계획에 대한 지도·감독은 정기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연초의 업무계획 보고할 때를 제외하고는 지도·감독이 이루어지지 않음을 의미한다.

② 위탁기관의 수입 및 지출에 대한 지도·감독은 거의 없다. 이는 회계감사를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도로 감독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업무추진에 대한 공식보고는 정기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진다. 즉, 담당공무원이 수시로 업무추진에 대해 보고를 받는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④ 업무계획 대비 집행에 대한 지도·감독에서는 정기적으로 이루어져 있다.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 업무계획 대비 집행은 분기 또는 반기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볼 때 그 때 이외에 별도의 지도·감독은 없는 것을 볼 수 있다.

⑤ 이용자 불만 및 만족도 조사는 자체조사가 가끔씩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이용자 조사가 담당공무원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관 차원에서 가끔씩 실시되고 보고되는 것이다.

⑥ 전문가 등에 의한 심층적 분석 지도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위탁수련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이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관례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4) 수련시설의 서비스특성 인식

위탁운영 기관에서 청소년수련시설의 서비스특성에 대한 인식은 총 6개 항목으로 구성되었으며, 전체적인 경향은 수련시설의 서비스 특성이 전문적이라고 인식하는 것을 나타냈다. 구체적인 결과는 <표V-12>와 같다.

<표V-12> 수련시설의 서비스특성에 대한 인식도

구 분	기술요구	전문지식	사명감	서비스복잡성	수요변동	공무원수행
N	60	60	60	60	60	59
최소값	3	3	3	1	1	1
최대값	5	5	5	5	5	5
평균	4.30	4.28	4.40	3.05	3.45	4.08
표준편차	.67	.64	.74	.91	1.10	1.21

① 청소년 수련활동서비스는 많은 경험과 기술이 요구되는가에 대해서는 매우 그렇다고 인식하고 있다. 즉, 실제적인 현장운영자들은 수련활동프로그램의 운영이 전문가에 의해 이루어져야함을 인식하고 있다.

② 청소년 수련활동서비스는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응답자들은 매우 그렇다고 인식하고 있다.

③ 청소년 수련활동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사명감이 매우 중요한가에서는 대부분의 운영자들이 그렇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④ 청소년 수련활동서비스를 생산하고 제공하는 절차는 복잡한가에서는 보통수준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수련활동서비스가 전문가에 의해 사람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이므로 수탁기관의 인적자원

구성여건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⑤ 청소년 수련활동서비스는 수요변동 폭이 큰가에 대해서 응답자들은 대부분 조금 그런편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것은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이 학교의 학사일정과 관계가 높아 학기중과 방학 중의 이용수준에 있어서 차이가 발생하므로 수요변동 정도가 높다고 볼 수 있다.

⑥ 청소년 수련활동서비스를 담당공무원이 직접 운영하는데 접합한가에 관해서는 직접수행하기에는 어렵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것은 수련활동서비스가 전문가에 의해 제공되어야만 올바르게 운영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비전문가인 공무원이 관리차원이 아닌 직접 운영에는 회의적임을 의미한다.

5) 위·수탁 이후 시설운영 변화

청소년 수련시설이 민간위탁 후 수련시설 운영내용의 변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총 6개 항목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전체적인 경향은 비용은 절감되는 경향이며, 서비스 질은 종전가격대비 높아지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표 V-13> 위탁이후 수련시설의 변화도

구 분	이용료상승	경영수지	인력운영	시설투자	성인증가	보조금증액
N	58	59	60	59	59	59
최소값	1	1	1	1	1	1
최대값	5	5	5	5	5	5
평균	2.22	4.07	3.58	3.51	2.90	2.20
표준편차	1.14	1.00	1.14	1.24	1.11	1.14

① 위탁이후 수련시설의 이용료가 상승하였는가에서는 대부분이 거의

오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용료는 위탁기관과의 협의사항으로 인한 것으로 여겨진다.

② 위탁이후 경영수지의 중요성이 증대되는가에 대해 응답자들은 중요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는 수련시설의 운영이 자치단체 보조금 일부와 자체 수입으로 구성되도록 구성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인식할 수 있다.

③ 위탁이후 필요한 인력을 축소 운영하는가에 대해서는 대부분 그렇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위탁계약시 인력체계에 대해 포함토록 하고 있고, 또한 서비스제공을 위해서는 인력이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④ 시설투자는 위탁자가 시행해야하는가에 대해 운영자들은 그런편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즉, 위탁운영자가 자신들의 운영하는 기관에 적합한 투자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식하는 것이다.

⑤ 위탁이후 성인이용 프로그램이 증가하였는가에 대해 운영자들은 보통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는 제도적으로 청소년이용도가 60% 이상유지해야하는 것과 현실적으로 청소년이외의 이용자가 거의 없다는 점이다.

⑥ 위탁이후 자치단체의 보조금이 증액되었는가 에서는 거의 늘어나지 않았다. 이 결과는 자치단체에서는 보조금 지급수준을 조례와 의회의 통과에 따르며, 민간위탁을 시행한 중요한 목적중의 하나를 비용절감에 두고 있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6) 위·수탁자간 협력수준

청소년수련시설의 위탁자와 수탁자간의 협력수준은 총 6개 변수로 구성되었다. 전체적인 경향은 어느 정도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내용은 <표V-14>와 같다.

<표 V-14> 위·수탁자간 협력관계 인식도

구 분	의사소통	중요협력	불만처리	계약외요구	양자관계	내용타당성
N	58	58	57	56	57	57
최소값	1	2	1	1	1	2
최대값	5	5	5	5	5	5
평균	3.29	4.05	3.47	3.16	3.30	3.35
표준편차	1.14	.74	1.07	.99	1.07	.94

① 위·수탁기관의 담당자간 의사소통은 원활한가에 대해서 운영자들은 보통정도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② 위·수탁기관간에 중요한 협력사항은 공식문서로 이루어지는가에 대해 대부분의 기관에서 그런 편이라고 응답하였다.

③ 불만은 상호간에 협의하는가는 서로 협력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④ 위탁기관에서의 계약사항 외에는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⑤ 위·수탁자간의 관계는 공식적으로 이루어지는가에서 약간 그렇다고 인식하고 있다.

⑥ 협의내용은 항상 타당한가에서 운영자들은 보통수준을 조금 넘는 수준에서 그렇다는 응답을 보였다.

7) 수탁기관의 전문성

수탁기관의 전문성은 총 4개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전체적인 전문적 수준은 보통을 조금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내용은 <표 V-15>와 같다.

<표 V-15> 수탁기관의 전문성 수준

구 분	전문인력	프로그램 다양성	전문경영자	전문설비
N	58	59	59	59
최소값	1	1	1	1
최대값	5	5	5	5
평균	3.26	3.58	3.24	3.02
표준편차	1.24	1.23	1.52	1.15

① 전문인력의 충분성은 중간수준이다. 이는 법정 배치기준 수준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이다.

② 프로그램의 다양성에 대해서는 다양하다는 의견이 많은 편이다. 이것은 위탁후 공간과 시간이용의 극대화를 의미한다.

③ 운영책임자(경영자)의 전문성은 중간수준이다. 아직까지 운영책임자의 전문성은 강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④ 프로그램운동을 위한 전문설비의 구축은 위탁기관에서의 전문설비 투자를 알 수 있는 것으로 보통수준에 머물고 있다. 즉, 위탁이후 별도의 시설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위탁계약이나 지도·감독을 통하여 시설투자를 유도하거나 자치단체가 직접 투자해야 함을 의미한다.

8) 수탁기관의 서비스 질 수준

위탁이후 수탁기관의 서비스질의 변화에 대한 인식은 7점 척도로 총 10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전체적인 경향은 약간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정부나 자치단체의 보조금에 대해서는 비판적으로 예상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표 V-16>와 같다.

공공성, 형평성, 이용료 증가는 평균 4점으로 중간정도수준이며, 책임성, 전문성, 서비스 질, 합리성, 다양성, 이용자 수 등에 있어서는 5점대로 약간 증가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보조금은 더욱 축소 될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아직까지 위탁 운영자들이 수련시설의 운영과 관련하여 적극적이거나 긍정적인 기대보다는 지금과 비슷한 상황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비용절감분야에서는 자치단체의 효율화 압력이 높아지고 자체 경영수지를 강조하게 될 것으로 보아 적절한 서비스 비용 보조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

<표 V-16> 위탁기관의 서비스 질 변화 인식도

구 분	공공성	책임성	전문성	보조금	서비스 질
N	56	56	55	55	55
최소값	1	1	1	1	1
최대값	7	7	7	7	7
평균	4.52	5.27	5.20	2.53	5.20
표준편차	1.77	1.81	1.84	1.75	1.66
구 분	형평성	합리성	다양성	이용료	이용자수
N	55	55	55	55	55
최소값	1	1	1	1	1
최대값	7	7	7	7	7
평균	4.49	5.20	5.42	4.07	5.15
표준편차	1.37	1.45	1.50	1.81	1.46

3. 수탁기관 특성에 따른 분산분석

분산분석은 수탁기관의 법인특성과 민간위탁기준, 그리고 개인특성에 대한 위탁영향요인에 대한 차이를 비교 설명한다.

1) 법인 종류별 위탁 영향변인에 대한 비교

<표 V-17> 법인종류별 위탁 영향요인 인식의 차이

구 분		총편차량	자유도	변 량	F값	유의수준
계약의 명확성	집단-간	4.718	2	2.359	.161	.852
	집단-내	734.603	50	14.692		
	합계	739.321	52			
지도·감독수준	집단-간	16.851	2	8.425	.931	.401
	집단-내	461.464	51	9.048		
	합계	478.315	53			
서비스특성인식	집단-간	4.153	2	2.077	.270	.764
	집단-내	422.330	55	7.679		
	합계	426.483	57			
협력수준	집단-간	1.772	2	.886	.088	.916
	집단-내	531.942	53	10.037		
	합계	533.714	55			
시설의 전문성	집단-간	179.756	2	89.878	5.994	.005
	집단-내	794.744	53	14.995		
	합계	974.500	55			
서비스의 질	집단-간	886.981	2	443.490	5.834	.005
	집단-내	3876.890	51	76.017		
	합계	4763.870	53			

수탁기관의 법인종류에 따라 계약의 명확성, 지도·감독수준, 서비스

특성 인식수준, 위·수탁기관간 협력수준, 수탁기관의 전문성, 민간위탁시설의 서비스질에 대한 평균치 차이에 대한 분산분석 결과는 <표 V-17>에서와 같이 수탁기관의 전문성과 서비스 질에 있어서 $P < .01$ 수준에서 유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법인종류에 따라 시설의 전문성과 서비스 질에는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2) 과거수탁경험별 위탁 영향변인에 대한 비교

<표 V-18> 과거 수탁경험별 위탁 영향요인 인식의 차이

구 분		총편차량	자유도	변 량	F값	유의수준
계약의 명확성	집단-간	8.910	1	8.910	.634	.430
	집단-내	731.182	52	14.061		
	합계	740.093	53			
지도·감독 수준	집단-간	.234	1	.234	.025	.875
	집단-내	499.293	53	9.421		
	합계	499.527	54			
서비스특성 인식	집단-간	3.870	1	3.870	.519	.474
	집단-내	424.774	57	7.452		
	합계	428.644	58			
협력수준	집단-간	1.832	1	1.832	.189	.666
	집단-내	534.308	55	9.715		
	합계	536.140	56			
시설의 전문성	집단-간	131.932	1	131.932	8.581	.005
	집단-내	845.577	55	15.374		
	합계	977.509	56			
서비스의 질	집단-간	332.894	1	332.894	3.953	.052
	집단-내	4463.543	53	84.218		
	합계	4796.436	54			

수탁기관의 과거 다른 수련시설의 수탁 경험에 따라 계약의 명확성,

지도·감독수준, 서비스 특성 인식수준, 위·수탁기관간 협력수준, 수탁기관의 전문성, 민간위탁시설의 서비스 질에 대한 평균치 차이를 분석한 결과 <표V-18>에서와 같이 시설의 전문성과 서비스질에 있어서 유의수준 .005와 .052 수준에서 유의적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위탁기관의 과거 수탁경험에 따라 시설의 전문성과 서비스 질에는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3) 위탁 선정방식별 위탁 영향변인에 대한 비교

<표V-19> 민간위탁 선정방식별 위탁 영향요인의 차이

구 분		총편차량	자유도	변 량	F값	유의수준
계약의 명확성	집단-간	17.544	2	8.772	.616	.544
	집단-내	697.437	49	14.233		
	합계	714.981	51			
지도·감독 수준	집단-간	1.233	2	.616	.064	.938
	집단-내	471.460	49	9.622		
	합계	472.692	51			
서비스특성 인식	집단-간	33.656	2	16.828	2.301	.111
	집단-내	358.402	49	7.314		
	합계	392.058	51			
협력수준	집단-간	29.874	2	14.937	1.776	.180
	집단-내	412.203	49	8.412		
	합계	442.077	51			
시설의 전문성	집단-간	110.679	2	55.340	3.543	.037
	집단-내	749.674	48	15.618		
	합계	860.353	50			
서비스의 질	집단-간	304.809	2	152.405	1.958	.152
	집단-내	3814.017	49	77.837		
	합계	4118.827	51			

민간위탁 선정방식에 따라 계약의 명확성, 지도·감독수준, 서비스 특성 인식수준, 위·수탁기관간 협력수준, 수탁기관의 전문성, 민간위탁시설의 서비스 질에 대한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V-19>과 같이 $P < 0.05$ 수준에서 시설의 전문성에 있어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

이 결과는 민간위탁 기관 선정 방식에서 완전공개경쟁-제한경쟁-수의계약의 형태에 따라 민간위탁수련시설의 전문성은 차이가 발생함을 알 수 있다.

4) 선정기준 공개수준별 위탁 영향변인에 대한 비교

민간위탁 선정기준의 공개수준에 따라 계약의 명확성, 지도·감독수준, 서비스 특성 인식수준, 위·수탁기관간 협력수준, 수탁기관의 전문성, 민간위탁시설의 서비스 질에 대하여 평균치 차이를 분석한 결과 <표 V-20>과 같이 지도·감독수준에 있어서 $P < 0.0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

이 결과는 민간위탁 선정기준의 공개수준인 완전공개방식-구체적기준공개-포괄적 기준 공개-전혀 미공개의 형태에 따라 민간위탁수련시설의 지도·감독수준에는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V-20> 위탁 선정기준별 위탁 영향요인 인식의 차이

구 분		총평균	자유도	변량	F값	유의수준
계약의 명확성	집단-간	19.251	3	6.417	.443	.724
	집단-내	695.730	48	14.494		
	합계	714.981	51			
지도·감독 수준	집단-간	140.646	3	46.882	6.777	.001
	집단-내	332.046	48	6.918		
	합계	472.692	51			
서비스특성 인식	집단-간	33.748	3	11.249	1.507	.225
	집단-내	358.309	48	7.465		
	합계	392.058	51			
협력수준	집단-간	7.380	3	2.460	.272	.846
	집단-내	434.697	48	9.056		
	합계	442.077	51			
시설의 전문성	집단-간	19.994	3	6.665	.373	.773
	집단-내	840.359	47	17.880		
	합계	860.353	50			
서비스의 질	집단-간	30.770	3	10.257	.120	.948
	집단-내	4088.057	48	85.168		
	합계	4118.827	51			

5) 보조금 지원 수준별 위탁 영향변인에 대한 비교

민간위탁 청소년수련시설의 2000년도 보조금 수준에 따라 계약의 명확성, 지도·감독수준, 서비스 특성 인식수준, 위·수탁기관간 협력수준, 수탁기관의 전문성, 민간위탁시설의 서비스 질에 대하여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V-21>과 같이 지도·감독수준에 있어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정부나 자치단체의 보조금 지원수준이 담당공무원의 지도·감독 횟수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V-21> 보조금 지원 수준별 위탁 영향요인 인식의 차이

구 분		제공합	자유도	평균제공	F	유의확률
계약의 명확성	집단-간	190.518	16	11.907	1.325	.385
	집단-내	53.917	6	8.986		
	합계	244.435	22			
지도·감독 수준	집단-간	161.246	16	10.078	4.123	.045
	집단-내	14.667	6	2.444		
	합계	175.913	22			
서비스특성 인식	집단-간	112.667	17	6.627	1.070	.504
	집단-내	37.167	6	6.194		
	합계	149.833	23			
협력수준	집단-간	257.413	16	16.088	1.708	.263
	집단-내	56.500	6	9.417		
	합계	313.913	22			
시설의 전문성	집단-간	218.583	17	12.858	.680	.753
	집단-내	113.417	6	18.903		
	합계	332.000	23			
서비스의 질	집단-간	782.072	16	48.880	2.262	.160
	집단-내	129.667	6	21.611		
	합계	911.739	22			

4. 위탁효과 요인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본 연구는 민간위탁 수련시설의 민간위탁 기준을 제시하기 위하여 위탁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영향력을 확인하는데 있다.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서비스 질, 비용절감, 그리고 프로그램 이용자 수로 구성되어 있다.

종속변수에 대해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는 계약의 명확성, 지도·감독수준, 서비스 특성 인식수준, 위·수탁기관간 협력수준, 수탁기관의 전문성 등 5개 변수영역으로 구성하였다.

1) 수탁기관의 서비스 질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모형1 : 서비스 질 회귀모형

$$Y1 = \alpha + \beta_1 x_1 + \beta_2 x_2 + \beta_3 x_3 + \beta_4 x_4 + \beta_5 x_5$$

<표 V-22> 민간위탁 요인이 서비스 질에 미치는 영향

다중상관계수	결정계수 R^2	수정결정계수 R^2	추정값의 표준오차	자유도	F 값	유의확률
.700	.490	.436	6.89	5	9.046	.000
구 분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β)	t		유의확률
	B	표준오차				
(상수)	4.157	8.489		.490		.627
계약의 명확성	.585	.340	.241	1.722		.092
지도·감독수준	-.188	.327	-.063	-.575		.568
서비스특성인식	.259	.409	.076	.632		.530
협력수준	.297	.382	.100	.777		.441
시설의 전문성	1.096	.238	.511	4.607		.000

회귀모형1의 유의수준은 $P = 0.00$ 수준을 만족하며, 다중상관 계수는 .700으로 매우 높다. 민간위탁 요인이 서비스 질에 대한 설명량은 49% 수준이다.

변인들간의 상대적 중요도를 나타내는 표준화 계수인 β 값을 보면 시설이 전문성이 .511로서 가장중요하며, 다음으로 계약의 명확성이 .241로 중요한 것을 나타냈다.

① 위·수탁 계약내용의 명확성(x1)과 서비스 질(Y1)의 관계

계약내용의 명확성(구체성)과 서비스 질과의 관계는 정(+)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수탁운영자들은 계약내용이 구체적으로 제시될수록 서비스 질은 높아진다고 인식하고 있다. 즉, 다른 민간위탁요인이 동일하다면 계약내용이 보다 구체적일수록 서비스 질은 증가할 것이다

따라서 계약서 내용을 구체화하고 산출중심으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② 지도·감독 수준(x2)과 서비스 질(Y1)의 관계

담당공무원의 지도·감독 횟수에 따라 서비스 질은 부(-)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록 통계적 의미는 낮으나 자치단체에서 위탁시설을 지도·감독을 할 때에는 위탁시설의 상황을 고려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③ 수련활동 서비스특성 인식(x3)과 서비스 질(Y1)의 관계

운영자가 수련활동 서비스 특성을 어떻게 인식하는가에 따라 서비스 질과의 관계는 정(+)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통계적 의미는 낮으나 수련시설이 주요업무특성에 대한 인식이 전문적일수록 서비스 질은 나아질 것을 기대할 수 있다.

④ 위·수탁기관 간의 협력수준(x4)과 서비스 질(Y1)의 관계

담당공무원과 수탁기관간의 협력성은 서비스 질과 정(+)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록 통계적 의미는 낮으나 위·수탁기관간의 협력수준이 높아지면 청소년수련시설의 서비스 질이 높아질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⑤ 수탁시설의 전문성(x5)과 서비스 질(Y1)의 관계

수탁시설의 전문성은 서비스 질에 대하여 정(+)의 관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의수준 .000에서 통계적 의미가 있다. 즉, 수탁기관의 전문성이 높아질수록 서비스 질도 높아진다. 또한 다른 변수에 비해 베타 값이 가장 높아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된다. 따라서 민간위탁 기준선정시 청소년수련시설은 전문성을 가장 중요한 항목으로 선정되어야 할 것이다.

2) 비용절감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모형2 : 비용절감 회귀모형

$$Y2 = \alpha + \beta_1 x_1 + \beta_2 x_2 + \beta_3 x_3 + \beta_4 x_4 + \beta_5 x_5$$

회귀모형2의 유의수준은 $P = 0.001$ 수준을 만족하며, 다중상관 계수는 .825로 상관성이 매우 높다.

민간위탁 요인이 종속변수인 비용절감(2000년도 보조금수준)에 대한 통계적 설명량은 68% 수준이다.

변인들간의 상대적 중요도를 나타내는 표준화 계수인 β 값을 보면 위·수탁 기관간 협력성이 -.796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계약의 명확성이 .671이고, 담당공무원의 지도·감독횟수가 .490의 순으로 중요도가 나타났다.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는 민간위탁요인은 계약의 명확성, 공무원의 지도·감독수준, 위·수탁기관간의 협력수준 변수이다.

<표 V-23> 민간위탁 요인이 비용절감에 미치는 영향

다중상관계수	결정계수 R^2	수정결정 계수 R^2	추정값의 표준오차	자유도	F 값	유의확률
.825	.681	.587	152.68	5	7.243	.001

구 분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β)	t	유의확률
	B	표준오차			
(상수)	-784.090	299.673		-2.616	.018
계약의 명확성	47.793	15.487	.671	3.086	.007
지도·감독수준	41.191	15.324	.490	2.688	.016
서비스특성인식	6.606	16.277	.072	.406	.690
협력수준	-50.053	13.691	-.796	-3.656	.002
시설의 전문성	12.204	9.603	.193	1.271	.221

① 위·수탁 계약내용의 명확성(x1)과 비용절감(Y2)의 관계

위·수탁 계약내용의 명확성은 비용절감(2000년도 보조금 지급수준)과 정(+)의 관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의수준 .007 수준에서 통계적 의미가 있다.

이 결과는 위·수탁 계약내용이 명확하고 구체적인수록 보조금의 지급 정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민간위탁 현황과 비교해 볼 때 이것은 계약내용의 명확성으로 인하여 보조금 규모가 크지는 것이 아니라 높은 보조금을 지급할 수록 계약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이유는 계약서 작성과 비용결정의 선·후 관계에서 비용결정이 먼저 이루어진 후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이다.

② 지도·감독 수준(x2)과 비용절감(Y2)의 관계

공무원의 지도·감독 수준은 2000년도 보조금 지급수준에 정(+)의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의수준은 .016 수준에서 통계적 의미가 있다.

이 결과는 공무원의 지도·수준에 따라 2000년도 보조금 지급수준이 높아졌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도감독과 보조금 지급수준의 인과적 선·후 관계에서 보조금의 지급이 이루어진 후 이에 대한 지도·감독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높은 보조금의 지급은 공무원의 지도·감독 수준을 강화한다고 볼 수 있다.

③ 수련활동 서비스특성 인식(x3)과 비용절감(Y2)의 관계

수련활동서비스 특성에 대한 인식과 2000년도 보조금 지급 수준은 약한 정(+)의 관계가 있으나 통계적인 의미는 없다.

④ 위·수탁기관간의 협력수준(x4)과 비용절감(Y2)의 관계

위·수탁기관간의 협력수준과 2000년도 보조금지급 수준은 매우 강한 부(-)의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통계적으로도 .002 수준에서 유의하다. 이것은 협력수준이 높을수록 적은 규모의 보조금을 지급 즉, 비용을 절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협력수준은 위·수탁기관간에 이루어지는 의사소통이나 문서화정도 그리고 협의내용의 타당성, 관계의 공식성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때 담당공무원이 수탁기관에 대해 잘 알고 서로간의 의사소통이 원활할 경우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게 되어 자치단체 보조금의 축소를 가져올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⑤ 수탁시설의 전문성(x5)과 비용절감(Y2)의 관계

수탁시설의 전문성은 비용절감 즉, 2000년도 보조금 지급수준과 약한 정(+)의 관계가 있으나, 통계적 의미가 없다.

3) 수탁기관의 서비스이용도 대한 다중회귀분석

모형 3 : 서비스 이용도 회귀모형

$$Y3 = \alpha + \beta_1 x_1 + \beta_2 x_2 + \beta_3 x_3 + \beta_4 x_4 + \beta_5 x_5$$

<표 V-24> 민간위탁 요인이 이용자 수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

다중상관계수	결정계수 R^2	수정결정 계수 R^2	추정값의 표준오차	자유도	F 값	유의확률
.457	.209	.125	1.36	5	2.479	.045

구 분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계수 (β)	t	유의확률
	B	표준오차			
(상수)	.733	1.674		.438	.664
계약의 명확성	7.697E-02	.067	.200	1.149	.256
지도·감독수준	3.116E-02	.064	.066	.484	.631
서비스특성인식	5.795E-02	.081	.107	.718	.476
협력수준	2.127E-02	.075	.045	.283	.779
시설의 전문성	8.394E-02	.047	.248	1.790	.080

회귀모형의 유의수준은 $P < 0.05$ 수준을 만족하며, 다중상관 계수는 .457으로 약간 높다. 민간위탁 요인이 서비스 이용도에 대한 설명량은 20% 수준이다.

변인들간의 상대적 중요도를 나타내는 표준화 계수인 β 값을 보면 시설의 전문성이 .248로서 가장 중요하며, 다음으로 계약의 명확성이 .200으로 제시되었다.

5. 민간위탁 지원정책에 대한 의견 조사분석

본 연구는 민간위탁 청소년수련시설의 위탁효과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위탁운영자들이 현재 시설운영과 관련하여 보다 분명히 지원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한 결과 <표 V-25>과 같다.

<표 V-25> 정책지원 사항에 대한 의견 조사표

구 분		항 목				
		전혀 필요없다.	필요없는 편이다	그저 그렇다	필요한 편이다	매우 필요하다
위탁기준에 대한 객관적인 제도와 지침	빈도	1	1	7	25	23
	%	1.8	1.8	12.3	43.9	40.4
운영성과에 대한 전문기관의 객관적 평가	빈도	1	4	8	24	20
	%	1.8	7.0	14.0	42.1	35.1
지원금 규모결정을 위한 적정 운영비 산정	빈도	0	0	3	25	29
	%	0	0	5.3	43.9	50.9
운영비에 대한 관 계기관간 비용분담	빈도	0	2	4	23	28
	%	0	3.5	7.0	40.4	49.1
법정배치전문인력 에 대한 보수 지원	빈도	1	1	7	16	34
	%	1.7	1.7	11.9	27.1	57.6

첫째, 청소년수련시설의 민간위탁 선정 기준 및 절차에 대해 객관적인 제도적 지침의 필요성에 대해 운영자들은 ‘매우 필요하다’ ‘필요한 편이다’라는 의견이 84.3%로 나타났다. 따라서 국가 및 자치단체는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선정 기준 및 절차는 지금까지

지의 비용절감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 질 측면과 관련되어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민간위탁 및 재 위탁과정에서 수련시설의 운영성과에 대한 전문기관의 객관적 평가가 필요한가에서 대해서 수탁운영자들은 ‘매우 필요하다’ ‘필요한 편이다’라는 의견이 77.2%로 제시되었다. 이 결과는 지금까지 위탁운영성과에 대해 위탁기관 또는 수탁기관에 의한 자의적인 판단기준에 따르거나 전혀 평가를 수행하지 않고 정책적 판단에 의해 민간위탁 과정이 진행됨으로써 수탁기관의 효율성과 서비스 질에 대한 고려가 없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위탁기관은 수탁 하고자 하는 수련시설에 대한 경영분석 등을 통하여 운영 성과에 대한 평가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셋째, 정부와 자치단체의 지원금 규모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과학적인 분석을 통한 적정한 운영비용의 산정이 필요한가에 대해 94.8%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이것은 지금까지 이루어진 지원금의 결정이 대부분 합리적인 수단에 의해 이루어지기보다는 정책적 판단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운영비의 산정은 전문기관에 의해 과학적인 절차를 통하여 결과를 산출함으로써 지원규모에 대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할 것이다.

넷째, 수련시설의 운영비에 대한 관계자의 비용분담 필요성에 대하여 응답자들은 89.5%가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수련시설의 운영비는 인건비·사업비·관리운영비 등 3개 영역으로 구분되어진다. 또한 관계자는 위탁기관·수탁기관·그리고 이용자를 말한다. 이것은 수련시설의 운영이 공공정책의 일환으로 청소년복지 측면에서 위탁기관의 부담과 이를 관리·운영하는 측면에서의 수탁기관 부담 그리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의 부담으로 나누어져야 한다. 따라서 자치단체는 수련시설의 운영비에 대한 과학적인 산출을 통하여 적정운영비 부담 비율을 정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청소년수련시설의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법정 배치기준에 해당하는 전문인력에 대한 보수지원에 대하여 84.7%가 필요하다고 인식

하고 있다. 법정 배치기준에 해당하는 전문인력은 국가가 청소년수련시설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최소한의 인원으로 시설당 1-3명으로 배치기준이 제시되어있다.

청소년수련시설이 학교교육을 보완하고 청소년 문제를 예방하는 중요한 기관으로 그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서비스의 제공이 필수적 조건이 되며,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전문인력의 유지라고 볼 수 있다. 현재 청소년수련시설에서의 이직율이 높아 안정성이 현저히 낮아 균등한 서비스의 유지가 어렵다는 것을 볼 때 청소년전문인력인 청소년지도사에 대한 지원은 시급히 해결되어야할 문제라고 보아진다.

VI. 결론 및 개선방안

1. 결론

1998년도 IMF이후 정부는 비용절감과 서비스 질 향상 방안의 일환으로 민영화 정책을 가속화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은 정부실패에 대한 '작은 정부론'과 주민에게 다양한 선택가능성을 높이고자 하는 '공공선택이론' 그리고 거래비용의 절감으로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거래비용이론' 등으로 설명되고 있으며, 본질적으로는 시장기구로의 회귀를 주장하는 신자유주의 정책에 바탕을 두고 있다.

청소년분야에 있어서도 이러한 민영화 전략 중 '민간위탁'이라는 수단을 사용하고 있다. 이것은 공공서비스의 공급은 정부가 계속유지하면서 서비스의 생산은 민간에 맡기고 정부가 이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민간위탁은 위와 같은 이론적인 지지도에 불구하고 민간위탁 대상별 서비스에 대한 효과 검증이나 수탁기관 평가기준, 그리고 위탁추진과정에서의 기준제시 등이 제대로 제시되지 않고 무리하게 추진됨으로써 민간위탁 시행대상에 따라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청소년수련시설의 민간위탁 추진에 있어서도 그러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민간위탁의 정당성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수련시설의 민간위탁에 있어서 당연히 선행되어야 할 내용 즉, 위탁효과인 서비스 질과 비용절감을 달성하기 위하여 고려되어야 할 요소인 민간위탁 관련 기준을 제시하는데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 동안 이론적·경험적 연구에 대한 탐색과 전문가회의를 개최하고 외국의 사례를 제시하였으며 위탁담당자인 공무원과 잠재적 수탁자인 청소년단체에 대하여 면접조사를 수행

하고, 현재 청소년수련시설을 수탁운영하고 있는 운영자에 대하여 질문지 조사를 수행하였다.

이 결과 청소년수련시설의 민간위탁 효과인 서비스 질과 비용절감 그리고 서비스 이용자의 증가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첫째는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민간위탁은 행정자치부의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사항'과 지방자치단체별로 별도의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으나 청소년수련시설 설립의 모법이 되는 '청소년기본법'에서는 이와 관련한 기준이 전무하다.

이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담당 부서에서는 청소년수련시설의 고유한 특성을 평가하고 이를 목적으로 하는 위탁기준과 방법 등의 제도를 만들기보다는 기존의 다른 분야에서 이루어진 제도를 그대로 적용하는 사례가 많다. 또한 그 위탁내용에 있어서도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기보다는 포괄적으로 적용하도록 만들어져 업무수행과정과 효과를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애매하다. 이것은 재 위탁과정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재 위탁이 과학적인 평가 등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없기 때문에 재 위탁이 아닌 계약연장이 이루어지고 있다.

둘째는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차원에서 민간위탁이 직영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수탁기관의 운영과정과 효과에 대한 지도·관리, 책임성, 지원 등이 과학적 절차와 합리적인 판단에 의해 구체적으로 실체화 되기보다는 관례나 정기적인 의례에 의존하고 있다. 이 결과는 위탁기관에 대한 과학적인 진단을 통하여 자치단체에서 요구하는 서비스 질과 양에 맞추어 지원정책이 논의되어야함을 의미한다.

또한 기본적인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최소한의 지원기준이 제시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법정 전문인력에 대한 지원을 인건비 항목이 포함되어야 한다.

셋째는 위탁자의 선정에 있어서 현재 청소년기본법에서는 소규모시설 외에는 민간비영리법인까지를 위탁 가능자로 한정하고 있다. 이 결과 일

부 자치단체에서는 위탁단체가 없거나 경쟁성을 확보할 수 없는 곳도 있다. 따라서 청소년관련 전문경력이 있는 개인이나 민간업체가 포함되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별로 개별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위탁기준은 청소년수련시설 운영과 관련 없는 법인에 위탁이 이루어지는 등 위탁기준이나 과정에 대한 불신이 높다. 이러한 위탁기준은 청소년수련시설의 서비스 질과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청소년수련시설을 담당하고 있는 문화관광부차원에서 수련시설의 객관적인 위탁기준을 제시하고 전문성을 가진 단체가 수탁자가 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는 수탁자에 대한 지도·감독은 위탁자 선정기준의 공개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다. 이것은 정보를 완전히 공개할수록 담당공무원의 지도·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공개하지 않을수록 지도·감독이 미흡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다섯째는 청소년수련시설의 서비스 질은 수탁자의 전문성과 계약내용의 구체적일수록 높아진다. 반면에 공무원의 지도·감독수준은 서비스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여섯째는 청소년수련시설의 비용은 계약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질수록, 공무원의 지도·감독수준 높을수록 비싼 비용을 지불하고 있었다. 반면에 위·수탁기관간의 협력수준이 높을수록 낮은 비용을 지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담당공무원이 수탁기관의 운영내용을 자세히 알고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지면 청소년수련시설의 비용절감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현상은 '지금까지' 이루어진 '계약내용과 지도·감독이' 과학적인 분석을 통하여 제시되는 것이 아니라 관례상이 이루어짐으로써 비용절감의 효과를 가져오지 못하고 오히려 비용상승을 가져온 반면에 수탁시설의 운영전반에 관하여 잘 알고 이에 대한 원활한 의사소통 등이 이루어질 때는 비용절감이 충분히 이루어짐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일곱째는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자들은 위탁기준에 대한 객관적인 제도와 지침 마련, 운영성과에 대한 전문기관의 평가, 합리적인 운영비 산정과 보조금 규모결정, 운영비에 대한 국가 및 자치단체-수탁운영자-서비스이용자의 부담률 산정, 법정배치 전문인력에 대한 보수지원 등에 대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반드시 정책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으로 지적하고 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청소년수련시설의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제도적 측면, 운영적 측면, 그리고 성과 등에 대한 평가측정 등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위탁과정에 따라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2. 개선방안

1) 청소년수련시설 민간위탁의 제도적 측면

기 본 방 향

- 경쟁성 유지: 선정관련 정보의 구체적 공개, 제한경쟁요소의 축소, 계약 만료시 재 위탁과정 수행을 통한 경쟁성 유지, 지역내 하나의 단체에 의한 독점 방지
- 공정한 심사: 심의위원회의 구성, 심의절차와 방법, 감시체계
- 전문성 강화: 법인의 전문성, 운영자 전문성, 구성원의 전문성 강화
- 선정기준의 현실화: 기준의 단순화 및 전문능력의 극대화

(1) 경쟁성 유지

본 연구의 조사결과 위탁선정기준과 정보공개수준에 따라 청소년수련시설의 서비스 질과 비용절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위탁기관은 위탁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민간위탁과정에서 항상 경쟁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것은 위탁기준의 공개, 수탁참가자에 대한 지역제한·수탁비용의 제한·독점요소를 제거함으로써 잠재적 경쟁요소인 수탁가능 단체나 법인에 대한 유지 등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계약 완료 후 다시 재 위탁과정을 통하여 수탁자가 선정하는 것이 기본 전제로 구축되어야만 경쟁성이 유지된다.

또한 연구결과 수탁과정에 대한 불신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수탁자 선정을 위한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대해 객관성을 유지하고, 시민단체나 감사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심사과정을 지켜보도록 해야할 것이다.

(2) 선정기준

청소년수련시설 민간위탁 선정기준은 4가지가 중심이 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는 전문성이다. 전문성은 본 연구에서 수련시설의 서비스 질과 비용절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확인되었다. 전문성에는 세가지 차원에서 이루어져야한다. ①수탁기관에 대한 전문성이다. 이것은 수탁업체가 청소년수련시설을 운영할 경험과 기술을 갖추고 있는가 하는 것과 다른 업종에 대한 진출여부이다. 특히 대도시의 거대 단체나 법인의 경우 청소년분야로의 전문성을 지향하고 이를 개발하기보다는 노인복지, 여성복지, 종합사회복지, 사회교육기관운영 등 업종이 다각화하여 문어발식으로 확장함으로써 소규모 전문단체가 성장할 기반이 없어져 궁극적으로는 잠재적 경쟁성을 파괴하여 국가나 자치단체의 비용부담을 높일 수 있고, 지역사회내의 청소년활동 관련 서비스 량이 줄어들 수 있는 여지가 있다.

②운영책임자에 대한 전문성이다. 운영책임자는 청소년수련시설을 대표하는 자로서 독립된 경영자로서 청소년수련활동과 관련된 경험과 능력이 갖추어져 있어야만 바람직한 수련시설의 운영이 이루어질 것이다. ③전문능력을 갖춘 인력구성이다. 이는 법정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포함하여 보다 중요한 것은 현재의 수탁예정자가 갖고 있는 전문인력의 구성을 말한다.

둘째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성이다. 이는 청소년수련시설이 공익성을 유지하는 것으로 공신력도 관련이 있다. 이는 두 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져야한다. ①수탁기관의 정체성과 현재의 업무내용과 관련되어 수탁예정자의 목적과 청소년수련활동 관련성이 중심이 된다. 여기에는 수탁예정자가 최소 3년 이내에 비도덕적인 문제가 없어야 함을 말한다. ②사업계획대비 산출이다. 이는 사업계획의 실행가능성을 검토하고, 사업집행 후 비교가 이루어져야한다. 또한 최초 위탁에서는 수련시설에 대한 적정업무내용과 비용에 대한 전문기관의 산정을 통하여 이와 비교하여 측정하여야 한다.

셋째는 재정능력이다. 재정능력은 수탁자의 자산과 수탁 후에 수탁자가 부담할 수 있는 비용을 말한다. 자산과 비용은 합리적으로 결정되어야 하며 재정능력이 앞의 전문성이나 책임성을 가로막는 수준이 되어서는 안된다. 즉, 현실적으로 청소년전문단체의 재정의 영세성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자산과 부담비율을 수련시설의 적정운영비와 관련하여 산출되어야한다. 따라서 재정능력분야는 위탁 공고가 이루어질 때 자산과 부담액 기준을 제시하여 여기에 합당한 법인들만을 대상으로 심사하는 것도 한가지 방법으로 논의될 수 있을 것이다.

연구결과 청소년단체에서는 합리적인 부담액의 수준을 계약기간(평균 3년)동안 9천만원 전후이다. 또한 선행 연구에 따르면 자산은 1억원 이상인 법인과 부채는 총 자산의 30%를 넘지 않아야 한다.

넷째는 효율성이다. 효율성은 경쟁적 환경이 가장 높은 효과를 가져온다. 따라서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하나는 지역 내 하

나의 법인에 의한 독점방지이며, 다음으로는 운영상의 수지타산의 균형성이다. ①독점방지는 경쟁을 유지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이것은 하나의 단체가 지역 내에서 이미 2개 이상의 수련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나, 2개 이상의 다른 종류의 시설을 운영하고 있을 경우에는 이를 제한함으로써 수탁자가 위탁수련시설에 전력을 투구하고 발전시킬 가능성이 높다. ②운영의 수지타산의 균형은 수탁자가 수련시설을 얼마나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가를 알 수 있다. 여기에는 자치단체 보조금의 요구액과 수련시설 운영을 위한 수입 그리고 기부금이나 자원봉사자의 활용 등 종합적인 판단이 요구된다.

(3) 위원회 구성

청소년수련시설의 심사위원회는 그 구성에 있어서 공정성이 가장 중요하다. 따라서 위원회 구성은 전문성과 객관성 그리고 수요자측면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①전문성은 청소년수련시설의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해당분야의 지식과 경험을 갖추고 있는 자를 말한다.

②객관성은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이해관계자를 제외하는 것을 말한다. 연구결과에 있어서도 부정적으로 제시되었다. 이해관계자란 수탁기관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자를 포함하여 위탁을 추진하는 자치단체관계자도 포함한다. 그 이유는 자치단체는 자신들의 입장에서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성향이 높기 때문이다. 자치단체관계자란 위탁업무를 추진하는 담당공무원, 의회의원, 기존에 자치단체와 업무상 관계를 맺고 있는 자를 말한다. 따라서 위원회 구성에 있어 자치단체관계자는 30% 범위 내에서 구성되어야 한다.

③수요자측면은 수탁서비스를 이용하는 집단의 의견을 대변하는 것으로 청소년이 직접적인 대상이 된다. 그러나 청소년이 위탁과 관련된 전문

적 지식을 갖추고 판단하는 것에는 여러 가지 애로점이 있기 때문에 수련 시설을 이용하는 학교나 단체, 그리고 지역사회 주민 중 전문적 능력이 있는 자가 대상이 된다.

위와 같은 기본방향에 따른 다음과 같이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심사위원회의 규모는 9명 전후가 바람직하다.

-심사위원회의 구성은 전문가집단 40%, 자치단체관계자 30%, 수요자 측면 30%로 구성하는 것이 적정하다.

(4) 심사위원회의 심의방법

민간위탁 심사위원회의 심사방법은 공정성이 중요하다. 형평성이란 심사방법상에 있어서 균등한 점수배열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즉, 심사항목별 등급에 따른 점수부여를 모든 심사위원이 공정하게 차등부여 하는 것이다. 이것은 일부의 심사위원에 의해 점수가 등급간에 폭이 커짐으로써 발생가능한 점수왜곡현상을 방지하고 모든 심사위원들의 점수가 공정평하게 반영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등급(순위)간 차등 폭은 3%-5% 범위 내에서 부여한다

-점수부여방식은 총점부여방식과 전문분야점수제가 있으나, 청소년수련시설의 경우 전문분야점수제는 현실적으로 타당치 않음으로 총점부여방식이 바람직하다. 이 경우 심사표에 전체점수를 차등하여 일괄부여 후 통합하는 방법과 심사항목별 점수부여 후 통합하는 방법이 있으나 본 연구자는 심사항목별 차등 점수를 부여 한 후 통합하는 방법을 권장한다.

(5) 감시체계

감시체계는 심사위원회의 심의과정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

기 위한 모니터링 체계로서 주로 시민단체대표, 의회의원, 감사담당공무원 등으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민간위탁시설 운영적 측면

기 본 방 향

- 계약 내용의 구체화: 계약내용을 성과중심으로 구체화 및 전문평가기관에 의한 대리계약체계 도입 검토
- 적정 운영의 보장: 책임정보장, 운영비 분담율 제시
- 지도·감독체계의 단순화·전문화: 업무중심의 협력체계구축 및 안전성의 관리·유지
- 시설 투자 여건 조성: 임대료등 수익의 일정부분 시설투자제도화
- 전문적 능력 강화: 법정 전문인력의 인건비 지원, 지속적인 전문인력 확대 및 특성화분야 개척
- 시설운영의 투명성 확보: 운영위원회 구축, 청소년이용비율 유지
-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성과 평가 제도 구축

(1) 계약 내용의 구체화

본 연구결과 계약내용은 서비스 질과 비용절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따라서 계약내용을 명확하게 하는 것은 수탁자에게는 자율적 운영과 책임성을 보장하고 위탁자에게는 위탁의 효과를 강화하는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따라서 두가지측면에서 계약내용의 구체화가 이루어져야한다. 하나는 위탁기관의 담당공무원이 현재의 계약서를 세밀하게 작성하는 것이다. 다음은 위탁추진기관의 공무원의 인력부족과 전문성 부족

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위탁대리기관을 선정하여 그 기관으로 하여금 전문적인 내용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는 것이다. 두 가지 모두 계약내용을 보다 구체화 할 수가 있다.

첫째, 현재 대부분의 계약서는 주로 투입 중심으로 작성되어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서비스범위, 수탁서비스 수행에 필요한 조건, 비용지급, 관리감독내용, 사고책임, 계약위반시 조치사항, 성과관리 및 정보 등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계약내용은 업무내용중심의 서비스 효과를 달성하는데 목적을 두기보다는 무엇을 투입하고, 시설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따라서 위의 내용이외에도 성과중심의 측정을 위한 다음의 기준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① 시설 운영과정 보다는 결과 요구를 중심으로 작성
- ② 측정가능한 수행기준과 질적으로 감독이 가능한 계획이 보장
- ③ 비용절감을 위한 구체적 방법과 과정을 제시
- ④ 성과달성에 따른 인센티브를 포함

이러한 계약내용을 계약서내용에 모두 포함할 수 없다면 가칭 ‘청소 수련시설 위탁계약 내용의 약정서’등을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대리계약체계의 도입검토이다. 대리계약체계란 정부나 자치단체에서 수련시설을 위탁하고자 할 때 수탁단체에 대한 평가 등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미국의 경우 정책적으로 위탁계약을 추진함에 있어 대리권을 가진 기관을 선정하고, 그 기관에서 계약내용과 계약추진전략, 계약방법, 필요한 방법 등을 성과기초계약방식에 적용하여 작성한다. 이때 대리기관은 질적·양적 최대한 효과를 위해 측정가능한 수행표준과 감독계획 그리고 인센티브 계획을 제시해야한다. 또한 계약당시에는 업무와 관련 측정가능한 실행평가계획서를 제시해야하며, 그 속에는 성과기준(양, 질, 시간)을 제시하여야 한다.

(2) 적정 운영의 보장

청소년수련시설은 청소년을 위한 공공시설이다. 그 의미는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운영의 책임이 일차적으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민간위탁의 경우에 있어서도 그 일차적 역할의 수행은 정부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민간위탁이 운영의 성과 즉, 서비스 질 확보와 비용절감 효과가 직영의 경우보다 나은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이와 같은 수단을 강구하게되었다. 따라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설을 제공하는 것 뿐만 아니라 수련시설이 잘 유지되도록 해야할 책임이 있다. 이것은 단순히 관리·감독차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수련시설의 운영이 활성화 되도록 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적정운영의 보장은 다음의 두 가지 측면에서 제도적 지원이 이루어져야한다.

첫째는 수련시설 운영에 대한 자율성과 책임성을 보장하는 것이다. 이것은 민간위탁의 기본적 취지이다. 따라서 위탁기관에서는 지도·감독의 정례화 및 위탁계약서에 제시된 사항에 대하여만 행정관여수준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는 위탁수련시설의 운영비에 대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결정과이의 배분이다. 본 연구결과에서도 청소년수련시설 적정운영비의 과학적 산정 및 그 비용에 대한 이해당사자간 부담수준을 결정하는 것이 정책적으로 시급히 이루어져 할 사항으로 제시되었다. ①적정운영비의 산정은 전문기관에 의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분석을 통하여 산정하며, 그 결과를 "위탁의" 기준으로 한다. ②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비"는 크게 "인건비"-사업비-관리비로 구분할 수 있다. 따라서 합리적으로 산정된 운영비를 중심으로 국가 및 자치단체-수련시설 운영자-서비스이용자로 부담률을 정해야 할 것이다. 정부 및 자치단체 부담율은 수입 대비 지출을 감안하여 이를 보전하는 수준에서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지도·감독체계의 단순화·전문화

위탁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은 수련시설의 서비스 질을 유지하고 비용절감이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한다. 본 연구결과에 있어서도 담당공무원의 지도·감독은 비용절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제시되었다. 그러나 다른 연구에서는 복잡하고 과다한 행정업무가 위탁효과를 저하시키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위탁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은 계약서에 제시된 내용을 한하여 이루어져야하며, 위탁시설과 업무를 중심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비용절감효과를 가져온다.

또한 수련시설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지도·감독내용은 수련시설과 수련활동 전반에 안전성을 확보하고 유지하는 것이 포함되어야함을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안전성 확보는 구체적인 수련시설과 수련활동의 내용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하며 이에 대한 지표를 별도로 작성하여 확인하여야한다.

(4) 시설 투자 여건 조성

청소년은 욕구가 다양하고 환경변화에 매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계층이다. 이러한 청소년대상으로 수련활동서비스를 제공하는 청소년수련시설은 매우 다양한 형태의 활동이 이루어져야하며 이에 대한 지속적인 시설투자가 수련시설 활성화의 기반이 된다. 만약 그렇게 못할 경우 청소년수련시설은 청소년이 이용하지 않는 시설로 도태되리라 여겨진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속적인 수련시설에 대한 투자 여건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그 중 한가지가 위탁수련시설의 수익의 일정액이나 임대료 전액을 해당 시설에 설비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이를 위해서 지방자치단체는 계약서에 시설투자 조건을 포함 하든가 또는 임대료 등을

시설투자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규칙을 제정해야한다.

(5) 전문적 능력 강화

청소년수련시설의 전문성은 본 연구의 결과 수련시설의 서비스 질과 비용절감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인 요인이다. 따라서 청소년수련시설의 위탁운영과정에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유지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 법정 전문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원의 제도화이다. 청소년수련활동은 인적자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 능력에 의해서 안정적이고 양질의 서비스 질을 지속적으로 제공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의 청소년수련시설을 보면 전문지도자들의 이직율이 높아 서비스의 유지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따라서 최소한 청소년기본법에 제시된 배치인력(청소년수련시설 평균 2-3명 수준)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사와 마찬가지로 공무원 7급 또는 8급에 준한 보수를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필요할 경우 현재 정부 및 자치단체에서 보조하고 있는 금액의 일부를 인건비항목으로 전용하여 지급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가 있을 것이다.

- 지속적인 전문인력 확대이다. 이것은 청소년수련시설이 전문인력이 아닌 자에 의해 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에 있어 사회적 신뢰성을 갖기가 힘들다. 따라서 기관종사자들이 청소년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과 자질을 구축하기 위하여 위탁시설 운영자로 하여금 조직구성원들이 청소년지도사 자격을 갖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 청소년수련시설의 특성화분야 개척은 정부차원의 청소년육성 5개년계획과 관련된 사항임과 동시에 지역사회 내에 개별시설들이 자신들의 역량에 맞는 전문적 분야를 개척함으로써 청소년수련시설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으며, 또한 지역사회에서 청소년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할 수가 있다.

(6) 시설운영의 투명성 확보

시설운영의 투명성 확보는 위탁운영자에 대한 기회주의적 행동을 통제함과 동시에 담당공무원과 수탁자간의 원활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협력관계구축은 비용절감에 영향을 미치며, 이는 담당공무원이 위탁수련시설의 업무내용을 충분히 파악하고 수탁자와 긴밀한 협력관계가 유지되어야만 가능하다. 따라서 자치단체는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위원회의 구축을 통하여 업무감독 및 협력관계를 유지해야 할 것이다. 또한 위탁수련시설의 운영에 있어 본래의 정체성을 잃지 않도록 청소년이용비를 60%를 유지토록 조건화 해야한다.

(7)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성과 평가제도 구축

공공청소년수련시설은 정부의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사항' 따라 민간위탁을 적극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위탁운영은 수탁자의 경제적 수익 추구 등 기회주의의 행동을 막고, 안정적 서비스 질과 양의 확보와 비용절감 효과를 가져오기 위한 장치로서 합리적인 성과측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성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져야한다. 첫째는 1년 단위 성과측정으로 이는 계약서와 실행계획서를 중심으로 이루어 져야한다. 둘째는 위탁완료시점에 이루어지는 위탁평가로서 이는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과학적인 분석을 통한 평가가 이루어 져야한다.

따라서 위탁효과에 성과측정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위탁기관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시행해야 하며, 이를 위해 청소년기본법시행령 제35조 (수련시설 운영의 위탁)에 다음과 같이 5항을 추가하여 개정해야 할 것이다.

<제안> 청소년기본법시행령 제35조 (수련시설 운영의 위탁) ⑤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위탁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7조에서 규정한 수련시설의 종류 중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에 대해서는 위탁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에 수련시설의 목적수행·경영·프로그램 운영·청소년활동 등의 운영 전반의 성과에 대해 청소년수련활동 전문연구기관에 의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위탁 및 재 위탁·계약연장을 위한 판단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참고문헌

<학위논문>

- 강상엽(2000). 복지서비스 민간위탁의 성공요인 분석.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 김근창(2000). 지방행정사무 민간위탁성과에 관한 연구. 익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봉서(1999). 공공부문의 민간위탁에 관한 연구. 국민대 석사학위논문.
- 김영철(2000). 지방공사 의료원의 민간위탁 이후 경영성과 비교분석. 원광대 석사학위논문.
- 김은정(2000). 지방행정사무 민간위탁 성과에 관한 연구: 부산시 양정청소년회관 사례연구를 중심으로. 부산대 석사학위논문.
- 김영한 외2인(1998). 청소년수련시설특성화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김정민(1999). 자원봉사자에 대한 공공서비스 민간위탁에 관한 연구: 광주광역시를 중심으로. 전남대 석사학위논문.
- 박언서(1999). 공공서비스 민간위탁의 효과와 영향요인. 부산대 박사학위논문.
- 박윤주(1999). 정부운영 학교급식과 민간위탁급식에 대한 비교고찰: 서울지역 급식학교를 중심으로.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 성열웅(2000). 민간위탁의 효율적 수행방안에 관한 연구. 한양대 석사학위논문.
- 양종삼(1999). 체코의 바우처(voucher) 민영화에 관한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 이상현(1998). 민간위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대구광역시를 중심으로. 경북대 석사학위논문.

- 이정은(1997). 민간위탁의 성과와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서울특별시 복지 서비스를 중심으로. 중앙대 박사학위논문.
- 이희철(1999). 공공시설 민간위탁의 실태분석과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한남대 석사학위논문.
- 임지연(1997). 지역중심 청소년활동 활성화를 위한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실태연구.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 장문승(2001). 민간위탁의 운영실태와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부산대 석사학위논문.
- 정순관(1992). 도시서비스공합 민영화의 전이분석. 전남대 박사학위논문.
- 허남식(2000). 지방공공서비스 민간위탁의 효율적 집행에 관한 연구. 경성대 박사학위논문.

<학술잡지>

- 김순양(1998). 사회복지서비스 공급 민영화의 성공요건 고찰-사회복지관 시설의 민간위탁과정을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보 7, 3. pp. 87-120.
- 김태운(1999). 지방정부기능의 민간위탁 실태와 절차: 시정연찬 11. pp.141-162
- 박경원(1997). 지방공공기능의 민영화전략: 지방행정정보,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박봉식(1998). 민영화의 재조명과 사회복지서비스 민간위탁 개선방안: 새서울터전 5, 3. pp.27-33.
- 박언서(1998). 민간위탁의 효율성 제고방안에 관한 연구: 부산대지방과 행정연구 12. pp.237-263.
- 박재희·서성아(1997). 정부기능 효율화를 위한 제3섹터 활용방안-공공서비스 사업분야를 중심으로-. 서울: 한국행정연구원.

- 박중훈·장지원(2000). 정부기능의 민간위탁 제도 및 운영방식 개선방안. 서울: 한국행정연구원.
- 송광태(1999). 공공서비스 민간위탁의 실태와 개선방안: 한국외대사회과학논집 17, 1. pp.195-215.
- 송원충(1996). 일본 시민서비스의 민간위탁·민영화: 동의대지방의정 35. pp.47-57.
- 신찬균(1998). 문화향수권은 정보가 보호해야-문화기관 민간위탁은 아직 이르다: 국회보382. pp.83-87.
- 오희환(1997).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 현황 및 평가: 지방행정정보 61. pp.10-17.
- 우동기(1999). 대구광역시 행정서비스 공합의 민간위탁 결정기준시정과 적용에 관한 연구: 대구광역시시정연구 19. pp.99-138.
- 이병철(1999). 지방정부 재원확충을 위한 민간위탁방안에 관한 연구-울산광역시 남구를 중심으로: 울산대사회과학논집 9, 2. pp.131-155.
- 이성우(1999). 정부기능의 민간위탁 확대방안. 한국정책학회 제7권 제3호. pp.31-51.
- 이영교·이정근(1997). 민간위탁을 통한 복지서비스의 공급-서울특별시를 중심으로: 대구효성가톨릭대연구논문집 인문사회과학 55, pp.261-279.
- 이정은(1998). 민간위탁 성과 영향요인의 분석-서울특별시 복지서비스를 중심으로: 중앙행정논집 12. pp.255-273.
- 정운수(1999). 복지시설 민간위탁과정에 대한 평가-서울시 청소년시설 위탁운영기관 선정사례: 한국정책학회보 8, 3. pp.169-190.
- 하혜수(1998). 경쟁력있는 민간화 전략: 지방자치112. pp.108-113.
- 한영주·조임곤. 서울시의 행정서비스 민간활력 도입에 관한 연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1998.

<국외자료>

朝日新聞, 日本 國立大學の 法人化, 2001.9.28.

Mueller, D.C.(1989). *Public Choice II*, N.Y.; Cambridge University Press.

Ostrom, Sylvester(1971). *The Political Theory of a Compound Republic*, Blackburg: Public Chioce Society.

Baldwin, Laura H.(2001). *Federal contract bundling : a framework for making and justifying decisions for purchased services*, Santa Monica. CA : Rand.

Bennett, C. & Ewan Ferlie(1996). "Contracting in Theory and in Practice: Some Evidence from the NHS", *Public Administration*, 74(Spring).

Bragg, Steven M.(c1998). *Outsourcing : a guide to-selecting the correct business unit- negotiating the contract-maintaining control of the process*. New York : Wiley.

Cooper, Davina.(1998). *Governing out of order : space, law and the politics of belonging*, London ; New York : New York University Press.

Domberger, Simon.(1998). *The contracting organization : a strategic guide to outsourcing*, Oxford [England] ; New York : Oxford University Press.

Finley, Lawrence(1989). *Public Sector Privatization : Alternative Approaches to Service Delivery*, New York : Quorum.

GAO(2001). *Contract Management : Trends and Challenges in Acquiring Services*, United States General Accounting Office, <http://www.arnet.gov/reference/policy letter>

Halvey, John K.(c2000). *Business process outsourcing : process*,

- strategies, and contracts, New York : John Wiley.
- Lavery, Kevin.(c1999). *Smart contracting for local government services* : processes and experience, Westport, Conn. : Praeger.
- Milgate, Michael, Alliances(2001). *Outsourcing, and the Lean Organization*, Westport : Quorum Books.
- State of MN(1999). *Official Publication of the State of MN*, Charter 4630, Department of Health, Camps and Mobile Home Parks, MN Rules.
- State of MN(1999). *Official Publication of the State of MN*, Charter 6100 to 6950, MN Rules.
- State of MN(1999). *Official Publication of the State of MN*, Charter 9550, MN Rules.
- Surpin, Jo.(c1999). *Outsourcing in health care* : the administrator's guide, Chicago : AHA Press.
- United States. Congress(1998). *Review of the Department of Energy's Hanford radioactive tank waste privatization contract* : hearing before the Subcommittee on Oversight and Investigations of the Committee on Commerce, House of Representatives, One Hundred Fifth Congress, second session, October 8, 1998, Washington : U.S. G.P.O.

부록 I. 시설운영자용 질문지

청소년시설 민간위탁실태 및 위탁 기준마련을 위한 조사

안녕하십니까?

저희 한국청소년개발원에서는 청소년수련시설의 효과적인 운영과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한 민간위탁 기준개발을 목적으로 공공청소년수련시설의 민간위탁 관련 사항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각의 문항은 정답이 없으며, 응답자의 의견을 솔직하게 표시해 주시면 됩니다.

설문에 대한 응답은 숫자로 부호화되어 컴퓨터로 처리되며, 통계법에 따라 절대 비밀이 보장됩니다.

조사에서 얻어진 결과는 연구에 필요한 기초자료로만 활용 될 것이므로 한 문항도 빠짐없이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귀 시설의 운영 관련 일반적 사항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항목에 V 표 하시기 바랍니다.

1. 귀 법인의 종류	① 공공법인(공단 등) ② 청소년단체 ③ 민간비영리법인
2. 수탁시기	년
3. 귀 법인의 과거 수탁 경험	① 없다 ② 있다 (번)
4. 계약기간	년
5. 수탁시 선정 방식	① 완전 공개경쟁 ② 자격심사 등을 통한 제한 경쟁 ③ 수의계약
6. 수탁시 선정기준의 공개성	① 매우 구체적 완전 공개 ② 어느정도 구체적인 기준 제시 ③ 포괄적 기준만 제시 ④ 전혀 공개하지 않음

※ 위탁기관과 귀 기관간의 계약내용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 응답에 V표 하시기 바랍니다.

문 항	매우 부정	부정적	보통	긍정적	매우 긍정
7. 계약내용에 책임성과 한계 분명	①	②	③	④	⑤
8. 수련활동 서비스 내용의 구체화	①	②	③	④	⑤
9. 계약된 이행내용의 적절성	①	②	③	④	⑤
10. 위탁계약의 제도적 보완 필요	①	②	③	④	⑤

※ 위탁기관과 귀 기관간의 시설운영상의 책임 및 감독내용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 응답에 V표 하시기 바랍니다.

문 항	전혀 아니다	아닌편이다	보통	그런편이다	매우 그렇다
11. 운영에 따른 책임소재가 분명	①	②	③	④	⑤
12. 관리책임은 지방정부이다	①	②	③	④	⑤
13. 공무원이 운영을 완전 통제하고있다	①	②	③	④	⑤
14. 계약위반에 대한 조치가 엄격하다	①	②	③	④	⑤
15. 위탁기관은 동업자가 아니다	①	②	③	④	⑤
16. 대부분 수탁기관 책임이다	①	②	③	④	⑤

문 항	전혀 없음	거의 없음	정기적으로	가끔씩	매우 자주
17. 업무계획에 대한 지도감독	①	②	③	④	⑤
18. 운영수입 및 지출에 대한 지도감독	①	②	③	④	⑤
19. 업무추진에 대한 공식보고	①	②	③	④	⑤
20. 업무계획 대비 집행에 대한 지도감독	①	②	③	④	⑤
21. 이용자 불만접수나 만족도 조사	①	②	③	④	⑤
22. 전문가 등에 의한 심층적 분석 지도	①	②	③	④	⑤

※ 다음은 시설의 수련활동 서비스 가격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 응답에 V 표 하시기 바랍니다.

문 항	전혀아 니다	아닌편 이다	보통 이다	그런편 이다	매우그 렇다
23. 이용료가 예상보다 올랐다	①	②	③	④	⑤
24. 경영수지가 매우 중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25. 필요한 인력을 보다 적게 운영한다	①	②	③	④	⑤
26. 시설투자는 위탁자가 시행해야한다	①	②	③	④	⑤
27. 일반인 대상 프로그램이 많아졌다	①	②	③	④	⑤
28. 보조금의 증액이 이루어졌다	①	②	③	④	⑤

※ 다음은 수련활동 서비스 특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 응답에 V 표 하시기 바랍니다.

문 항	전혀아 니다	아닌편 이다	보통 이다	그런편 이다	매우그 렇다
29. 많은 경험과 기술이 요구된다	①	②	③	④	⑤
30.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일이다	①	②	③	④	⑤
31. 사명감이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다	①	②	③	④	⑤
32. 서비스 생산 제공 절차가 복잡하다	①	②	③	④	⑤
33. 서비스 수요의 변동이 크다	①	②	③	④	⑤
34. 공무원이 직접 수행하기는 어렵다	①	②	③	④	⑤

※ 다음은 행정과 시설간 협력내용입니다. 해당 응답에 V 표 하시기 바랍니다.

문 항	전혀아 니다	아닌편 이다	보통 이다	그런편 이다	매우그 렇다
35. 담당자간 의사소통이 원활하다	①	②	③	④	⑤
36. 중요한 협력사항은 공식문서로한다	①	②	③	④	⑤
37. 불만은 상호간에 협의 처리한다	①	②	③	④	⑤
38. 계약내용 이외의 요구사항은 없다	①	②	③	④	⑤
39. 양자관계는 공식관계로만 한다	①	②	③	④	⑤
40. 협의할 내용은 항상 타당하다	①	②	③	④	⑤

※ 귀 시설의 전문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 응답에 V 표 하시기 바랍니다.

문 항	전혀아 니다	아닌편 이다	보통 이다	그런편 이다	매우그 렇다
41. 전문자격을 소지한 인력이 충분하다	①	②	③	④	⑤
42. 프로그램이 다양하다	①	②	③	④	⑤
43. 경영자가 이 분야의 전문가이다	①	②	③	④	⑤
44. 프로그램 운영 전문설비가 많다	①	②	③	④	⑤

※ 다음은 민간위탁시설 관리 지원을 위한 정책입니다. 해당응답에 V 표 하시기 바랍니다.

45. 청소년수련시설과 관련한 민간위탁 선정기준 및 절차에 대한 객관적인 제도적 지침의 필요성

① 전혀 필요없다	② 필요없는 편이다	③ 그저그렇다	④ 필요한 편이다	⑤ 매우 필요하다
--------------	---------------	------------	--------------	--------------

46. 민간위탁 및 재 위탁에서 수련시설 운영 성과에 대한 전문기관의 객관적 평가 지원의 필요성

① 전혀 필요없다	② 필요없는 편이다	③ 그저그렇다	④ 필요한 편이다	⑤ 매우 필요하다
--------------	---------------	------------	--------------	--------------

47. 지원금 등의 결정을 위해 과학적인 분석을 통한 적정한 운영비 산정 등의 필요성

① 전혀 필요없다	② 필요없는 편이다	③ 그저그렇다	④ 필요한 편이다	⑤ 매우 필요하다
--------------	---------------	------------	--------------	--------------

48. 수련시설의 운영비에 대한 국가-자치단체-수련시설 운영자(서비스이용자) 간의 적정한 비용 분담의 필요성

① 전혀 필요없다	② 필요없는 편이다	③ 그저그렇다	④ 필요한 편이다	⑤ 매우 필요하다
--------------	---------------	------------	--------------	--------------

49. 수련시설의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법정 배치기준 전문인력에 대한 보수 지원의 필요성

① 전혀 필요없다	② 필요없는 편이다	③ 그저그렇다	④ 필요한 편이다	⑤ 매우 필요하다
--------------	---------------	------------	--------------	--------------

※. 수탁이후 수련시설 운영의 변화에 대한 귀하의 생각은 어떠합니까? 해당 응답에 V 표 하시기 바랍니다.

문항	낮음(감소)		중간(보통)			높음(증가)	
50. 공공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1. 책임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2. 전문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3. 지자체 보조금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4. 서비스 질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5. 형평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6. 운영의 합리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7. 사업내용의 다양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8. 프로그램 이용비용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9. 프로그램 이용자 수	①	②	③	④	⑤	⑥	⑦

※. 다음은 응답자의 인구학적 특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60. 귀하의 직급?	
61. 귀하의 근무기간은?	년 개월
62. 귀하의 연령은?	세
63. 수련관에 대한 전년도 보조금액은?	백만원
64. 수탁 및 위탁 청소년수련관의 명칭은?	
65. 귀하의 최종학력은?	①고졸이하 ②전문대졸 ③대졸 ④대학원졸

부록Ⅱ. 단체운영자용 면접조사표

청소년시설 민간위탁실태 및 위탁 기준마련을 위한 면접조사지

안녕하십니까?

저희 한국청소년개발원에서는 청소년수련시설의 민간위탁에 대한 중요한 **잠재적 수탁고객인 청소년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민간위탁 관련 사항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각의 문항은 정답이 없으며, 응답자의 의견을 솔직하게 표시해 주시면 됩니다.

면접표에 제시된 문항은 통계법에 따라 절대 비밀이 보장됩니다.

조사에서 얻어진 결과는 연구에 필요한 기초자료로만 활용 될 것이므로 한 문항도 빠짐없이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귀 단체의 일반적 사항에 관한 질문입니다.

1. 귀 단체의 역사	_____년
2. 귀 단체의 정규직원 수	_____명
3. 귀 단체의 전체회원 수	_____명
4. 귀 단체의 시설 수탁경험	① 경험없음 ②경험있음 (_____개 시설)
5. 귀 단체의 전년도 총 사업비	_____백만원
5-1. 귀 단체의 자본금	_____백만원
6. 귀 단체의 청소년지도사 수	_____명

※ 다음은 위탁시설의 운영을 위해 제시된 내용입니다. 해당응답에 V 표 하시기 바랍니다.

7. 청소년수련시설과 관련한 민간위탁 선정기준 및 절차에 대한 객관적인 제도적 지침의 필요성

① 전혀 필요없다	② 필요없는 편이다	③ 그저그렇다	④ 필요한 편이다	⑤ 매우 필요하다
-----------	------------	---------	-----------	-----------

8. 민간위탁 및 재 위탁에서 수련시설 운영 성과에 대한 전문기관의 객관적 평가 지원의 필요성

① 전혀 필요없다	② 필요없는 편이다	③ 그저그렇다	④ 필요한 편이다	⑤ 매우 필요하다
-----------	------------	---------	-----------	-----------

9. 정부보조금 등의 결정을 위해 과학적인 분석을 통한 적정한 운영비 산정 등의 필요성

① 전혀 필요없다	② 필요없는 편이다	③ 그저그렇다	④ 필요한 편이다	⑤ 매우 필요하다
-----------	------------	---------	-----------	-----------

10. 수련시설의 운영비에 대한 국가·자치단체·수련시설 운영자(서비스이용자)간의 적정한 비용 분담의 필요성

① 전혀 필요없다	② 필요없는 편이다	③ 그저그렇다	④ 필요한 편이다	⑤ 매우 필요하다
-----------	------------	---------	-----------	-----------

- 10-1. 필요하다면 정부·자치단체 대비 수련시설 운영자의 부담률은 어느정도가 적정합니까?

(예시 : 정부·자치단체 50%, 수련시설 운영자 50%)
(운영자: %)

11. 민간위탁 수련시설의 재 위탁 선정과정에서 현 위탁단체의 수탁 금지 조항의 필요성

① 전혀 필요없다	② 필요없는 편이다	③ 그저그렇다	④ 필요한 편이다	⑤ 매우 필요하다
-----------	------------	---------	-----------	-----------

- 11-1. 재 위탁의 금지가 필요하다면 몇 번째부터 금지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까 (회)

12. 민간위탁시 수탁단체의 재정부담이 요구됩니다. 적정액이 어느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원)

- ※. 민간위탁에 따른 수련시설 운영의 변화에 대한 귀하의 견해는 어떠합니까? 해당응답에 V 표 하시기 바랍니다.

문항	낮음(감소)		중간(보통)			높음(증가)	
13. 공공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4. 책임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5. 전문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6. 지자체 보조금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7. 서비스 질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8. 형평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9. 운영의 합리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0. 사업내용의 다양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1. 프로그램 이용비용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2. 프로그램 이용자 수	①	②	③	④	⑤	⑥	⑦

※ 다음은 청소년수련활동 서비스 특성에 관한 인식입니다. 해당 응답에 V 표 하시기 바랍니다.

문항	전혀 아니다	아닌 편이다	보통 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23. 많은 경험과 기술이 요구된다	①	②	③	④	⑤
24.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일이다	①	②	③	④	⑤
25. 사명감이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다	①	②	③	④	⑤
26. 서비스 생산 제공 절차가 복잡하다	①	②	③	④	⑤
27. 서비스 수요의 변동이 크다	①	②	③	④	⑤
28. 공무원이 직접 수행하기는 어렵다	①	②	③	④	⑤

29. 다음은 정부의 수탁단체 선정기준입니다. 우선순위를 매겨주십시오(중요하다고 판단되는 항목의 알파벳부터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 d e a c b)

문항	내용	순위
a. 인력과 기구	-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인력 구비 - 기구는 조직 편제를 의미하며 업무의 분배가 중요	
b. 재정적 부담 능력	- 수탁업무 수행비용을 충당할 재정 부담능력	
c. 시설과 장비	- 수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의 구비 정도	
d. 책임 능력과 공신력	- 수탁업무 수행을 위한 책임능력과 공신력을 보인 선행사례 또는 이를 보장할 능력	
e. 기술보유정도	- 수탁기관의 기술 보유정도 및 발전 가능성	

※ 다음은 현재 수탁단체 선정과정에 대한 인식입니다. 해당 응답에 V 표 하시기 바랍니다.

문 항	전혀아 니다	아닌편 이다	보통 이다	그런편 이다	매우그 렇다
30. 선정과정과 절차가 객관적이고 공정하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31. 선정과정에서 외부의 영향력은 거의 없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32. 공무원이 수탁단체와 연계되었을 가능성은 없다	①	②	③	④	⑤
33. 참여단체에 대한 수탁 정보제공은 동일하게 주어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34. 참여단체에 대한 제한(경제적, 지역적 등)은 없다	①	②	③	④	⑤
35. 기존의 수탁단체라고 하더라도 유리한 조건은 없다	①	②	③	④	⑤
36. 청소년수련시설이라 할지라도 현재의 정부의 수탁기준이 별 문제없다	①	②	③	④	⑤

※ 다음은 청소년수련시설의 민간위탁 결과에 대한 평가기준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 응답에 V 표 하시기 바랍니다.

효율성 문항	전 혀 필요없다	별 로 필요없다	그 저 그렇다	필요한 편이다	매 우 필요하다
37. 비용절감 기준	①	②	③	④	⑤
38. 인력축소 기준	①	②	③	④	⑤
39. 경영수지의 합리성 기준	①	②	③	④	⑤
40. 보조금 축소 기준	①	②	③	④	⑤

서비스 질 문항	전혀아 니다	아닌편 이다	동일하 다	그런편 이다	매우그 렇다
41. 전문인력 확보 기준	①	②	③	④	⑤
42. 사업비 비율	①	②	③	④	⑤
43. 이용자 수	①	②	③	④	⑤
44. 프로그램 충실도	①	②	③	④	⑤
45. 외부 자원 활용도	①	②	③	④	⑤
46. 서비스제공의 형평성	①	②	③	④	⑤

※. 다음은 응답자의 인구학적 특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47. 귀하의 직급?		
48. 귀하의 근무기간은?	년	개월
49. 귀하의 연령은?	세	
50. 귀하의 최종학력은?	①고졸이하 ③대졸	②전문대졸 ④대학원졸

※ 다음은 민간위탁 과정에 대한 행정기관의 조치사항입니다. 해당 응답에 V표 하시기 바랍니다.

7. 법령(조례)이나 정책 지침의 유무	① 있음	② 없음
8. 위탁의 타당성 검토	① 하였음	② 하지 않았음
9. 위탁비용(원가)의 합리적 산정	① 하였음	② 하지 않았음
10. 위탁 추진 위원회(심의) 구성운영	① 구성함	② 구성하지 않았음
11. 수탁자 모집공고	① 전국단위 모집	② 지역단위 모집
12. 제안서 심사 외부 구성원 참여율	① 50% 이상참여	② 50% 미만 참여

※ 다음은 민간위탁시 경쟁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 응답에 V표 하시기 바랍니다.

문 항	제한내용이 매우구체적	제한내용이 약간구체적	보통정도	제한내용이 별로 없음	제한내용이 전혀없음
13. 수탁참여 단체의 경쟁능력 제한	①	②	③	④	⑤
14. 수탁참여 단체의 지역범위 제한	①	②	③	④	⑤
15. 수탁참여 단체의 전문적 능력 제한	①	②	③	④	⑤
16. 현 시설 수탁시 참여 단체의 수	① 1개	② 2개	③ 3-4개	④ 5-8개	⑤ 9개이상

※ 다음은 민간위탁 계약내용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 응답에 V표 하시기 바랍니다.

문 항	매우 부정	부정적	보통	긍정적	매우 긍정
17. 계약내용에 책임성과 한계 분명	①	②	③	④	⑤
18. 수탁단체 서비스 내용의 구체화	①	②	③	④	⑤
19. 계약된 이행내용의 적절성	①	②	③	④	⑤
20. 위탁계약의 제도적 보완 필요	①	②	③	④	⑤
21. 연속적인 수탁 제한의 필요	①	②	③	④	⑤

※ 다음은 시설운영에서의 행정책임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 응답에 V표 하시기 바랍니다.

문 항	전혀 아니다	아닌편이다	보통	그런편이다	매우 그렇다
22. 운영에 따른 책임소재가 분명	①	②	③	④	⑤
23. 관리책임은 지방정부이다	①	②	③	④	⑤
24. 위탁은 직영보다 책임성이 낮다	①	②	③	④	⑤
25. 위탁시설에 대해 완전한 통제 가능	①	②	③	④	⑤
26. 계약위반에 대한 조치가 엄격하다	①	②	③	④	⑤
27. 위탁시설과는 동업자가 아니다	①	②	③	④	⑤
28. 위탁에서 결탁 관계가 생길 수 없다	①	②	③	④	⑤
28-1. 서비스중단시 빠른 대체가 가능	①	②	③	④	⑤

문 항	전혀 없음	거의 없음	정기적 으로	가끔씩	매우 자주
29. 업무계획에 대한 지도감독	①	②	③	④	⑤
30. 운영수입 및 지출에 대한 지도감독	①	②	③	④	⑤
31. 업무추진에 대한 공식보고	①	②	③	④	⑤
32. 업무계획 대비 집행에 대한 지도감독	①	②	③	④	⑤
33. 이용자 불만접수나 만족도 조사	①	②	③	④	⑤
34. 전문가 등에 의한 심층적 분석 지도	①	②	③	④	⑤

※ 다음은 시설의 수련활동 서비스 가격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 응답에 V표 하시기 바랍니다.

문 항	전혀아 니다	아닌편 이다	보통 이다	그런편 이다	매우그 렇다
35. 이용료가 예상보다 올랐다	①	②	③	④	⑤
36. 수탁자가 경영수지에 집착한다	①	②	③	④	⑤
37. 필요한 직원을 보다 적게 운영한다	①	②	③	④	⑤
38. 시설투자는 위탁자가 시행해야한다	①	②	③	④	⑤
39. 일반인 대상 프로그램이 많아졌다	①	②	③	④	⑤
40. 보조금의 증액이 이루어졌다	①	②	③	④	⑤

※ 다음은 수련활동 서비스 특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 응답에 V 표 하시기 바랍니다.

문 항	전혀아 니다	아닌편 이다	보통 이다	그런편 이다	매우그 렇다
41. 많은 경험과 기술이 요구된다	①	②	③	④	⑤
42.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일이다	①	②	③	④	⑤
43. 사명감이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다	①	②	③	④	⑤
44. 서비스 생산 제공 절차가 복잡하다	①	②	③	④	⑤
45. 서비스 수요의 변동이 크다	①	②	③	④	⑤
46. 공무원이 직접 수행하기는 어렵다	①	②	③	④	⑤

※ 다음은 행정과 시설간 협력내용입니다. 해당 응답에 V 표 하시
기 바랍니다.

문 항	전혀아 니다	아닌편 이다	보통 이다	그런편 이다	매우그 렇다
47. 담당자간 의사소통이 원활하다	①	②	③	④	⑤
48. 중요한 협력사항은 공식문서로한다	①	②	③	④	⑤
49. 불만은 상호간에 협의 처리한다	①	②	③	④	⑤
50. 계약내용 이외의 요구사항은 없다	①	②	③	④	⑤
51. 양자관계는 공식관계로만 한다	①	②	③	④	⑤
52. 협의할 내용은 항상 타당하다	①	②	③	④	⑤

※ 다음은 수탁기관의 전문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 응답에 V 표
하시기 바랍니다.

문 항	전혀아 니다	아닌편 이다	보통 이다	그런편 이다	매우그 렇다
53. 전문인력이 많다	①	②	③	④	⑤
54. 프로그램이 다양하다	①	②	③	④	⑤
55. 경영자가 이 분야의 전문가이다	①	②	③	④	⑤
56. 프로그램 운영 전문설비가 많다	①	②	③	④	⑤

※ 다음은 위탁에 따른 결과에 대한 질문입니다. 직영시와 비교하여
생각되는 응답에 V 표 하시기 바랍니다.

효율성 문항	전혀아 니다	아닌편 이다	동일 하다	그런편 이다	매우그 렇다
57. 위탁에 따른 행정업무가 축소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58. 위탁으로 행정직원이 줄었다	①	②	③	④	⑤
59. 직영보다 예산지원이 줄었다	①	②	③	④	⑤
60. 예산결정은 총사업비 결정 지급보 다 수입배분에 따른 보조 방식이다	①	②	③	④	⑤

서비스 질 문항	전혀아 니다	아닌편 이다	동일 하다	그런편 이다	매우그 렇다
61. 위탁 후 전문자격자 증가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62. 위탁 후 직원의 이직율이 줄었다	①	②	③	④	⑤
63. 위탁 후 직원 보수교육이 늘어났다	①	②	③	④	⑤
64. 위탁 후 사업비 비율이 늘어났다	①	②	③	④	⑤
65. 위탁 후 이용자가 늘어났다	①	②	③	④	⑤
66. 위탁 후 프로그램내용이 충실했다	①	②	③	④	⑤
67. 위탁 후 자원봉사자가 늘어났다	①	②	③	④	⑤
68. 위탁 후 서비스가 형평성을 고려하 여 다양한 계층에 제공된다	①	②	③	④	⑤

69. 다음은 위탁 성과에 대한 평가 관련 문제점입니다. 중요도에 따라 순위를 매겨 주십시오

문 항	순 위
· 수련활동 서비스 성과를 구체적으로 측정하는 문제	
· 수탁자의 비협조로 평가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확보하는 문제	
· 공무원의 평가관련 전문적 기술능력의 절대 부족 문제	
· 평가에 필요한 시간, 인력, 재원의 절대 부족 문제	
· 위탁된 이후에는 상급부서에서 평가를 중요치 않게 생각하는 문제	
· 수탁기관간의 관계성으로 인해 실제적인 평가가 어려운 문제	

※ 다음은 민간위탁시설 관리 지원을 위한 정책입니다. 해당응답에 V 표 하시기 바랍니다.

70. 청소년수련시설과 관련한 민간위탁 선정기준 및 절차에 대한 통일된 제도적 지침의 필요성

① 전혀 필요없다	② 필요없는 편이다	③ 그저그렇다	④ 필요한 편이다	⑤ 매우 필요하다
--------------	---------------	------------	--------------	--------------

71. 민간위탁 및 재 위탁에서 수련시설 운영 성과에 대한 전문기관의 평가 지원의 필요성

① 전혀 필요없다	② 필요없는 편이다	③ 그저그렇다	④ 필요한 편이다	⑤ 매우 필요하다
--------------	---------------	------------	--------------	--------------

72. 지원금액의 결정을 위해 과학적인 분석을 통한 적정한 운영비 산정 등의 필요성

① 전혀 필요없다	② 필요없는 편이다	③ 그저그렇다	④ 필요한 편이다	⑤ 매우 필요하다
--------------	---------------	------------	--------------	--------------

73. 수련시설의 운영비에 대한 국가-자치단체-수련시설 운영자(서비스 이용자)간의 적정한 비용 분담의 필요성

① 전혀 필요없다	② 필요없는 편이다	③ 그저그렇다	④ 필요한 편이다	⑤ 매우 필요하다
--------------	---------------	------------	--------------	--------------

74. 수련시설의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법정 배치기준 전문인력에 대한 보수 지원의 필요성

① 전혀 필요없다	② 필요없는 편이다	③ 그저그렇다	④ 필요한 편이다	⑤ 매우 필요하다
--------------	---------------	------------	--------------	--------------

75. 국가단위에서 청소년수련시설관리공단과 같은 공공수련시설 전문 수탁 기관의 필요성

① 전혀 필요없다	② 필요없는 편이다	③ 그저그렇다	④ 필요한 편이다	⑤ 매우 필요하다
-----------	------------	---------	-----------	-----------

※. 다음은 민간위탁에 따른 수련시설 운영의 변화 방향에 대한 귀하의 생각은 어떠합니까? 해당응답에 V 표 하시기 바랍니다.

문항	낮음(감소)		중간(보통)			높음(증가)	
76. 공공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77. 책임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78. 전문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79. 보조금액 절감	①	②	③	④	⑤	⑥	⑦
80. 서비스 질	①	②	③	④	⑤	⑥	⑦
81. 형평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82. 운영의 합리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83. 사업내용의 다양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84. 프로그램 이용비용	①	②	③	④	⑤	⑥	⑦
85. 프로그램 이용자 수	①	②	③	④	⑤	⑥	⑦

※. 다음은 응답자의 인구학적 특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86. 귀하의 직종은?	①공무원 ②수련시설 근무
87. 귀하의 근무기간은?	년 개월
88. 귀하의 연령은?	세
89. 수련관에 대한 전년도 보조금액은?	백만원
90. 귀하의 최종학력은?	①고졸이하 ②전문대졸 ③대졸 ④대학원졸
91. 수탁 및 위탁 청소년수련관의 명칭은?	

부록Ⅳ. 서울특별시 민간위탁조례

<서울특별시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 95조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이하 “위탁사무”라 한다.)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민간위탁”이라 함은 각종 법령 및 조례, 규칙에 규정된 시장의 사무 중 일부를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책임하에 해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라 함은 시장의 권한을 위탁받은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위탁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 사무 중 조사, 검사, 검정, 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기타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 관리사무

②시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필요성, 타당성 및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제5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민간에 위탁하는 사무는 별표와 같다.

제6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등) 시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 기구, 장비, 시설 및 기술 수준
2. 재정적인 부담 능력
3. 위탁사무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제7조(수탁기관 선정) ①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수탁 대상기관을 공개모집 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등을 제출하게 하고, 해당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에서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한다.

제8조(적격자 심의 위원회)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6명이상 9명이내의 위원으로 하되, 위원장을 비롯한 부위원장과 위원은 관계공무원 당해 전문가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심사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 해산한다.

②위원회는 사업계획서 등의 심사 및 현장확인과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 ①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시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②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수탁기관의 명의로 한다,

제10조(협약체결) ①시장은 사무를 위탁할 경우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협약을 체결해야 하며 협약내용은 공증을 하도록 해야 한다.

1. 수탁기관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기간
3. 위탁대상사무 및 그 내용
4.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②시장은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 협약 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30일전까지 위탁사무처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수탁자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제11조(운영지원) 시장은 수탁기관과 수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거나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사용료 징수 등) ①시장은 위탁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이용자에게 법령 또는 별도의 조례 등에서 정하는 소정의 사용료, 수수료, 비용

등을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전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시장한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시설운영과 관련한 수입금의 일부를 시장에게 납부하게 하거나 시설운영에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수탁기관의 의무) ① 수탁기관은 위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사무의 지연처리,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의 요구, 불공정한 사무처리 및 비용 등의 부담 징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수탁기관은 위탁시설, 장비, 비용 등을 위탁받은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수탁기관은 관계법령 이 조례 및 위탁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④수탁기관은 위탁받는 시설을 증·개축하거나, 추가로 시설을 신축하는 등의 경우에는 사전의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시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개축 또는 추가로 신축하는 시설에 대하여 이를 시장에게 기부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지도, 감독) ①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사용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과목 지도, 감독에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시장은 제1항의보고, 검사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조치 할 경우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5조(사무편람) ①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 처리기간, 처리과정, 처리기준, 구비서류, 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

무편람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②수탁기관은 제1항의 편람을 작성한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6조(위탁의 취소 등) ①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제13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때
2. 수탁기관이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3. 수탁기관이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할 때

②시장이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기관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록 V.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서울특별시중구회의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중구 구립청소년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 중구 청장 김 동일 (인)

2001년 5월 18일

●서울특별시중구조례 제528호

서울특별시 중구 구립 청소년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5조 및 청소년기본법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청소년육성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구립 청소년복지시설(이하 “청소년 복지시설”이라 한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소년복지시설”이라 함은 청소년의 복지 및 육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이하“중구”라 한다.)가 청소년 기본법, 지방자치법 규정에 의하여 설치·운영하는 시설로써 청소년수련, 상담 또는 청소년독서실 등을 위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청소년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설치)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운영하는 청소년복지시설의 명칭, 기능 및 그 위치는 <별표1>과 같다.

제5조(운영의 일반원칙) ①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내 청소년복지 증진을 위하여 시설을 설치목적에 적합하도록 운영하여야 하며 시설사용자에게 공정한 이용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청소년복지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게 하되 이 경우에도 청소년에게 우선권을 부여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6조 (시설의 사용) ①청소년복지시설의 이용 또는 사용대상자(이하"사용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청소년 :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자
 2. 기타 : 청소년 이외의 자로서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 ②구청장은 상시 이용시설에 대하여 회원을 모집하고 회원권을 발행할 수 있다.

제7조(사용시간) ①청소년복지시설의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다만, 구청장이 시설 또는 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라 별도의 사용시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사용시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주간: 09:00 -18:00
 2. 야간: 18:00 -22:00
- ②제1항의 단서의 규정은 의하여 구청장이 사용시간을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사용자 등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그 내용을 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제8조 (사용료 등) ①구청장은 청소년복지시설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별표2>에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사용료 또는 강습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를 징수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용료를 납부한 후 사용자의 책임에 기인하지 않은 사유로 청소년복지시설 또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③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청소년(만24세 이하의 자)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또는 그 가족
2.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국가유공자 또는 그 가족
3.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의 청소년
4. 모자복지법에 의한 저소득의 모자 또는 부자가정의 청소년
5.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
6. 기타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④사용료의 부과 및 징수의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및 서울특별시 중구 공유재산관리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운영의 위탁) ①구청장은 청소년복지시설의 관리, 운영을 청소년단체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해 청소년복지시설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청소년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같은 조례시행규칙을 준용하며, 예산, 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수탁자 선정) ①제9조 제1항에 의한 수탁자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수탁대상자를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게 하고, 해당 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적격자를 선정해야 한다.

③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운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 기구, 기술수준
2. 재정적인 부담능력
3. 위탁사무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등

제11조(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당해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심사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 해산한다.

③위원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수탁범위) 수탁범위는 청소년복지시설의 시설관리 및 운영권 전채로 한다.

제13조(수탁기간) 수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재계약시는 위원회의 심의, 의결에 의하여 수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4조(지원)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시설운영,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위탁운영에 필요한 국, 공유재산을 유,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제15조(수탁자의 의무) ①수탁자는 청소년복지시설을 운영, 관리함에 있

어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수탁자는 제14조에 의해 지원받는 재원을 위탁운영사업에 직접 사용 하여야 한다.

③수탁자가 수탁기간 중에 새로운 시설을 신, 증축할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 또는 사용개시 전에 중구에 기부채납 되어야 한다.

④수탁자는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대하여 구청장의 요구가 있을 시 적정 범위 내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⑤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등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6조(지도, 감독) ①구청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운영사항 전반에 대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기타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응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제1항의 조사 및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7조(위탁의 취소 등)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15조 각 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3. 수탁자가 위탁조건 등 위반할 때

제18조(손해배상 등) 수탁자가 구청장의 승인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및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으로 회복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9조(세부사항)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가 시행되기 전 위탁운영 약정사항 및 시설의 명칭, 위치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별표1> 서울특별시중구구립청소년복지시설

시 설 명	기능	위치
중구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활동 등을 위한 시설	중구 신당3동 309-285
신당6동 청소년독서실	청소년 정보문화 이용 및 열람실, 공부방운영	중구 신당6동 837번지
중림동청소년독서실	청소년 정보문화 이용 및 열람실 공부방 운영 등	중구 만리동2가 6-1

<별표2>

1. 청소년복지시설 사용료

사용료 구분	대 상	1회사용료 (1시간기준)	월사용료 상한(1시간 기준)				
			주1회	주2회	주3회	주4회	주5회
체육관	대학생,성인	1,800	7,200	14,400	21,600	28,800	32,400
	초,중,고생	1,300	5,200	10,400	15,600	20,800	23,400
	어린이	1,100	4,400	8,800	13,200	17,600	19,800
탁구장 (단식)	대학생,성인	1,500	6,000	12,000	18,000	24,000	27,000
	초,중,고생	1,300	5,200	10,400	15,600	20,800	23,400
	어린이	1,100	4,400	8,800	13,200	17,600	19,800
헬스장	대학생,성인	2,500	10,000	20,000	30,000	40,000	45,000
	초,중,고생		6,800	13,600	20,400	27,200	30,600
	어린이		6,000	12,000	18,000	24,000	27,000
당구장	대학생,성인	4,800				초,중,고생	3,600
골프 연습장	대학생,성인	8,000				초,중,고생	5,000
시설 대관	200석이내	200,000	기본3시간 초과시	시간당 20,000			
	300석이내	300,000	기본3시간 초과시	시간당 25,000			
	400석이내	400,000	기본3시간 초과시	시간당 30,000			
비고	1. 체육관은 탁구장, 당구장, 골프연습장 등을 제외한 체육시설임. 2. 시설대관은 강당, 극장, 공연장 등의 시설 사용료임. 3. 사용료 할증 1)토, 일 공휴일은 기본요금의 30% 2)시설대관의 경우 기본3시간을 초과하여 사용시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한다. 3)시설 1회 사용료는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하며, 1시간초과 시에는 30분 단위로 50%씩 할증하되 30분단위 미만 사용은 30분 단위 사용으로 본다. 4. 사용료 할인(월 사용료) 1)단위시설의 1회 이용시간이 2시간 이상인 경우 주 1-2회는 20%, 주3-4회는 30%, 5-6회는 40%할인 2)1일 2가지 이상의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시설사용료를 합산 금액의 30%할인 3)각각 다른 시설을 주3회 이상 이용하는 경우에는 각 시설별 사용료를 합한 금액의30%할인 4)탁구장 이용시 복식사용은 개별단식 2대분 사용금액의 30%할인 5.기타요금을 정하지 아니한 독서실 등 사용료를 정수하고자 할 때에는 인근 공공유사시설(구민체육센터, 복지관 등 서울시 또는 중구 소재)2개소 이상의 사용료를 산술 평균한 금액을 준용한다.						

2. 영역별 프로그램 강습료

사용료 구분	대 상	월강습료 상한 (1시간 기준)				
		주1회	주2회	주3회	주4회	주5회
외국어	대학생,성인	35,000	50,000	65,000	82,500	96,500
	초,중,고생,어 린이	30,000	40,000	50,000	65,000	77,000
음 악	대학생, 성인	35,000	55,000	70,000	82,500	96,500
	초,중,고생 어린이	35,000	55,000	70,000	82,500	96,500
정보, 과학	대학생 성인	35,000	50,000	65,000	82,500	96,500
	초,중,고생 어린이	30,000	40,000	50,000	65,000	77,000
생활체육 및 전통문화	대학생 성인	25,000	35,000	45,000	57,500	67,500
	초, 중,고생 어린이	20,000	30,000	40,000	50,000	58,000
문 예 및 창 작	대학생 어린이	25,000	35,000	45,000	57,500	67,500
	초, 중,고생 어린이	20,000	30,000	40,000	50,000	58,000
상 담	대학생 성인	10,000	20,000	30,000	40,000	50,000
	초,중,고생 어린이	5,000	10,000	15,000	20,000	25,000
	각 종 심 리 검 사	검사 소요시간, 채점 및 해석의 난이도에 따라 최고30%할증				
비 고	1.프로그램 영역구분 1)외국어 :영어, 일본어 등의 외국어 영역 2)음악 :성악, 국악, 기악 등의 음용음악 3)정보·과학 :컴퓨터, 영상 관련정보소양 영역 및 과학교실 등의 영역' 4)생활체육 및 전통문화: 에어로빅등 생활체육활동영역 및 한문 서예등의 전통문화 5)문예 및 창작: 글짓기등의 문예활동 영역 및 예술활동 6)상담: 개인 집단 상담영역 2. 사용료 할인 1)단일 프로그램으로 1회 이용시간이 2시간이상인 경우에는2회는 20% 주 3-4회는 30%, 주 5-6회는 40% 2)1일 2가지 이상의 프로그램을 주3회이상 이용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프로그램별 강습료 액의 30%할인 3)각각 다른 프로그램을 주3회이상 이용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프로그램별 강습료액의 30% 할인 3. 프로그램 운영시 소요되는 각종 교육재료비의 경우에는 이용자가 별도로 부담한다. 4. 기타 요금을 정하지 아니한 프로그램의 강습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인근공공유사 시설(구민체육센터, 복지관, 등 서울시 또는 중구 소재)2개소 이상의 프로그램운영 강습료 를 산술평균한 금액을 준용한다.					

부록Ⅵ. 서울특별시 관악구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관악구공공시설설치 및 관리운영위탁에 관한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5조 및 제95조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의 설치 및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공시설”이라 함은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로서 관리위탁운영대상시설을 말한다.
2. “위탁”이라 함은 공공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를 다른 행정기관·법인·단체 또는 개인 등에 맡겨 운영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3. “수탁자”라 함은 공공시설을 서울특별시관악구로부터 위탁받아 관리·운영하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 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위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명칭 및 위치) ①서울특별시관악구가 설치하는 공공시설은“별표1과 같다”.

②공공시설의 위치는 서울특별시관악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구보에 이를 고시한다.

제5조(운영의 위탁) 구청장은 공공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이하“위탁

사무”라 한다)하기 위하여 다른 행정기관,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이를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수탁자 선정 등) ①구청장은 위탁사무를 수행할 자(이하“수탁자”라 한다)를 선정하기 위하여 선정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하며, 위원회 위원은 해당분야 전문가, 관계공무원 등 5인 이상 9인 이내로 위촉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한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심의하여 수탁자를 추천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를 수행에 필요한 인력·기구·장비·시설 및 기술수준
2. 재정적인 부담능력
3. 책임능력·공신력
4.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등

제7조(위탁계약) ①시장은 공공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와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기간
3. 위탁대상사무 및 그 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③시장은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위탁사무처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재수탁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 평가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구청장은 제3항의 평가위원회 위원은 해당분야 전문가, 공인회계사,

관계공무원 등 5인 이상 9인 이내로 위촉하여 운영하며,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제8조(운영지원) ①구청장 수탁자에게 위탁사무수행에 필요한 인력장비·시설·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비용의 징수) ①구청장은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이용자 등에게 법령 또는 별도의 조례 등에서 정하는 소정의 사용료·수수료·비용 등을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②수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수수료·비용 등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구청장은 수탁자로부터 하여금 시설운영과 관련 수입금의 일부를 구청장에게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수탁자의 의무) ①수탁자는 위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사무의 지연처리·불필요한 서류의 요구·불공정한 사무 처리 및 비용 등의 부당 징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수탁자는 위탁시설·장비·비용 등을 성실히 관리·집행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수탁자는 간계법령, 이 조례 및 위탁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④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을 증·개축하거나, 추가로 시설을 신축하는 등의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구청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개축 또는 추가로 신축하는 시설에 대하여 이를 구청장에게 기부채납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지도·감독) ①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위탁사무처리에 관한 지침을 시달하고 지도·감독한다.

②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사무의 운영사항과 시설·장부·서류 등을 감사 또는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그 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위탁계약 해지 등) ①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10조의 의무를 위반한 때
2. 수탁자가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3. 수탁자가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때
4. 기타 공익상 위탁을 계속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②구청장이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수탁자가 제7조의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3개월전에 서면으로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운영위원회) 구청장은 공공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별로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14조(수당등의 지급)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설 종류별로 규칙으로 정한다.

부록Ⅶ.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회복지사업 제2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지법인의 재무, 회계는 그 설립목적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제2조(재무, 회계운영의 기본원칙) 사회복지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의 재무, 회계는 그 설립목적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제3조(회계연도)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제4조(회계연도 소속구분)법인의 수입 및 지출의 발생과 자산 및 부채의 증감, 변동에 관여하는 그 원인이 되는 사실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연도소속을 구분한다.

다만, 그 사실이 발생한 날을 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연도소속을 구분한다.

제5조(출납기한) 1회계연도에 속하는 법인의 세입, 세출의 출납에 관한 사무는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완결하여야 한다.<개정 93. 12.27>

제6조(회계의 구분) 법인의 회계는 당해 법인의 업무 전반에 관한 회계(이하 “법인회계”라 한다.) 당해 법인이 설치,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에 관한 회계(이하 “시설회계”라 한다.)와 법인이 수행하는 수익사업에 관한 회계(이하 “수익사업회계”라 한다.)로 구분한다.

제11조(예산에 첨부해야 할 서류) ①예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다만, 단식부기로 회계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제1호 제2호 제5호 및 제6호의 서류만을 첨부할 수 있다.

1. 예산총칙
2. 세입, 세출명세서
3. 추정대차대조표
4. 추정수지계산서
5. 임·직원 보수 일람표
6. 당해 예산을 의결한 이사회 회의록 사본

②제1항 제2호 내지 제5호의 서류의 서식은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다.

제12조(준예산)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법인의 예산이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대표이사가 시장, 군, 구청장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여 예산이 성립될 때까지 다음의 경비를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1. 임, 직원의 보수
2. 법인시설운영에 직접 사용되는 필수적인 경비
3. 법령상 지급의무가 있는 경비

제13조(추가경정예산) ①법인의 대표이사는 예산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준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 확정할 수 있다

②대표이사는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4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

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써 세출예산의 100분의 1이상 100의 3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해야 한다.

제15조(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법인회계 및 시설회계의 예산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제16조(예산의 전용) ①법인의 대표이사는 관, 향, 목간의 예산을 전용할 수 있다. 다만, 관간의 전용은 이사회를 거쳐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동일관내의 향간의 전용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하며, 예산총칙에서 전용을 제한하고 있거나 예산성립과정에서 이사회에서 삭감한 관, 향, 목으로서 전용하지 못한다.<개정 98, 1.7>

②대표이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을 전용할 때에는 관할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98.1.7>

제17조(세출예산의 이월) 법인회계와 시설회계의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 회계연도 안에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비와 연도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개정 98, 1.7>

제18조(특정목적사업 예산)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공사는 제조 그 밖의 특수한 사업을 위하여 2회계연도 이상에 걸쳐서 그 재원을 조달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회계연도마다 일정액을 계상하여 특정목적사업 위한 적립금으로 할 수 있다.

제2절 결 산

제19조(결산서의 작성) ①법인의 대표이사는 법인회계와 시설회계의 세입, 세출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이 사회의 의결은 거친 후 다음 연도3월 31

일까지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93.12.98.1.7>

1. 세입, 세출결산서
2. 과목전용조서
3. 예비비사용조서
4. 대차대조표
5. 수지계산서
6. 현금 및 예금명세서
7. 유가증권명세서
8. 미수금 명세서
9. 채고자산명세서
10. 기타 유동자산명세서(제6조 내지 제9호의 유동자산 외의 유동산을 말한다.)
11. 고정자산(토지, 건물, 차량운반구, 비품, 전화가입권)명세서
12. 부채명세서(차입금, 미지급금을 포함한다.)
13. 제충당금 명세서
14. 기본재산수입명세서
15. 사업수입명세서
16. 정부보조금명세서
17. 후원금수입명세서 및 사용결과보고서
18. 인건비명세서
19. 사업비명세서
20. 기타 비용명세서(인건비 및 사업비를 제외한 비용을 말한다.)
21. 감사보고서
22. 법인세 신고서(수익사업이 있는 경우를 한한다.)

부록Ⅷ. 청소년단체 지도·감독권한 위임의 근거와 기준

가. “청소년관계법인”범위와 소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28조)

□제28조 제2항

○문화관광부장관은 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에게 위임한다.

□ 제28조 제 2항 제11호

○다음의 법인을 제외한 각종 청소년관계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취소, 해산 및 기타지도, 감독에 관한 권한 다만, 활동범위가 2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도에 걸치는 법인의 설립허가, 취소, 해산신고의 수리와 법인의 목적,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특별시, 광역시, 도를 달리하는 경우에 한한다)에 관한 정관변경 허가를 제외한다.

①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②한국보이스카우트연맹

③한국걸스카우트연맹

④한국청소년연맹

⑤한국유스호스텔연맹

⑥한국청소년상담원

⑦농어촌청소년육성재단

⑧청소년수련시설운영자협회

⑨한국청소년수련원

나 .활동범위가 2개 이상 특별시, 광역시, 도에 걸치는 경우의 인정여부

☐인정의 경우

○법인의 주사무소가 1개 시,도에 소재하고 타 시,도에 설치된 분사무소(지부, 지회등)가 정관에 명시되어 관할관청의 허가를 박은 후 설립 동기를 마쳤을 때.

☐불인정의 경우

○2개이상의 시,도에 걸쳐 활동하고 있으나 분사무소(지부, 지회)가 정관에 명시되지 않고 설립등기가 되어 있지 않을 때.

○분사무소가 정관에 명시되어 있다 하더라도 관할 등기소에 등기되어 있지 않을 때.

☐사 유

○ 민법 제 40조에 의거 사무소의 소재지는 필요적 기재 사항이며 동법 제50조에서는 분사무소를 등기사항은 그 등기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등기되지 않은 분사무소는 법적 효력이 없기 때문이다.

○또한 문화관광부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의 사단법인 정관준칙과 재단법인 부칙1에서 정관은 법인설립 등기일로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분사무소가 정관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명시되어 있다 하더라도 설립등기가 되어있지 않으면 효력이 없음.

☐근 거

○ 민법 제50조(분 사무소 설치의 등기)

-제1항 :법인의 분사무소를 설치할 때에는 주사무소 소재지에서는 3주기간내에 분사무소를 설치한 것을 등기하고 그 분사무소 소재지에서는 등기기간내에 전조 제2항(민법 제29조 2항)의 사항을 등기하고 다른 분 사무

소 소재지에서는 동 기간내에 그 분사무소를 설치한 것을 등기하여야 한다.

-제2항 : 주 사무소는 또는 분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의 관할 구역 내에 분 사무소를 설치한 때에는 전항의 기간내에 그 사무소를 설치한 것을 등기하면 된다.

※ 민법 제49조 제2항 : 목적, 명칭, 사무소, 이사의 성명, 주소, 자산의 총액 등.

○ 사단법인의 분사무소 설치시 주무관청 정관변경허가에 대한 질의 회신(별첨)

○ 사단법인의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에 분사무소가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 회신.(별첨)

사단법인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에 분사무소가 포함되는지 여부의 관한 질의

<법심 2301-1170(1990.1.29)>

<질의요지>

민법 제 40조 제 3호 소정의 “사무소의 소재지”를 규정하고 있는바 위 사무소 주사무소(중앙본부)와 분사무소(지부, 분회)를 포함하는 것인지, 주사무소만을 말하고 분사무소는 임의적 기재사항인 것인지 여부.

<회 답>

민법 제40조 제3호 소정의 “사무소의 소재지”는 주사무소 뿐만 아니라 분사무소를 포함하는 것으로 분사무소의 설치로 인한 정관의 변경은 민법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는 것임.

<이 유>

“사무소”함은 법인의 목적사업을 진행하는 장소로써 독립된 건물의 존재를 필요로 하지 않고 그 집행장소라는 것이 인식될 수 있는 외부적 시설을 갖추면 되는 것으로 해석됨.(길전 “민법총칙” 제111정, 소출 “민법총칙” 제68정, 주재항. 김중환 “주석민법총칙(상)” 제414정, 길전 “판례학설총람 민법총칙편” 제 397정 각 참조)

민법 제40조 제3호 및 제49조 제2항 제3호의 규정 자체에서도 주사무소, 분사무소의 구별 없이 단순히 사무소라 하고 있으며 동법 제49조 제1항, 제50조에서 주사무소와 분사무소를 구별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도 동법 제40조 제3호에 종사무소 내지 분사무소가 포함되어 정관의 필

요적 기재사항이라는 것을 뒷받침하고 있음

따라서 질의 배경인 비영리사단법인 “한국무도교육협회”의 종사무소 내지 분사무소(지부, 분회)의 설치로 인한 정관의 변경이 유효하기 위하여는 동법 제42조, 제2항에 의하여 주무관청인 귀부(문화관광부)의 허가를 얻어야 함.

<참고법규>

민법 제40조 제3호, 제40조 제2항, 제49조 제1항.제2항 제3호, 제50조.

○ 민법 제50조 (분사무소 설치의 등기)

-제1항 :법인의 분사무소를 설치한 때에는 주 사무소 소재지에서는 3주기간내에 분사무소를 설치한 것을 등기하고 그 분사무소 소재지에서는 동기간내에 전조 제2항(민법 제49조 제2항)의 사항을 등기하고 다른 분사무소 소재지에서는 동 기간내에 그 분사무소를 설치한 것을 등기하여야 한다.

부록IX. 청소년시설 관리·운영지침

1. 일반사항

가. 청소년시설의 명칭은 서울특별시립 청소년시설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개별약정서에서 정한 명칭을 사용하되, 수탁 운영단체(법인)명을 따로 표기 할 수 있다.

나. 청소년시설의 수탁 운영단체 (법인)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과 시설별 약정서에 의거 고무(시설관리, 운영업무)를 수탁 받은 자이므로 행정주체(서울특별시)의 입장에서 청소년시설을 운영한다.

다. 청소년시설을 민간단체(법인)에 위탁하는 목적은 민간단체(법인)의 자체업무와 수탁 받은 청소년시설의 운영업무의 한계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시설장 책임 하에 시설을 자율적, 효율적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라.수탁단체(법인)와 청소년시설의 시설장 및 서울특별시는 긴밀한 협의 하에 사업을 시행한다.

마. 서울특별시에서 청소년시설에 지원하는 운영비(보조금)를 제외한 자체수입금의 수입, 지출에 대해서도 시보조금관리조례 및 2001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되,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바. 청소년 시설의 사무실 배치는 시설장실과 회의실을 겸할 수 있는 공간을 둘 수 있으며 부장이하의 직원의 사무실은 동일한 공간 내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상담 등 특수한 업무를 수행하는 팀은 별도의 사무실을 확보할 수 있다.

2. 시설운영의 기본 방침

가. 수련시설은 수련활동 21세기 청소년상인 6개분야 (문화감성, 과학 능력과 정보 마인드, 봉사과 협력정신, 모험과 개척정신, 전문적 직업능력, 국제감각)를 시설별로 지역여건과 시설설비 등을 고려하여 비교우위의 특정분야를 특성화하도록 한다.

나. 특화시설은 시설설치의 목적에 부합되게 각 시설별로 전문화 사업을 운영한다.

다. 위탁운영단체는 영리를 목적으로 시설을 운영할 수 없으며 경영 합리화 및 후원활동 등을 통하여 위탁시설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한다.

라. 청소년시설은 학교, 직장, 및 지역사회와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하며 특히 주변학교와 연계하여 학교 특별활동 장소를 사용 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마. 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모임을 구성하여 이용하도록 하거나 개별 적으로 또는 보호자와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여건과 분위기를 조성하고 이를 활성화한다.

바 수련시설의 경우 청소년의 이용이 용이한 시간에는 청소년 위주로 시설을 운영한다.

사. 토, 일요일 근무로 인한 직원의 휴일은 평일 중1일을 택하여 자체

휴무토록 하고, 토. 일요일은 정원의 1/2 근무체제 도입 방안 등을 강구한다.

3. 사업 및 운영평가

가. 청소년시설은 청소년 건전 육성사업, 근로 청소년복지사업, 청소년고민을 해결하는 상담사업, 각종 비행의 예방과 유해환경으로 보호하는 사업을 목적으로 하되 목적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지역주민을 위한 여가활동사업, 복지사업 등을 할 수 있다.

나. 청소년시설은 정치활동, 영리추구 및 특정 종교활동의 장소로 사용할 수 없으며 정치, 영리, 종교 등의 이유로 이용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청소년 상담활동은 실비를 원칙으로 하고, 청소년 독서실은 좌석의 반 이상을 누구나 항상 이용할 수 있게 유지한다.

라. 청소년쉼터의 보호대상 12세 이상 20세까지의 가출청소년 등으로 1개월 이내 일시보호를 원칙으로 하되 보호기간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마. 청소년시설의 장은 매년 당해 시설의 운영실적을 자체적으로 분석, 평가하여 운영백서를 발간하여야 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대책을 수립, 다음연도 계획에 반영한다.

4. 조직 및 인사관리

가. 청소년 시설의 조직은 서울특별시청소년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별표1의 시설별 기본조직모형과 규칙 별표2의 시설별, 직급별

정원범위 안에서 업무의 내용 및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조직하고 운영한다.

나. 운영위원회는 7인 이상 20인 이내로 구성하되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청소년시설 이용권역의 관계공무원, 학교교사, 지역주민 대표, 청소년 대표, 시설관련 전문가 등 이용자 등 이용자 및 관계자의 폭넓은 참여가 될 수 있도록 구성하고 연 2회 이상 운영하여야 하며 의결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설운영에 반영한다.

다. 직원의 임용사항 및 신분변동 사항에 대하여는 시장에게 보고한다.

라. 유급직원은 반드시 상시 근무하여야 하며 직무에 전념하는데 지장을 주는 타 직업이나 직위를 가져서는 아니 된다.

마. 계절적, 시간대별 청소년 이용인원의 변동을 예상하여 시설이용도를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하고 필요시 전문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바. 직원의 연가, 병가, 공가 및 출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근무 상황부를 비치하여 복부규정 및 체결약정에 준하여 관리.

5. 재산 및 안전관리

가. 시·물품관리조례 및 규칙, 시·공유재산관리조례 및 규칙을 준용하여 관리한다.

나. 청소년시설의 재산은 목적 외로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양여, 매매, 제3자의 권리설정을 할 수 없다.

다. 청소년시설의 물품은 규칙 제30조(불용품의 처리)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되 매각금액은 자체수입금으로 조치한다.

라. 시 소요인 시설자산은 자산목록을 작성하여 관리해야하며 등록이 필요한 경우(차량, 예금 등)에는 재산(시설명)임을 표시하여야 하며, 법인명도 병기할 수 있다.

예) (재)문래청소년수련관(서울기독교 청소년 유지재단)

마.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시설물은 안전시설 등을 사전에 설치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각종 사고에 대비, 피해를 보상 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한다.

바. 기타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은 청소년 기본법시행규칙 제 20조(수련시설의 안전기준)에 따른다.

6. 기타 행정사항

가. 보고(통보)사항

○정기보고(통보)사항

- 위탁운영 보조금 교부신청(청구):전월 25일까지(별첨1,2호 서식)
- 반기별 사업 추진 실적: 매 반기 익월 10일 까지(별첨3호 서식)
- 분기별 보조금집행정산서: 매 반기 익월10일까지(별첨5호 서식)
- 반기별 퇴직적립금 현황보고 :매 반기 익월10일 까지(별첨5호 서식)
- 직원등급(호봉)에 관한 사항 : 1월 ,7월,(별첨 6호 서식)

- 수시보고(통보)사항
 - 예산전용사항(별첨7호 서식)
 - 예비비 사용조서 (별첨8호 서식)
 - 직원 임명에 관한 사항(별첨9호 서식)
 - 직원 신분변동에 관한 사항(별첨10호 서식)
 - 세입, 세출예산운영계획(별첨11호 서식)
- 나. 청소년시설에 공통으로 비치하여야 할 장부
 - 현금 출납부 (통장 및 장부관리)
 - 총계정원장
 - 총계정원장 보조장부
 - 재산관리대장
 - 비품 및 소모품관리 대장
 - 수입금관리대장
 - 지출부
 - 기타 관계규정에서 정하는 대장